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93-01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편람

2008. 12.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축산물등급판정소

목 차



I. 이력추적제 개요	1
1. 이력추적제 정의	3
2. 이력추적제 개념	4
3. 도입 배경	4
4. 국내외 주요 사례	5
5. 기대효과	6
II. 이력추적제 추진현황	7
1. 추진경과	9
2. '08년 시범사업 추진실적	9
3.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11
4. 이력 관리 기관별 역할과 기능	13
5. 주요 통계	14
III. 세부 업무 매뉴얼	25
1. 사육단계	27
2. 도축단계	39
3. 포장처리단계	44
4. 판매단계	53
5. 묶음번호 관리요령	58
6. DNA동일성검사 시범사업요령	60

IV.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요령 ...	75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7
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12
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114
4.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132
5.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위탁기관 지정기준	147
6.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	150
7. 재부착용 귀표 관리요령	160
8. 사육농가 귀표 자가부착 방안	164
9. 쇠고기 판매단계 이력추적 조사 매뉴얼	166
10. 가축질병 역학조사 지침	189
11. 한우기준	225
V. 이력단계별 질의응답	229
1. 소 사육단계	231
2. 소 도축단계	240
3. 쇠고기 포장처리단계	244
4. 쇠고기 판매단계	249
VI. 참고자료	255
1.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257
2.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258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 현황	259
4. 쇠고기 이력추적제 요약	265



이력추적제 개요

1. 이력추적제 정의 / 3
2. 이력추적제 개념 / 4
3. 도입 배경 / 4
4. 국내외 주요 사례 / 5
5. 기대효과 / 6

I

이력추적제 개요

1 이력추적제 정의

- 이력추적제에 대한 정의를 국가·법에 따라 일부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함
 - EU식품법 : 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가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하여,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
 - 일본 쇠고기 생산이력제 :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 Codex 특별위원회(바이오테크놀로지 유래식품에 관한 특별위원회) : 식품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규정
- 이력추적제는 Traceability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추적 또는 소급가능성을 의미하며,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2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념

-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추적시스템에 기록·관리
 -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 개체식별 확인을 위해 도축된 쇠고기의 시료를 채취·보관하여 판매되는 쇠고기와 DNA 동일성검사를 통해 검증
 -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도입 배경

-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성 증대
 -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요구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축개체식별체계(NAIS)를 통해 질병 등에 대처

4

국내외 주요사례

가. 일본

- 소 개체식별제도 구축을 위해 2004년까지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한다는 계획 하에 19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1997~2001년까지 약 30만두의 젓소에 대해 귀표부착·관리
- 2001. 9월 BSE 발생이후 2001.10월부터 가축개체식별 긴급정비사업 추진
 - 2001.10~2002.6월까지 모든 소(약450만두)에 귀표 부착 완료
-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2003.6월)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 농가의 출생·이동 및 도축신고 등 생산단계는 2003년 12월부터, 도축 이후 가공·판매·음식점 등 유통단계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

나. EU

- 가축방역 및 축산장려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2년부터 행정지침에 의거 가축의 보유상태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92/102/EEC)
- 1997년 소의 개체식별제도 도입, 1998.1월부터 시행(EU Council Regulation No 820/97)
 - 개별 소마다 패스पोर्ट를 부여하여 질병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동시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
- 2000년부터 쇠고기의 유통단계 시행(No.1760/2000)
 - 쇠고기 판매점에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판매
- 2005. 1월부터 「식품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Traceability 적용 의무화

다. 호주

- 1999년 EU 요구에 따라 국가가축개체식별체계(NLIS) DB구축, EU 수출용 소에 우선 적용(Victoria주)
- 2004년 NLIS를 Traceability사업의 표준으로 결정하고, 모든 주에서 귀표 부착 의무화

라. 미국

- 2003년 12월 US. Animal Identification Plan(USAIP) 발표하여 2004년 7월 까지 모든 주에서 농장식별체계를 갖추도록 추진
- 2005년 5월 USDA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 1월까지 NAIS(가축개체 식별체계) 기준에 따르는 농장과 가축등록 완료 계획

5

기대 효과

-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 최소화
 - 소의 광우병 등 각종 질병 발생과 판매되는 쇠고기의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 가능
-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도 기여
- 소 관련 정보를 연차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
 -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활용

II.

이력추적제 추진현황

1. 추진경과 / 9
2. '08년 시범사업 추진실적 / 9
3.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 11
4. 이력 관리 기관별 역할과 기능 / 13
5. 주요 통계 / 14

II

이력추적제 추진현황

1

추진 경과

- '04. 10월부터 일부 브랜드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하면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꾸준히 개선, 보완
 - '04 : 9개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선정, 실시
 - 홈페이지 구축, 도축장 등 연계사업장 30개소(대상 사육두수 : 40천두)
 - '05 : 14개 브랜드경영체 참여 및 DNA 동일성검사 실시
 - DNA 동일성검사 전문인력 채용(3명) 및 실험실 확보
 - 도축장 13, 가공장 13, 판매장 30개소 연계(대상 사육두수 : 59천두)
 - '06 : 20개 브랜드경영체와 3개 시·군 참여
 - 도축장 21, 가공장 24, 판매장 93개소(대상 사육두수 : 214천두)
 - '07 : 경기도, 25개 시·군, 22개 브랜드경영체 등에서 참여
 - 도축장 39, 가공장 32, 판매장 178개소(대상 사육두수 : 730천두)
- '07.12.2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
 - '08.12.22.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사육단계가 시행되고,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는 '09. 6.22.부터 법 적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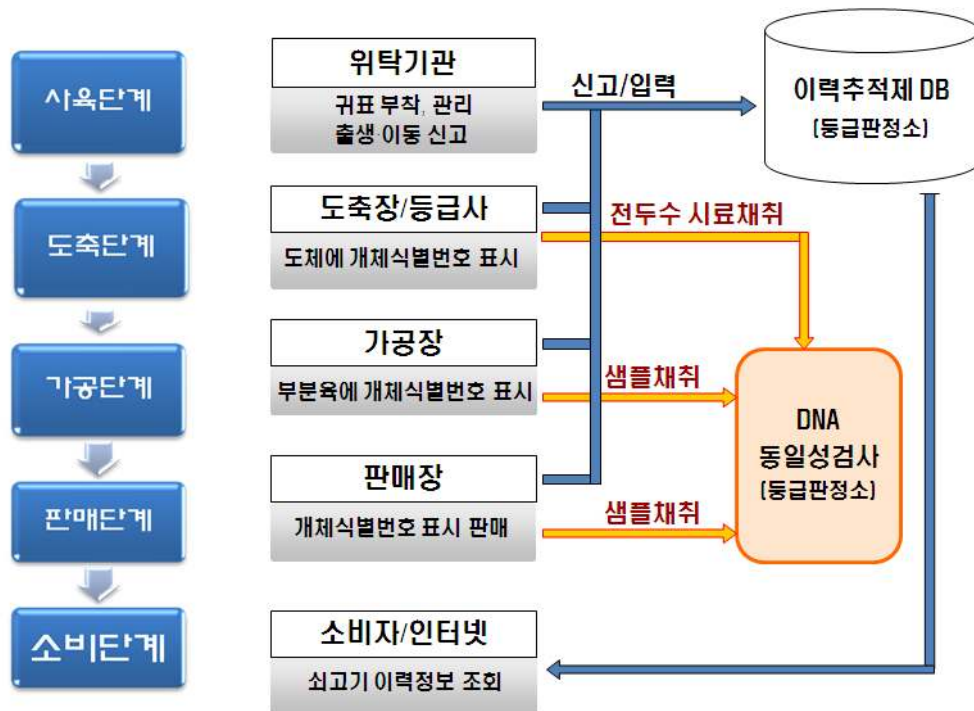
'08년 시범사업 추진실적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공포
 -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6.24~7.7), 입법예고(7.21~8.11), 규제심사(8.27~10.6), 법제처 심사(10.13~10.25), 국무회의 의결(12.2), 12.9 관보게재
 - 시행규칙은 입법절차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12.19 관보게재
- '08 시범사업을 전국에 걸쳐 시행하여 법 시행에 대비

- 시·군별로 위탁기관 145개소를 지정·운영하면서 소의 귀표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입력
 - 위탁기관 구성 : 지역축협 118개소, 전국한우협회 3개소, 한국낙농육우협회 3개소, 브랜드경영체 21개소
- 「이력추적제 운영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매주마다 사육단계, 유통단계별로 전문가·위탁기관·운영기관 등과 제도상 문제점, 전산시스템 등 현안과제 협의, 개선
- 소 사육농가 일제조사 등을 통해 현장 실사(2회 실시, 위탁기관 주관)
- 「이력지원실」 설치, 운영
 - 대표전화 1577-2633 설치, 전화·온라인 실시간 민원 처리
- 사육·유통단계 DNA 동일성검사방법 등 표준화를 위한 시범검사 실시
 - 사육단계는 8개 민간 검사기관에서 15,000건, 유통단계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12,000건 샘플채취, 검사
- 시·도, 농협,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관련 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행주체 등에 대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 시도·시군구 공무원, 위탁기관, 주요 유통업체 대상 교육 실시
 - 농협중앙회 제작 사육농가 홍보용 달력 13만부 배부, 축산물등급판정소 제작 유통업체 리후렛 126,000부 우송 등
 - 농촌정보문화센터주관 미디어 기획홍보 및 포스터·리후렛 제작배부
 - 시·도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육·유통 단계 현장 밀착 홍보

3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①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 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30일 이내 신고
 -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 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한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방문하여 30일 이내 귀표 부착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시 도축금지
 - 귀표 미부착 및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③ 가공단계

□ 식육포장처리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장부에 5일 이내 기록 보관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⑤ 소비단계

□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 공개

5 주요 통계

가. 주요 축산통계

지표명	단 위	'95	'00	'05	'06	'07
축산물 생산액 (농산물중 비중)	조원 (%)	6.0 (23.0)	8.1 (25.4)	11.8 (33.5)	11.7 (32.1)	11.3 (31.5)
전체 사육두수 (사육농가수)	소(천두, 천호)	2,594 (519)	1,590 (290)	1,819 (192)	2,020 (190)	2,201 (184)
	돼지(천두, 천호)	6,461 (46)	8,214 (24)	8,962 (12)	9,382 (11)	9,606 (10)
	닭(천수, 천호)	85,800 (203)	102,547 (218)	109,628 (136)	119,181 (3.6)	119,365 (3.4)
	낙농(천두, 천호)	553 (24)	544 (13)	479 (9)	464 (8)	453 (8)
전업농 사육비중 (농가수)	소(% , 천호)	7.9 (2.5)	25.0 (4.1)	32.5 (6.1)	34.5 (7.2)	38.0 (8.1)
	돼지(% , 천호)	36.5 (1.1)	60.2 (2.3)	77.8 (3.0)	80.0 (3.1)	82.1 (3.2)
	닭(% , 천호)	44.0 (0.7)	60.1 (1.1)	73.7 (1.4)	74.6 (1.5)	76.6 (1.6)
	낙농(% , 천호)	17.8 (1.3)	50.4 (3.7)	71.6 (4.5)	73.9 (4.4)	76.8 (4.4)
축산물 산지가격	수소(천원/600kg)	3,808	3,302	4,651	4,251	4,751
	돼지(천원/100kg)	155	166	253	248	221
	닭(원/kg)	1,242	1,187	1,440	1,195	1,118
생산비 (경영비)	비육우(천원/600kg)	2,743 (2,196)	2,173 (1,680)	4,594 (3,716)	4,539 (3,625)	-
	비육돈(천원/100kg)	138 (113)	152 (141)	174 (163)	174 (162)	-
	육계(원/kg)	1,046 (919)	959 (890)	1,008 (953)	1,001 (954)	-
	우유(원/L)	413 (253)	423 (304)	483 (374)	493 (386)	-
전체 수입실적 (대미 수입실적)	쇠고기(천톤)	148 (76)	238 (132)	143 (-)	179 (-)	203 (14)
	돼지고기(천톤)	36 (11)	96 (7)	174 (43)	211 (61)	248 (70)
	닭고기(천톤)	6 (5.5)	66 (54)	53 (21)	59 (41)	60 (20)
육류 소비량 (자급율,%)	쇠고기(천톤)	301 (51.4)	402 (52.8)	317 (48.1)	331 (47.9)	369 (46.4)
	돼지고기(천톤)	662 (94.4)	780 (86.4)	838 (80.7)	875 (76.7)	931 (74.1)
	닭고기(천톤)	268 (97.8)	327 (80.1)	357 (83.5)	417 (81.8)	434 (86.2)

나. 주요 정책지표

분야별	지표명	'05	'06	'07
가축개량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47.9	44.5	50.9
	두당 연간 산유량(kg)	8,142	8,362	8,554
	돼지 일당증체량(g)	995	961	960
	육용계 체중(6주)(kg)	2.615	2.530	2.643
브랜드	축산물 브랜드 개소수(개) (브랜드사업 지원 개소수)	845 (49)	793 (73)	700 (63)
	브랜드 사육비중(%)	한우 30, 돼지 48	한우 32, 돼지 51	한우 32, 돼지 52
	브랜드 인증 개소수(개)	한우 13, 돼지 12	한우 15, 돼지 14 육우 2, 육계 5	한우 21, 돼지 20 육우 1, 육계 6
유통개선	가축계열화 참여율(%)	양돈 15, 양계 71	양돈 16, 양계 72	양돈 18, 양계 80
	학교우유 급식율(%)	47.6	49.8	51
	LPC 도축점유율(%)	18.7	20.4	21.6
위생 안전성	HACCP 적용 도축장 수(개)	142	144	146
	쇠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두수 (참여 브랜드 및 지역수)	59 (14)	210 (23)	730 (78)
	잔류물질 위반율(%)	0.25	0.26	0.23
가축분뇨	가축분뇨 총 발생량(천톤)	41,844	43,776	45,145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천톤)	2,744	2,607	2,019
	액비저장조 연간 지원 개소수(개)	647	520	650
	자연순환농업 협약 체결수(개)	1	20	39
조사료	조사료 재배면적(천ha)	141	145	155
	조사료 수입량(천톤)	699	757	999
	청보리 재배면적(ha)	5,566	9,070	12,375
경영안정	축산자조금 대상축종 수(개)	5(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6('05년 5개축종 + 양육 추가)	7(한우, 양돈, 산란계, 육계, 낙농, 오리, 양육)
	가축공제 가입율(%)	33.3	40.7	43.9
	송아지생산안전제 가입두수(천두)	619	722	894
방역	소브루셀라병 발생현황(건, 두)	2,590 / 17,690	4,498 / 25,454	2,333 / 11,547
	뉴캐슬병 발생현황(건, 두)	18 / 213	16 / 325	4 / 4
	돼지열병발생현황(건, 두)	5 / 811	2 / 1,074	5 / 58
수출	돼지고기 / 닭고기 수출량(천톤) (*'99년 돼지고기 수출량 102천톤)	15 / 2.5	12 / 2.9	13/5.7

다. 국내 총부가가치(GVA)중 축산업비중

(경상가격, 단위 : 10억원)

구분 년도	국 민 총생산	국 내 총부가가치 (A)	농 립 어 업	농 업 (B)	축산업 (C)	B/A	C/A	C/B
1970	2,763.9	2,518.8	736.7	643.5	58.1	25.5	2.3	9.0
1975	10,386.1	9,433.2	2,559.5	2,263.4	150.6	24.0	1.6	6.7
1980	38,774.9	34,489.6	5,576.0	4,774.3	404.1	13.8	1.2	8.5
1985	84,061.0	75,132.4	10,173.6	8,729.3	910.5	11.6	1.2	10.4
1990	186,690.9	167,713.4	14,998.3	13,017.6	1,401.7	7.8	0.8	10.8
1995	398,837.7	359,582.3	22,829.2	19,924.7	2,934.6	5.5	0.8	14.7
1996	448,596.4	402,230.4	23,961.6	20,861.1	2,898.6	5.2	0.7	13.9
1997	491,134.8	438,596.6	23,896.3	20,548.6	2,197.1	4.7	0.5	10.7
1998	484,101.8	438,638.3	22,355.5	19,030.6	1,308.9	4.3	0.3	6.9
1999	529,499.7	472,742.2	24,812.2	21,424.2	2,694.1	4.5	0.6	12.6
2000	578,664.5	514,054.0	25,029.8	21,672.4	2,597.6	4.2	0.5	12.0
2001	622,122.5	550,008.1	24,806.2	21,529.3	2,598.3	3.9	0.5	12.1
2002	684,263.6	602,091.9	24,654.9	21,580.2	3,242.7	3.6	0.5	15.0
2003	724,675.0	639,317.5	24,166.1	20,976.9	2,841.5	3.3	0.4	13.5
2004	779,380.5	694,317.5	26,246.2	23,237.6	3,642.3	3.3	0.5	15.7
2005	810,515.9	721,474	24,631.4	21,759.7	4,354.3	3.0	0.6	20.0
2006	848,044.6	754,004	24,635.1	21,931.8	3,719.4	2.9	0.5	17.0
2007(P)	901,188.6	800,304	23,982.2	21,352.4	2,802.6	2.7	0.4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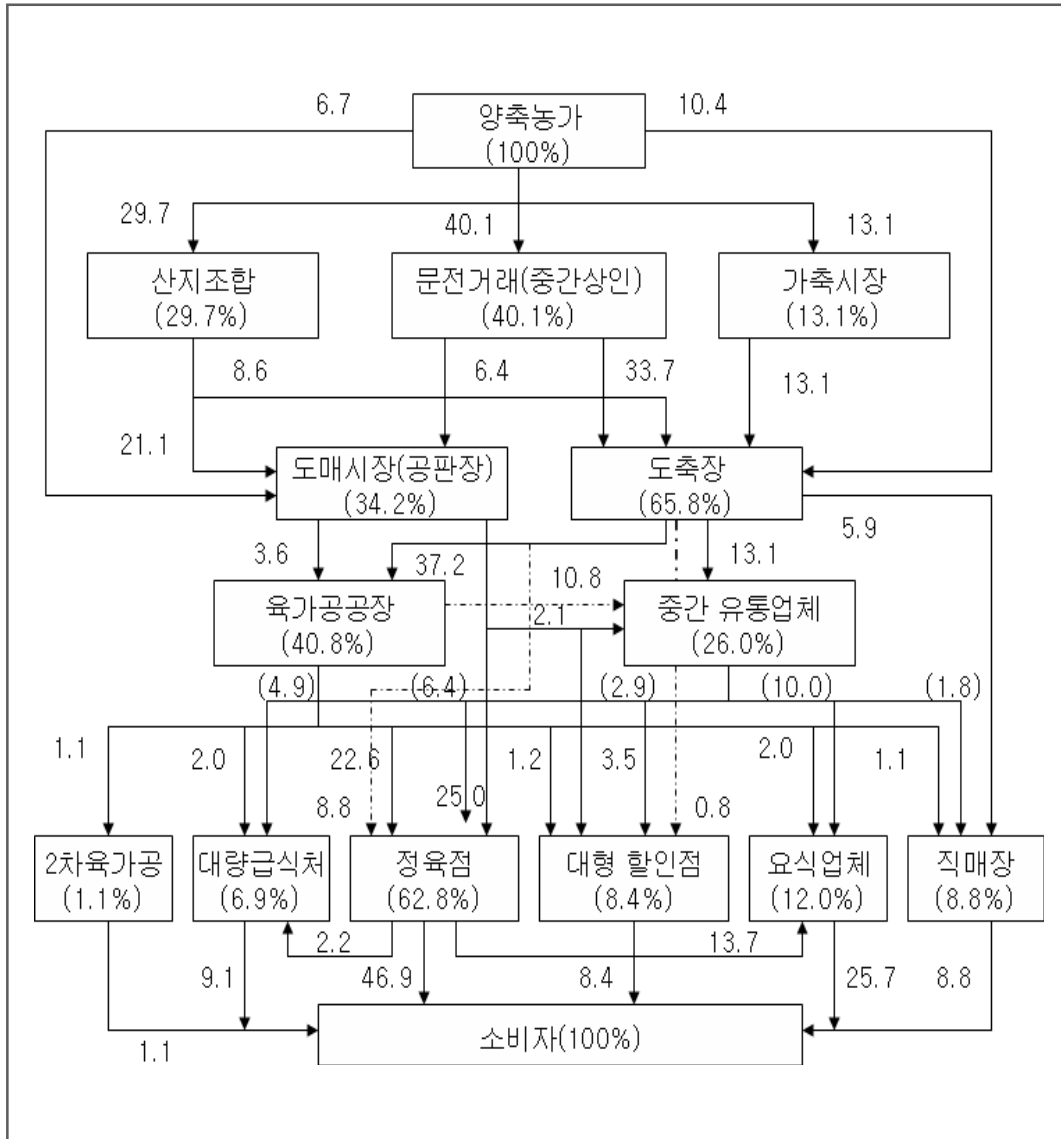
※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

라. '08. 9월 가축통계조사결과

(단위 : 천마리, 천가구, %)

구 분	'03.12	'06.12	'07			'08			증 감		
			6	9	12	3	6	9	전분기	전년동기	
소	총 마리수	1,999	2,484	2,635	2,675	2,654	2,691	2,894	2,915	21 (0.7)	240 (9.0)
	- 한·육우	1,480	2,020	2,179	2,220	2,201	2,241	2,448	2,470	22 (0.9)	250 (11.3)
	·그중한우	1,277	1,841	2,006	2,051	2,034	2,083	2,276	2,300	24 (1.1)	249 (12.1)
	·가임암소	622	871	933	944	941	974	1,029	1,034	5 (0.5)	90 (9.5)
	- 젖 소	519	464	456	455	453	450	445	445	0 (0.0)	-10 (-2.2)
	·가임암소	356	319	315	312	310	307	307	304	-3 (-1.0)	-8 (-2.6)
	사육가구수	199	198	199	196	192	195	197	194	-3 (-1.5)	-2 (-1.0)
	- 한·육우	188	190	191	188	184	188	190	186	-4 (-2.1)	-2 (-1.1)
	·그중한우	183	186	185	182	179	183	185	181	-4 (-2.2)	-1 (-0.5)
	- 젖 소	10.5	8.3	7.9	7.8	7.7	7.4	7.2	7.2	0.0 (0.0)	-0.6 (-7.7)
돼지	총 마리수	9,231	9,382	9,462	9,659	9,606	8,981	9,153	9,284	131 (1.4)	-375 (-3.9)
	·모 돈	975	1,012	1,022	1,013	1,004	936	937	919	-18 (-1.9)	-94 (-9.3)
	사육가구수	15.2	11.4	10.5	10.2	9.8	7.9	8.0	7.8	-0.2 (-2.5)	-2.4 (-23.5)
닭	총 마리수	99,019	119,181	151,114	121,779	119,365	131,781	144,404	120,434	-23,970 (-16.6)	-1,345 (-1.1)
	- 산란계	48,351	57,238	56,542	55,117	56,093	57,850	59,723	58,200	-1,523 (-2.6)	3,083 (5.6)
	- 육 계	44,803	55,375	87,359	59,946	56,227	67,013	77,853	55,555	-22,298 (-28.6)	-4,391 (-7.3)
	사육가구수 (가구)	144,000	3,559	4,149	3,627	3,420	3,622	3,761	3,331	-430 (-11.4)	-296 (-8.2)

마. 국내 쇠고기 유통체계



바. 식육유통업체 현황('07 기준)

(단위 : 개소)

시·도별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전체	10인이상사업자			
계	80	1,139	273	48,362	77	315
서울	1	248	26	7,927	25	51
부산	-	69	5	3,207	4	25
대구	1	104	28	2,513	9	17
인천	1	33	13	2,179	3	22
광주	1	35	7	1,878	3	11
대전	1	17	2	1,349	4	10
울산	3	24	6	1,114	3	11
경기도	12	63	23	9,187	13	79
강원도	10	79	22	2,065	1	8
충청도	10	103	46	1,850	1	8
전라도	4	45	24	2,343	1	9
전남	10	45	6	2,323	2	12
전북	9	22	2	2,743	1	10
경북	8	70	20	3,705	2	17
경남	8	167	39	3,341	5	20
제주	1	15	4	638	-	5

사. 소 수집상(중개상) 및 가축시장 현황

(단위 : 명)

시·도별	수집 중개상(농가수)	거래 가축		가축시장
		한육우	젖소	
계	966	958	8	80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6	6	6	-
인천	16	16	16	-
광주	5	4	1	-
대전	5	5	-	-
울산	23	23	-	-
경기도	90	86	4	6
강원도	136	135	1	5
충청도	37	37	-	8
전라도	163	161	2	7
전남	98	98	-	7
전북	168	168	-	13
경북	103	103	-	17
경남	116	116	-	16
제주	-	15	4	1

아.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액 비교

(경상가격, 단위 : 10억원)

구분 년도별	농산물 생산액	경 증 부 문			축산	
			미곡(쌀)	채소류		기 타
1970	789.1	661.8 (83.9)	294.2 (37.3)	110.9 (14.1)	256.7 (32.5)	117.7 (14.9)
1975	2,651.2	2,298.5 (86.7)	1,084.1 (40.9)	402.5 (15.2)	811.9 (30.6)	302.8 (11.4)
1980	6,415.1	5,138.9 (80.1)	2,188.4 (34.1)	1,449.1 (22.6)	1,501.4 (23.4)	1,227.3 (19.1)
1985	12,225.4	9,222.3 (74.7)	4,440.6 (36.3)	2,241.1 (18.3)	2,540.6 (20.8)	2,965.9 (24.0)
1990	17,728.1	13,776.5 (77.7)	6,538.0 (36.9)	3,323.2 (18.5)	3,915.3 (22.1)	3,921.4 (22.1)
1995	25,855.3	19,895.9 (77.0)	6,759.8 (26.1)	6,516.0 (25.2)	6,620.1 (25.6)	5,957.6 (23.0)
1997	29,257.7	22,354.6 (76.4)	9,192.8 (31.4)	6,317.0 (21.6)	6,844.8 (23.4)	6,903.1 (23.6)
1998	29,638.6	22,123.6 (74.6)	9,182.6 (30.9)	6,720.5 (22.7)	6,220.5 (21.0)	7,514.9 (25.4)
1999	31,857.5	23,920.8 (74.9)	10,045.1 (31.8)	6,817.6 (21.5)	6,837.6 (21.6)	7,936.6 (25.1)
2000	31,829.0	23,746.6 (74.6)	10,504.6 (33.0)	6,724.2 (21.1)	6,517.8 (20.5)	8,082.4 (25.4)
2001	32,447.5	24,135.5 (74.4)	10,721.7 (33.1)	7,273.6 (22.4)	6,140.2 (18.9)	8,312.0 (25.6)
2002	32,163.7	23,094.9 (71.8)	9,556.4 (29.7)	6,769.4 (21.1)	6,769.1 (21.0)	9,051.9 (28.2)
2003	31,808.7	22,939.1 (72.1)	8,835.9 (27.8)	7,618.9 (24.0)	6,494.3 (20.1)	8,869.6 (27.9)
2004	36,155.5	25,315.6 (70.0)	9,963.1 (27.6)	7,669.3 (21.2)	7,683.2 (21.2)	10,839.9 (30.0)
2005	35,088.9	23,321.7 (66.5)	8,536.8 (24.3)	6,918.6 (19.7)	7,866.3 (22.5)	11,767.2 (33.5)
2006	35,232.4	23,556.1 (66.9)	8,405.7 (23.7)	7,353.4 (20.9)	7,797.0 (22.1)	11,676.3 (33.1)
2007	34,685.0	23,407.7 (67.5)	7,857.5 (22.7)	7,483.0 (21.6)	8,067.2 (23.2)	11,277.3 (32.5)

자료 : 농림 통계연보
주) ()는 구성비

자. 축종별 축산물 생산액 현황

(경상가격, 단위 : 억원)

연 도	계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닭·계란	기타
1970	1,177	263 (22.3)	31 (2.6)	248 (21.1)	620 (52.7)	15 (1.3)
1985	31,216	9,526 (30.5)	4,795 (15.4)	10,432 (33.4)	5,613 (18.0)	856 (2.7)
1990	39,214	9,224 (23.5)	7,733 (19.7)	11,738 (29.9)	8,535 (21.8)	1,984 (5.1)
1995	59,576	17,756 (29.8)	11,030 (18.5)	14,066 (23.6)	13,355 (22.4)	3,369 (5.7)
2000	80,824	18,788 (23.3)	14,236 (17.6)	23,720 (29.3)	14,720 (18.2)	9,360 (11.6)
2001	83,120	16,997 (20.4)	15,003 (18.1)	26,923 (32.4)	16,909 (20.3)	7,288 (8.8)
2002	90,519	21,363 (23.6)	16,449 (18.2)	29,184 (32.2)	14,612 (16.1)	8,911 (9.8)
2003	88,696	24,633 (27.8)	15,168 (17.1)	26,812 (30.2)	13,362 (15.1)	8,721 (9.8)
2004	108,399	28,937 (26.7)	15,499 (14.3)	36,668 (33.8)	19,359 (17.9)	7,936 (7.3)
2005	117,672	31,479 (26.8)	15,831 (13.5)	37,586 (31.9)	21,985 (18.7)	10,791 (9.1)
2006	116,763	32,735 (28.0)	15,582 (13.4)	36,093 (30.9)	21,974 (18.8)	10,379 (8.9)
2007	112,773	34,478	15,851	33,197	19,812	10,435

※ 자료 : 농림 통계연보

차. 축산물 소비·수급동향

□ 총괄

구분		'90	'00	'02	'03	'04	'05	'06	'07
1인당 소비량	육류(kg)	19.9	32.0	33.5	33.3	31.3	31.9	33.6	35.4
	쇠고기	(4.1)	(8.5)	(8.5)	(8.1)	(6.8)	(6.6)	(6.8)	(7.6)
	돼지고기	(11.8)	(16.5)	(17.0)	(17.3)	(17.9)	(17.8)	(18.1)	(19.2)
	닭고기	(4.)	(7.0)	(8.0)	(7.9)	(6.6)	(7.5)	(8.1)	(9.0)
	계란(개)	167	184	203	191	193	220	223	224
총량	우유(kg)	43.8	59.6	64.2	62.4	63.9	62.7	63.6	63
	육류(천 ^M /t)	853.8	1,509.6	1,596.1	1,600.2	1,503.5	1,512.3	1,630.8	1,716.0
	국내산	769.1	1,157.9	1,176.0	1,204.6	1,176.1	1,127.0	1,151.8	1,217.3
	수입	84.7	351.7	420.1	395.6	327.4	385.3	479.0	498.7
	(자급율)	(90.1)	(76.7)	(73.7)	(75.3)	(78.2)	(74.5)	(70.6)	(70.9)
소비량	쇠고기	177.0	402.4	402.7	390.2	327.9	316.8	330.6	368.7
	국내산	94.9	212.4	147.4	141.6	144.9	152.4	158.2	171.2
	수입	82.1	190.0	255.3	248.6	183.0	164.4	172.4	197.5
	(자급율)	(53.6)	(52.8)	(36.6)	(36.3)	(44.2)	(48.1)	(47.9)	(46.4)
	비량	돼지고기	504.8	779.9	810.4	834.0	856.6	838.5	874.7
국내산		502.2	674.0	739.4	776.0	744.2	676.6	671.1	690.1
수출		2.6	105.9	71.0	58.0	112.4	161.9	203.6	241.2
(수출)		(5.9)	(16.2)	(18.1)	(27.1)	(15.8)	(14.7)	(12.2)	(12.6)
(자급율)		(99.5)	(86.4)	(91.2)	(93.0)	(86.9)	(80.7)	(76.7)	(74.1)
비량	닭고기	172	327.3	383.0	376	319	357	417	434
			(65.8)	(93.8)	(89.0)	(32.0)	(59.0)	(76.0)	(86)

(주) 닭고기 총소비량 중()는 수입물량으로 외서에 포함

□ 쇠고기

연 도	총 소 비 량			자급율 (A/B)	1인당 소비량
	국내산(A)	수입육	계(B)		
	천M/T				kg
'70	37.3	-	37.3	100	1.2
'80	93.1	6.9	100	93.1	2.6
'85	115.7	4.7	120.4	96.1	2.9
'90	94.9	82.1	177.0	53.6	4.1
'95	154.7	146.5	301.2	51.4	6.7
'97	228	134	362	62.9	7.9
'98	260.1	85.4	345.5	75.4	7.4
'99	239.7	153.0	392.7	61.0	8.4
'00	212.4	190.0	402.4	52.8	8.5
'01	164.4	219.7	384.1	42.8	8.1
'02	147.4	255.3	402.7	36.6	8.5
'03	141.6	248.6	390.2	36.3	8.1
'04	144.9	183.0	327.9	44.2	6.8
'05	152.4	164.4	316.8	48.1	6.7
'06	158.2	172.4	330.6	47.9	6.8
'07	171.2	197.5	368.7	46.4	7.6

카. 축산물 등급판정 현황

□ 등급판정 현황

(천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6까지
소	도축	729	633	584	577	612	630	684	354
	판정	727	630	583	577	612	630	682	352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돼지	도축	14,324	15,338	15,287	14,620	13,491	13,131	13,675	6,789
	판정	13,817	14,983	15,133	14,575	13,433	13,073	13,612	6,766
	비율	97	98	99	100	100	100	100	100

□ 소·돼지도체 등급별 내역

◦ 쇠고기(한우) 도체등급별 내역

(%)

구분	판정 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1 ⁺⁺	1 ⁺	1	A	B
	천두					
'96	388		-	19.4	18.8	71.4
'97	790		0.5	17.9	16.9	74.3
'98	948		3.4	11.9	42.7	50.1
'99	873		4.4	14.5	43.3	51.3
'00	814		6.5	18.3	45.1	48.5
'01	548		9.2	20.7	43.7	48.4
'02	446		12.7	22.5	39.8	49.3
'03	361		14.1	19.2	43.0	45.0
'04	324	1.3	16.3	18.3	42.3	42.2
'05	391	9.8	15.2	22.9	47.4	41.4
'06	426	8.0	15.2	21.3	49.1	40.3
'07	492	7.5	18.4	25.0	40.2	46.5
'08.7까지	307	7.0	19.1	27.2	37.0	49.2

※ 1⁺⁺ 등급은 '04.12월, 1⁺등급은 '97.12월부터 신설됨



세부 업무 매뉴얼

1. 사육단계 / 27
2. 도축단계 / 39
3. 포장처리단계 / 44
4. 판매단계 / 53
5. 묶음번호 관리요령 / 58
6. DNA동일성검사 시범사업요령 / 60

Ⅲ

세부 업무 매뉴얼

1

사육단계

1. 소의 출생신고

가.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나. 신고방법

- 사육농가에서 송아지가 출생하면 지역의 위탁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 출생신고를 하는 자는 <표 1호>서식의 ‘출생등 신고서’ <음영부분>를 작성,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위탁기관은 고령 등의 사유로 귀표부착이 곤란한 농가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다. 신고기한

- 출생 후 30일 이내

라. 신고내용

- ‘소의 출생등 신고서’의 음영처리 부분을 서면이나 구술 등 방법으로 위탁기관에 신고
 - 여러 마리를 신고할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가능

마. 신고서의 기록·관리

- 위탁기관에서 서면 외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경우, <표 1호> 서식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록·보관
- 위탁기관은 신고자로부터 신고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 가능

※ 소의 출생등 신고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위탁기관
--------	------

신고서 작성안내

유 의 사항	<p>1. 출생 및 수입·수출신고는 ①~⑫란을 기재합니다. 또한, ⑨란의 소의 종류 및 ⑩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하며, ⑪~⑫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야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p> <p>2. 양도 및 양수신고는 ①~⑤란과 ⑬~⑱란을 적습니다. 또한, ⑬란의 양도·양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p> <p>3. 폐사신고는 ①~⑦란과 ⑲란을 적고, ⑲란의 폐사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p> <p>4. 이 신고서는 소유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p> <p>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역을 적고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날인할 수 있습니다.</p> <p>6. 여러 마리의 출생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p> <p>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p> <p>가. 개체식별번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p>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 육우: 젖소 중 착유하지 않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p>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p> <p>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p>
--------	---

2. 소의 양도·양수(도축출하 포함), 수입·수출, 폐사신고

가.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소가 양도·양수 또는 수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내에서 사육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사육하고 있던 소를 생우로 수입한 경우
- 소가 폐사된 경우
- 도축을 위해 출하하는 경우

나. 신고방법

-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한 경우 <표 2호>의 ‘소의 출생등 신고서’에 의거 지역의 위탁기관에 신고
 - 귀표가 부착되지 않으면 양도·양수, 수입·수출 불가
- 도축을 위해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
 - 도축의뢰자는 출하농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

다. 신고기한 : 이동 등 발생후 30일 이내

라. 신고내용

-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의 경우 ‘소의 출생등 신고서’ 음영처리부분을 서면 등 방법으로 위탁기관에 신고
 - 여러 마리를 신고할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가능
-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출하농가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농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도축검사신청서에 개체식별번호등을 기재하여 제출

3. 기존소의 신고

가. 신고대상

- 이 법 시행당시(2008.12.22 이전) 소유자등이 가지고 있는 국내산 한·육우 및 젖소

나. 신고방법

- 사육하고 있는 소가 축산정책사업 목적으로 귀표는 부착되고, 개체식별 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는 경우 <표 3호>의 ‘기존 소의 신고서’를 위탁기관에 신고
 - 귀표부착 인정가능 소 : 축산법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된 소
- 사육하고 있는 소가 귀표부착이 되지 않은 경우,
 - 귀표부착을 한 후 <표 3호>의 기존 소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신고

다. 신고기한

- 2009.6.21까지 귀표 부착 및 전산 등록

라. 신고내용

- 귀표가 부착된 기존 소는 <표 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위탁기관에 제출
 - 출생신고 내용중 개체식별번호의 기재는 송아지개체식별번호란에 기재
 - 여러마리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가능

4. 변경신고(기록누락 오류수정 포함)

가. 신고대상

- 출생 등 신고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중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중 공통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중 공통신고 사항 이외의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을 하고자 하는 자

나. 신고방법

- 소의 소유자 등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는 <표 4호>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
- 소의 소유자 등이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제출

다. 신고내용

- 변경신고
 -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중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통신고사항(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칭, 주민번호, 주소, 사육소재지, 사육개시일) 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서식에 변경신고사유서(변경사유란에 기재 가능),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력지원실)에게 제출
 - 이력지원실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두어 운영한다.
- 기록·누락오류 수정 신고
 - 기록·누락오류수정의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개체식별번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 및 새롭게 기록해야 하는 사항 등
 -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권으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사항 등

<표4호>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전화:)			
기관 또는 업체명		개체식별 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변경사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귀하					
구비서류	1. 변경신고 사유서(위 변경사유란에 적을 수 있음)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귀표부착의 예외시 조치

가. 귀표부착 예외 대상

-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귀표부착의 예외로 규정한 경우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나. 처리 방법

- 소 사육농가 중 귀표부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귀표 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귀표부착예외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를 받은 당해 위탁기관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 개체가 섞이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관리하여야 한다.
- 소 소유자는 당해 소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 귀표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표5호>

귀표 부착예외 확인서			
신청인 (소의 소유자)	① 성명 · 법인명		②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소의 출생등 연월일		소의 종류	
⑤ 개 체 식 별 번 호			
⑥ 사 육 소 재 지			
<p>「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귀표 부착의 예외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표6호>

사육단계 업무흐름

업무흐름		추진내용
①출생(수입 수출)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지 출생시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귀표 부착 ○ 귀표부착 후 이력추적시스템에 정보 입력
②양도·양수, 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양도·양수, 폐사시 위탁기관에 신고 ○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 정보를 도축검사 신청서에 기재 통보
③ 기존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소(2008.12.22이전에 가지고 있는 소)도 위탁기관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표부착우 : 이력정보등록 - 미귀표부착우: 귀표부착후 이력정보등록
④ 변경신고 (누락·오류의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신고된 사항중 개체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 누락·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2

도축단계

1. 도축신고(도축출하신고 포함)

- 소유자 등이 소를 도축하기 위해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작성하는 도축검사신청서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신고
 -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신청서와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검사관과 축산물등급판정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소유자 등(도축의뢰자 포함)은 도축의뢰시 농가명(최종 소유자 등), 주민등록번호,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도축업자는 도축하고자 하는 소의 귀표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축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
-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는 확인한 해당 도체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를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
- 도축업자는 해당 도체가 지정가공장 등으로 반출될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하여 반출자의 인적사항, 상호, 주소 등을 신고
- 신고기한
 - 도축 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 검사가 완료 된 날부터 3일 이내 전산신고

○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p>1.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p>	<p>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중에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고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의 갈비 내부 등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한다.</p> <p>라.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2. 개체식별번호 관리</p>	<p>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육에 개체식별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축장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p> <p>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하여야 하며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라. 그 밖에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2.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 대상

-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리방법

-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을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
- 검사관은 <표7호>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 신고서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이력지원실로 개체식별번호 발급 요청
- 농림수산물부 이력지원실은 개체식별번호 부여
- 검사관은 부여받은 번호를 해당도체에 부여
-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3. 장부의 기록관리·증명서교부 등

- 도축업자는 도축신고에 따른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날짜별로 적고 관리 하여야 함
 - 도축업자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 또는 자체 전산망에 도축처리결과를 입력하여 연계시스템에 의거 이력제 전산망으로 입력 된 경우 개체식별 대장에 등록 한 것으로 같음
-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등급판정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

4. DNA 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축산물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 후 해당도체의 시료를 수거하여 시료봉투에 넣은 다음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을 시료봉투에 부착하여 등급판정소 본소 DNA검사실로 이송

<표8호>

도축단계 업무흐름

업무흐름		조치사항
①도축신청 접수		○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②개체식별번호확인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③위생검사 및 도축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도축 ○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합격/불합격)
④라벨출력 및 부착		○ 소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
⑤DNA검사 시료채취		○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도체에서 시료채취 후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 본소에 우송
⑥등급판정		○ 축산물등급판정사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및 자료전송

3

포장처리단계

1. 식육포장처리 실적 신고

가. 신고대상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 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나. 신고기한

-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 신고내용

- 시행령에서 지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표9호>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개체식별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함
- 해당 쇠고기의 판매 또는 반출 시 판매·반출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입력

<표9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① 포장처리일	② 개체식별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kg)	⑤ 매입처	
				상호	사업자번호

※ 적는 요령

- ① 포장처리일은 매입한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개체식별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쇠고기 또는 부분육의 무게(kg)를 적습니다.
- ⑤ 매입처는 쇠고기를 구입하였거나 포장을 의뢰한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여건에 따라 신고 항목 등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①~⑤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 및 관리

구 분	식육포장처리업자
1.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	<p>가. 쇠고기를 포장처리 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2. 개체식별번호 관리	<p>가.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한다.</p> <p>나.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p>
<p>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2. 장부의 기록 방법

○ 대상

- 법 시행령에서 지정 식육포장처리업자
- 법 시행령 지정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

○ 기록내용

- 시행령에서 지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표9호>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포장처리 된 쇠고기를 판매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표10호>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함

○ 영수증거래명세서 교부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 시행령으로 지정 되지 않은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에도 쇠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반출한 경우 <표9호>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과 <표10호>서식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판매·반출실적을 각각 자체 장부에 기재(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표10호>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① 판매· 반출일	② 개체식별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⑤ 판매·반출처	
				상호	사업자번호

※ 적는 요령

- ① 판매·반출일은 해당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개체식별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쇠고기의 무게(kg)를 적습니다.
- ⑤ 판매·반출처는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3. 식육포장처리 신고 사업자 지정 신청

○ 대상

- 시행령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지정을 받으려는 자

○ 신고내용

- 신고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표11호>의 ‘식육포장처리신고 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영업허가증 사본,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서류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표12호>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실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4. DNA 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의 동일성검사를 위한 관계자의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함

<표11호>

식육포장처리신고 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		
	④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영업장 면적	m ²	⑦ 종업원 수	
<p>「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식육포장처리 신고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p>※ 구비서류</p> <p>1. 영업허가증 사본 1부</p> <p>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p>				

<표12호>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통지서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		
	④ 대표자		⑤ 생년월일	
	⑥ 작업장 면적	m ²	⑦ 종업원 수	
<p>「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식육포장처리업자로 지정하였기에 이 통지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p>				

<표13호>

포장처리단계 업무흐름

업무흐름		조치사항
①가공장 입 고		○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확인
②발골·정형		○ 가공장에 입고된 도체의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정형
③부위별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
④BOX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개체식별번호와 일치된 라벨을 겹포장지에 부착 -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 표시
⑤출 하		○ 거래명세서와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

4. 판매단계

가. 판매업체 의무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 등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
-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나. 전산입력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관리 하고자 하는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표14호>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관리

구 분	식육판매업자
1.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p>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 등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2. 개체식별번호 관리	<p>가.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p>
<p>3. 그 밖에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다. 거래내역서의 기록관리

-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의 개체추적이 용이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 <표15호>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만 전산신고업체는 전산신고 입력내용을 거래내역서로 갈음함
-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서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표15호>

거 래 내 역 서

00년 0월 0일

거래 연월 일	식 육 종 류					물량 (kg)	등 급						부위	원산지 ()	매입처 ()	개체 식별 번호	
	한우 고기	육우 고기	젓소 고기	수 입 소고기	돼지 고기		1 ⁺⁺	1 ⁺	1	2	3	등외					

라. DNA 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식육판매업자는 개체의 동일성검사를 위한 관계자의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함

마.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정보 제공

- 식육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쇠고기의 개체이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인터넷,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게시
- 정보의 공개 항목
 - 개체식별번호,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종류, 암수 구분, 소유자등의 성명, 사육시설의 소재지, 도축장 명칭 및 소재지,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쇠고기의 등급판정 결과,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표16호>

판매단계 업무흐름

업무흐름		조치사항
①판매장 입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 확인 ○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 등 기록관리
②부분육의 소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식별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작업 ○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시
③개체식별번호게시 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게시하여 판매 ○ 소포장단위 판매시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후 판매
④이력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 터치스크린,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 정보 공개

5. 묶음번호 관리요령

가. 묶음번호 표시 방법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표17호>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등급표시 의무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동일한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 여러 개의 다른 개체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묶음번호 구성범위 및 관리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6. DNA 동일성검사 시범사업요령

DNA 동일성검사 개요

- DNA 동일성검사는 쇠고기의 이력 정보가 사육 → 도축 → 가공 → 판매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
- 개체마다 DNA 구조가 다르고, 동일 개체에서는 동일한 DNA 구조로 되어있는 점을 이용, 사육·도축·가공된 고기와 판매되고 있는 고기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유전자감식 기법으로 검사하는 것임

실시목적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감시함으로써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보
- 위생·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추적검사시스템 확립
- 우리나라 소의 유전정보를 DB화하여 한우의 유전적 특성 규명 등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

검사 추진체계

1) 검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도축장에서의 보관용 시료의 채취·보관
- 가공장 및 판매장에서의 검사용 시료 채취 및 송부
 - 단, 식육판매장 시료는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
- DNA 분석을 통한 동일성검사, DNA의 D/B화 등

2) 시료채취 사업장 및 시기·물량

- 법 시행시점 및 지도단속기관, 시범사업 등을 고려하여 '09년 초 계획 수립,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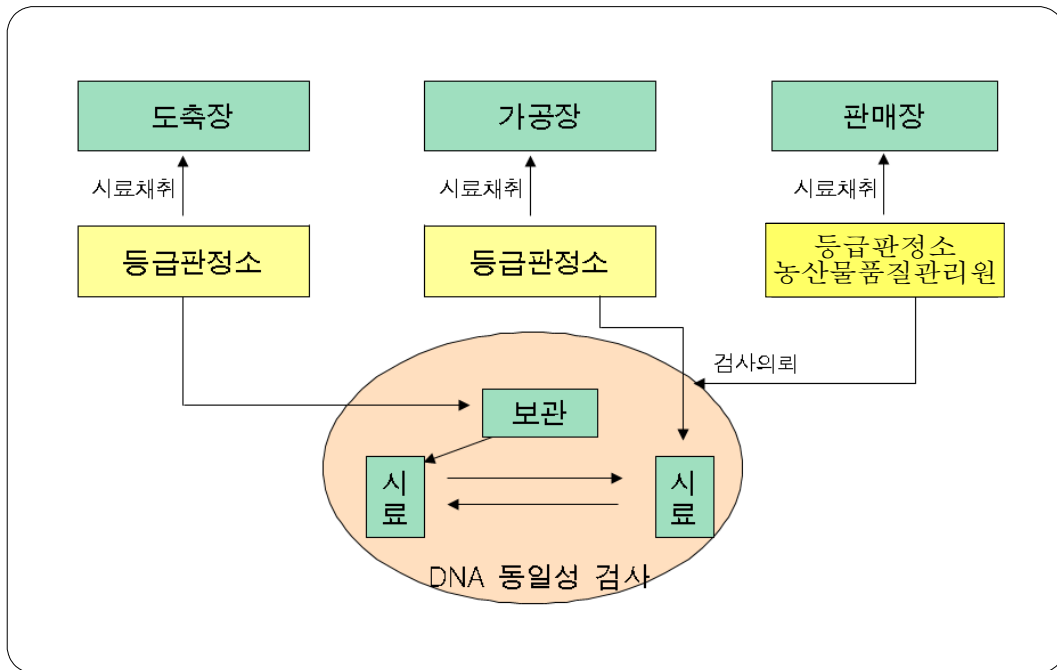
<표18호>

DNA 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등 계획

		도축	가공	판매
시료수거 기관	'09. 6.22 이전	판정소	판정소	판정소
	'09. 6.22 이후	판정소	시·도	농관원
수거대상	'09. 6.22 이전	· 개체식별대장 등록 개체 · 개체식별번호 표시 개체	· 가공장	판매장
	'09. 6.22 이후	모든 소	· 무작위 샘플	· 무작위 샘플
수거물량	'09. 6.22 이전	· 개체식별번호 표시 개체	· 사업계획에 따름	
	'09. 6.22 이후	· 도축물량 전체	·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 송부	
DNA 검사기관	축산물등급판정소			









<표19호>

DNA 동일성검사 추진체계



<표20호>

DNA 동일성검사 업무흐름

업무흐름		조치사항
보관용시료채취		○ 도축장에서 보관용 DNA 시료 채취 후 등급판정소로 이송
시료 보관		○ 채취된 DNA 시료를 등급판정소에 보관
검사용시료채취		○ 가공장, 판매장에서 검사용 DNA 시료 채취
D N A 동 일 성 검 사	DNA 추출	 ○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 추출
	PCR 증폭	 ○ 판독을 원하는 특정 DNA의 부분 (단편)증폭
	전기영 동	 ○ 증폭된 특정 DNA의 존재여부 및 농도(양) 확인
	DNA 판독	 ○ 유전자분석기를 통하여 DNA 지문(특성)확인
DNA 동일성 여부확인	 ○ 도축장에 채취된 시료와 가공장·판매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DNA 동일성여부 확인	

□ 보관용 시료 채취·운송·보관 방법

- 시료 채취 전 지정된 시료봉투에 도축일, 채취일, 도축번호, 도축장명을 기입
- 시료봉투의 도축번호와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 도체의 목심부위에서 지방이 없는 정육부분만 0.1g 내외로 채취하여 시료봉투에 투입
 - 이때 봉투 안에 표시되어 있는 원 밖으로 시료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건조가 잘 되도록 봉투 밖을 손으로 눌러 평평하게 함 (두께 : 0.5~1mm내외)
- 채취한 시료는 등급판정사 사무실로 이송하여 개체식별번호와 도축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시료봉투 전용 라벨프린터로 라벨지를 출력하여 시료봉투 뒷면에 부착한 후 건조·보관
 - 건조기에 의해 80℃에서 3시간 건조하고, 건조가 끝나면 비닐팩에 넣어 시료 보관용기에 보관
- 보관용기에 보관 중인 시료는 발송대장 <표20호>에 기록 한 후 택배 등을 이용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 DNA 검사실로 이송(주 1회 이송 원칙)
- 채취 도구는 1회만 사용하며, 사용한 채취도구는 초음파소독기로 세척·소독(세척제를 넣고 30분간 소독)한 후 채취 부분을 호일로 감싸 건조·보관
- DNA검사실로 이송된 시료는 도축결과통보서의 도축번호와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보관용 시료관리대장<표21호>에 기록한 다음 도축장별 도축일자별로 구분하여 2년간 보관

DNA 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채취 및 보관



* 시료채취 전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목심부위에서 0.1g 내외의 정육을 채취



* 채취된 시료는 개체식별번호 등이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고, 80℃에서 3시간 건조



* 시·군, 브랜드별·작업장별·도축일자별로 구분하여 냉장보관

검사용 시료 채취·운송·보관 방법

- 가공장 및 판매장에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판매(포장 또는 대면)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
- 채취방법은 날카로운 도구(칼, 가위 등)를 사용하여 지방이 없는 고기를 3g 내외로 채취
- 채취한 시료는 발송대장 <표20호>에 기록한 후 지정된 봉투에 넣어 DNA동일성검사의뢰서 <표22호>와 함께 밀봉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판매업자와 시료 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 (DNA검사실)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우송
- 모든 지정사업장(가공장, 판매장)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야 함
- 기타요령은 보관용 시료의 방법을 준용

DNA 동일성검사 방법

1) 검사용 마커

- 국제동물유전학회(ISAG)에서 추천하는 9개의 마커와 소에서 특이적인 마커 2개 등 11개(TGLA227, ETH3, TGLA126, BM2113, TGLA122, ETH225, TGLA53, BM1824, ETH10, SPS115, INRA23)를 이용하여 동일성 검사
- 분석된 판독결과가 불투명 할 경우 마커 4종(ILSTS050, ILSTS006, DIK023, DIK010)을 추가하여 검사

2) DNA 검사요령

① DNA 추출 및 농도 측정

- 검사의뢰된 시료는 보관용시료의 개체식별번호와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DNA 추출을 위하여 각각의 조직일부에 용해액을 넣어 잘게 파쇄
- 파쇄된 조직은 DNA 추출장비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
- 분광속독기를 이용하여 추출된 DNA의 농도 확인
 - 농도는 10~100ng/ μ l가 적함

기기명	사용량 및 사용방법	주요시약
조직파쇄기 (HMX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mple은 20개까지 사용가능 ◦Sample은 각각의 Pestle 사용 ◦파쇄시간은 Tissue의 경우 Sample 마다 150~200초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ysis 및 Binding B ◦Proteinase K
DNA추출 (MFX6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mple은 48개까지 추출가능 ◦노즐은 6개 부착되어 8단계를 걸쳐 추출 ◦추출시간은 6개가 하나의 블록으로 30분정도 소요되며 48시료 추출시 2.5시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yobo (Bead, washing B) ◦Ethanol ◦DW
분광속독기 Nanodrop Spectrome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출한 Elution Buffer로 기준을 잡아 놓고 각각의 DNA 추출 농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DW

② 유전자 증폭 및 전기영동

- 추출된 DNA는 동일성검사용으로 지정된 11개의 마커를 사용하여 유전자증폭(PCR)
 - 형광염색, 반응온도별로 적정히 구분하여 PCR
- PCR 산물의 증폭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가로스겔에 전기영동
- 전기영동이 완료되면 PCR 산물의 증폭정도를 보고, 희석배율을 결정하여 DNA 분석에 적합하게 희석

기기명		사용량 및 사용방법	주요시약
유전자 증폭기 MJ Research 및 9700(A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mple은 96well plate 2개까지 사용 ◦Total volume은 15~20μl ◦각각의 그룹 반응온도에 맞추어 작동 ◦Thermal Cy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itial step 95$^{\circ}$C 10min → Melt 94$^{\circ}$C 45sec → Anneal Temperature → Extend 72$^{\circ}$C 60sec(31Cycle) → Final Extension 72$^{\circ}$C 60min → Final Step 25$^{\circ}$C 2hr → Hold 4$^{\cir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R B ◦dNTP ◦Taq ◦Primer ◦DW
전기영동기 (Agarose Gel Electrophoresis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well 제조 가능 ◦2% Agarose로 PCR Product 확인 ◦500V 사용가능하고 100V 30분 전기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arose ◦EtBr ◦TBE B ◦DW

③ DNA 분석기 작동 요령

- 희석이 완료된 시료는 표준 사이즈 마커(ABI GeneScan)와 DNA 분석시약을 혼합
- 혼합된 시료를 95℃에 2분 가열하여 DNA를 변성시킨 후,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에 보관
- DNA 분석기 프로그램 셋팅을 위하여 파일명을 입력하고 분석일, 분석자, 시료명, 분석방법을 선택
- 프로그램 입력이 끝나면 분석기 내에 기 사용했던 완충액(Buffer) 교체, Polymer량 및 사용기간 확인, 모세관(Capillary)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기에 정확히 위치케 하여 작동

④ 분석된 DNA 데이터 판독

- 분석이 끝나면 데이터를 GeneMapper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Electropherogram (아날로그신호)을 시료마다 확인
- 표준 사이즈 마커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시료의 마커 사이즈를 확인
- 아날로그신호로 확인된 유전자 위치를 디지털(숫자화)로 변환 변환된 데이터에 의해 두 개체 간의 동일성 여부 확인

기기명		사용량 및 사용방법	주요시약
유전자 분석기 ABI 3130xl Genetic Analyz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well plate을 2개까지 사용가능 ◦Capillary는 16개가 장착(100Reaction) ◦Polymer POP-7, Matrix DS32 ◦Size standard : ROX 500 ◦Dye set : F ◦Program : GeneMa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trix ◦POP7 ◦Formamide ◦10X B EDTA ◦ROX 500 ◦DW

□ 부적합 사업장에 대한 조치

○ 2009년 6월 22일 이전(시범사업으로 운영)

- 동일성검사 결과 불일치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또는 브랜드경영체와 관련사업장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
- 해당 사업장은 특별 관리하여 수시로 시료를 채취, 동일성 여부 검사
- 검사결과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지침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2009년 6월 22일 이후(법률에 의거 조치)

-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자 :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동일성검사 결과 불일치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사업장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DNA 검사 결과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 처벌 병과
- 식육판매업자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시된 쇠고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DNA검사 결과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벌 병과

<표22호>

DNA 동일성검사 의뢰서

※ 접수 번호		※접수일		※접수자	
개체식별 번호	* 묶음번호로 판매되는 쇠고기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 모두를 기재				
시료채취일시	2008 년 월 일 (요일) 시 분 예) 2008년 8월 1일 (금요일) 14시 30분				
의뢰 기관명	○○○○○ 브랜드(시·군)				
시료채취장소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체대표 <사업체담당자>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만 기재)	
시료채취자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만 기재)	

※칸은 축산물등급판정소 유전자분석실 담당자가 작성

검사 의뢰일 : 2008 년 월 일

검사 의뢰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축산물등급판정소장 귀하

IV.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요령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77
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 112
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 114
4.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132
5.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위탁기관 지정기준 / 147
6.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 / 150
7. 재부착용 귀표 관리요령 / 160
8. 사육농가 귀표 자가부착 방안 / 164
9. 쇠고기 판매단계 이력추적 조사 매뉴얼 / 166
10. 가축질병 역학조사 지침 / 189
11. 한우기준 / 225

IV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요령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 제정 경위

- 가. 2007년 6월 15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 하도록 의결함.
- 나. 2007년 9월 18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소위원회 주관으로 10월중 공청회를 개최기로 함.
- 다. 2007년 10월 11일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함.
- 라. 2007년 11월 16일 제6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 가결함.
- 마. 2007년 11월 21일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 바. 2007년 11월 22일 제269회 정기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제정안을 원안 통과
- 사. 2007년 12월 21일 법률 공포(관보 게시)

□ 제정사유

최근 한·미 FTA 협상타결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국산 한우고기의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속한 전면도입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조기 정착에 어려움이 많음.

EU를 비롯한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광우병 파동 이후 이력추적(Traceability)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2003년 6월 「쇠고기 이력추적 관련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의 경우에도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의 소유자 등은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 포함)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법 제3조).
- 나.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함(법 제4조)
- 다.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도록 함(법 제6조).
- 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가능 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
- 마.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법 제18조부터 제20조)
- 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법 부칙 제1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 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p>	<p>제1조(목적) 이 영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p> <p>2.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p> <p>3. “소유자등”이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 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p> <p>4. “귀표”란 이력추적을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p> <p>5. “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출생 등의 신고) ①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도축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결(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 	<p>제2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p> <p>① 소의 소유자등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생·폐사, 수입·수출 또는 양도·양수(이하 “출생등”이라 한다)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등 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생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신고방법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p> <p>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p>	<p>제3조(출생등 신고의 기한 등)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3. 양도·양수 신고: 양도·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p>제4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지정·신고 방법) 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허가증 사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정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축이나 포장 처리의 신고방법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라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2.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아니하</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도록 쇠고기를 개체별로 가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적인 신고방법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p> <p>제5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기한)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축 및 포장 처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p> <p>1. 도축업자: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p> <p>2. 식육포장처리업자: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귀표의 부착) ①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p> <p>③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p>		<p>제6조(귀표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 출생 신고 후 30일 이내 2. 수입된 소: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p>②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의 소유자등은 고령(高齡) 등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제7조(목줄을 이용한 귀표의 부착)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 2. 소의 귀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8조(귀표의 관리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귀표의 구매·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귀표의 위·변조 및 훼손 등 금지)</p> <p>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소 한 마리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제3조(귀표 부착의 예외)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p> <p>2.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p>	<p>제9조(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p> <p>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체식별번호 2.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3. 암수 구분 4. 수입된 소는 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5.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및 해당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개시일자 6. 소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들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농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소 개체식별대장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 수입소로 구분한다) 2. 부모(父母) 소의 개체식별번호 3. 양도·양수 및 폐사 내역 4. 수입소의 원산지 5.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결과의 합격여부 6.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屠體)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제1호의 소의 종류 중 한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따른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p> <p>④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소 개체식별대장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변경신고) 소의 소유자등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소 개체식별대장 기록 확보 등)</p> <p>①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4조(소 개체식별대장 기록 보존기간)</p> <p>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p>제10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 개체식별대장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등</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9조(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부장관은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정보의 항목, 공개기간과 방법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축산정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급판정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p> <p>제11조(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의 개체식별번호 2. 소의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3. 소의 종류 4. 소의 암수 구분 5.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6. 소의 사육시설의 소재지 7. 도축장 명칭 및 소재지 8.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9. 쇠고기의 등급판정 결과 10.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칭 및 소재지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소가</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한 도축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관할 구역 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 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개체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2조(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p> <p>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p>		<p>제13조(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는 별표 4와 같다.</p> <p>제14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는 별표 5와 같다.</p> <p>제15조(묶음번호 표시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는 별표 6과 같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p> <p>③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가공처리법」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제40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정명령) 농림부장관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개체식별쇠고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 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식육판매업자는「축산물가공처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식육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방법) 법 제13조에 따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축업자는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날짜별로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처리된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적고(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또는 소</p>		<p>3.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을 각각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적고(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관리하여야 한다.</p> <p>4.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날짜별로 적고(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1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개체식별쇠고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p>		<p>과 같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소 수출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15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축산물 가공처리법」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소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개체식별번호를</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등급판정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권한.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에 관한 권한 2.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권한 3.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에 관한 권한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검사 등에 관한 권한</p> <p>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p> <p>④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p> <p>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오류의 수정에 관한 업무</p> <p>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등 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업무</p> <p>⑤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p> <p>1. 법 제3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의 접수</p> <p>2.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에 관한 업무</p> <p>3. 법 제6조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6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보완에 드는 비용 2. 법 제4조에 따른 귀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3. 법 제6조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p>제1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p>	<p>의 작성 등에 드는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비용 5. 법 제13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p>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p> <p>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p> <p>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가 요청한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p> <p>7.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8. 제13조를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9.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 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식육유통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의 임원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농업인 5. 축산 관련 단체의 임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6. 소비자단체의 임원</p> <p>7. 축산 관련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p> <p>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p> <p>9.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임직원</p> <p>10.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p>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1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p> <p>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22조(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23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는 공포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소유자등이 가지고 있는 소(이하 “기준 소”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까지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신고 및 귀표 부착을 마쳐야 하며, 그 기간 중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라 소유자등이 출생 등의 신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법 제14조제2항과 관련되는 것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법 제14조제2항과 관련되는 것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6조제1호·제4호·제5호 및 별표 중 제2호가목란(법 제3조제2항과 관련되는 것만 해당한다), 라목란부터 아목란까지 및 자목란(법 제14조제2항과 관련되는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는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착 또는 변경신고한 기존 소는 이 법 제3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된 소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 부착을 마친 것으로 본다.</p>		

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이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10	20	40	160
나.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10	20	40	160
다.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20	40	80	320
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400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30	60	120	240
바.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가 요청한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6호	30	60	120	240
사. 법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7호	30	60	120	240
아.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20	40	80	320
자.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9호	50	100	200	400

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소의 출생등 신고방법과 절차(제2조제3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의 출생등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등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구역의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동 신고서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공통 신고사항		1. 소유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2.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3. 소유자등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5. 사육시설의 소재지 6. 사육시설에서 사육을 개시한 날짜
신고의 종류	출생 신고	1. 출생연월일 2.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기타) 3. 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 수입소, 기타) 4. 부 개체식별번호 5. 모 개체식별번호 6. 기존 소 신고 가. 개체식별번호 나. 출생연월일 다. 암수 구분 라. 소의 종류 마. 부·모개체식별번호
	수입·수출 신고	1. 수입·수출 연월일 2. 개체식별번호 3.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기타) 4. 소의 종류 5. 원산지
	양도·양수 신고	1. 개체식별번호 2. 양도·양수신고 구분 3. 양도·양수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대표자성명) 4.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5. 양도 또는 양수연월일 6.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폐사 신고	1. 개체식별번호 2. 폐사원인(가. 법정전염병 살처분 나. 일반질병 다. 사고 라. 기타)










3. 신고서의 기록·관리

소유자등이 서면 외의 방법으로 출생등을 신고할 경우 이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생등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 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다.

4. 그 밖에 출생등 신고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 귀표의 규격 등 관리방법(제8조제1항 관련)

<p>1.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p>	<p>가. 위탁기관은 소의 소유자등이 출생등 신고를 한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나. 국내 소는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p> <p>다. 수입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2. 귀표의 규격</p>	<p>가. 규격</p> <p>1) 귀표의 크기: 가) 일반형: (가로)55mm~70mm, (세로)65mm~85mm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직경 25mm~35mm</p> <p>2) 글자 색상: 검정색</p> <p>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p> <p>나. 재부착용 귀표</p> <p>1) 크기: (가로)55mm~70mm, (세로)65mm~85mm</p> <p>2) 농업 CI, KOR, 관리번호 인쇄</p> <p>다. 귀표 모양</p> <table border="1" data-bbox="411 1012 1165 1249"> <thead> <tr> <th colspan="3">귀표 모양</th> </tr> <tr> <th>일반형 귀표</th> <th>단추형 귀표</th> <th>재부착용 귀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body> </table> <p>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p>3. 귀표의 부착방법</p>	<p>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 왼쪽 귀에 단추형을 부착한다.</p>									
<p>4. 귀표의 관리</p>	<p>1. 위탁기관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2. 위탁기관은 귀표훼손·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표훼손·탈락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5.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4]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제13조 관련)

<p>1.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p>	<p>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중에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고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의 갈비 내부 등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한다.</p> <p>라.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2. 개체식별번호 관리</p>	<p>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육에 개체식별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축장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p> <p>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하여야 하며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라. 그 밖에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5]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제14조 관련)

구 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1. 개체식별 번호 표시 방법	<p>가. 쇠고기를 포장처리 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p>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 등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2. 개체식별 번호 관리	<p>가.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p>	<p>가.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p>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제15조 관련)

<p>1. 묶음번호 표시방법</p>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나. 등급표시 의무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동일한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p> <p>다. 여러 개의 다른 개체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p> <p>마.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p> <p>바.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2. 묶음번호 관리</p>	<p>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p> <p>나.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소의 출생등 신고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위탁기관
--------	------

신고서 작성안내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 및 수입·수출신고는 ①~⑫란을 기재합니다. 또한, ⑨란의 소의 종류 및 ⑩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하며, ⑪~⑫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2. 양도 및 양수신고는 ①~⑤란과 ⑬~⑱란을 적습니다. 또한, ⑬란의 양도·양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⑦란과 ⑲란을 적고, ⑲란의 폐사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이 신고서는 소유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역을 적고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체식별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젃소, 3.육우, 4.수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젃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 육우: 젃소 중 착유하지 않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
-------------	---

[별지 제2호서식]

식육포장처리신고 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		
	④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영업장 면적	m ²	⑦ 종업원 수	
<p>「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식육포장 처리신고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물부장관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허가증 사본 1부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① 포장처리일	② 개체식별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kg)	⑤ 매입처	
				상호	사업자번호

※ 적는 요령

- ① 포장처리일은 매입한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개체식별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쇠고기 또는 부분육의 무게(kg)를 적습니다.
- ⑤ 매입처는 쇠고기를 구입하였거나 포장을 의뢰한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여건에 따라 신고 항목 등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①~⑤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전화:)		
기관 또는 업체명		개체식별 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변 경 사 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신고 사유서(위 변경사유란에 적을 수 있음)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① 판매· 반출일	② 개체식별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⑤ 판매·반출처	
				상호	사업자번호

※ 적는 요령

- ① 판매·반출일은 해당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개체식별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쇠고기의 무게(kg)를 적습니다.
- ⑤ 판매·반출처는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90mm →		
제 호 소속: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사공무원증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25mm 30mm 사 진 (2.5cm×3cm)	55mm
위 사람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다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등급판정소		
[인]		

주) 색상: 연노랑색

90mm×55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검사, 수거 등을 위하여 관련 영업장을 출입·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단위 : 조)

연월일	수령			배부			재고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수령자 (소유자명)
	시작	끝		시작	끝			
전면이월								
누계(월계)								

※ 적는 요령

- 연월일: 인수 또는 출고 발생 연월일을 적습니다.
-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번호를 기재합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 수령자(소유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소의 소유자 등을 적습니다.
-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재고량+인수량-출고수량)을 적습니다.
-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m²)

4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1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8 - 1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개체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이하 “쇠고기 이력추적제”이라 한다)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위탁기관의 업무)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소의 출생 등 신고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귀표의 수령 및 귀표의 부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의 출생 및 양도·양수 등 신고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소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축산법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통보한 별표 1의 기관은 이 규정 제2조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위탁기관 및 관할구역·대상(제2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관련)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권역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인천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다)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옹진군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수원시·화성시·오산시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광주시·성남시·하남시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부천시, 시흥시 대야동·계수동·신천동·미산동·방산동·은행동·안현동·도창동·매화동·금이동·무지내동·포동·과림동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양시·안산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시흥시(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용인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용인시
	평택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평택시
	이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이천시(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한우맛드림 브랜드 소
(사) 이천한우회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권역	(사) 전국한우협회 김포 시지부	경기도 중 김포시에 사육중인 한우
	김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김포시에 사육중인 젖소·육우
	안성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성시(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여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여주군
	양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평군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고양시
	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남양주시·구리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파주시·연천군
	포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포천시
	가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가평군
	안성마춤한우회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
	경기북부한우협동조합	한우백년 브랜드 소
강원도 권역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원주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원주시
	강릉축산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강릉시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동해시·삼척시·태백시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양양군·속초시
	홍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홍천군
	횡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횡성군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평창군·영월군·정선군
	인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인제군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고성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충청 북도 권역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청주시·청원군
	충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충주시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제천시·단양군
	보은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보은군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옥천군·영동군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괴산군·증평군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진천군
	음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음성군
대전광역시· 충청 남도 권역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천안시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연기군,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젖소는 제외한다)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젖소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보령시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아산시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산시·태안군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논산시·계룡시
	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금산군
	부여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부여군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천군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청양군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홍성군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예산군
	당진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젖소는 제외한다)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젖소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하늘소 브랜드 소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전라북도 권역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김제·완주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순창군·정읍시에서 사육중인 한우(단풍 미인 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소
	남원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남원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무주군·진안군·장수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임실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고창군·부안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북한우협동조합	총체보리한우 브랜드 소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전주·임실·남원·무주·진안·장수·순창·완주군에서 사육중인 젖소·육우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익산·군산·김제·정읍·고창·부안군에서 사육중인 젖소·육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권역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목포시·무안군·신안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여수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여수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순천시·광양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나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담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담양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곡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곡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구례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고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고흥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보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보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화순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화순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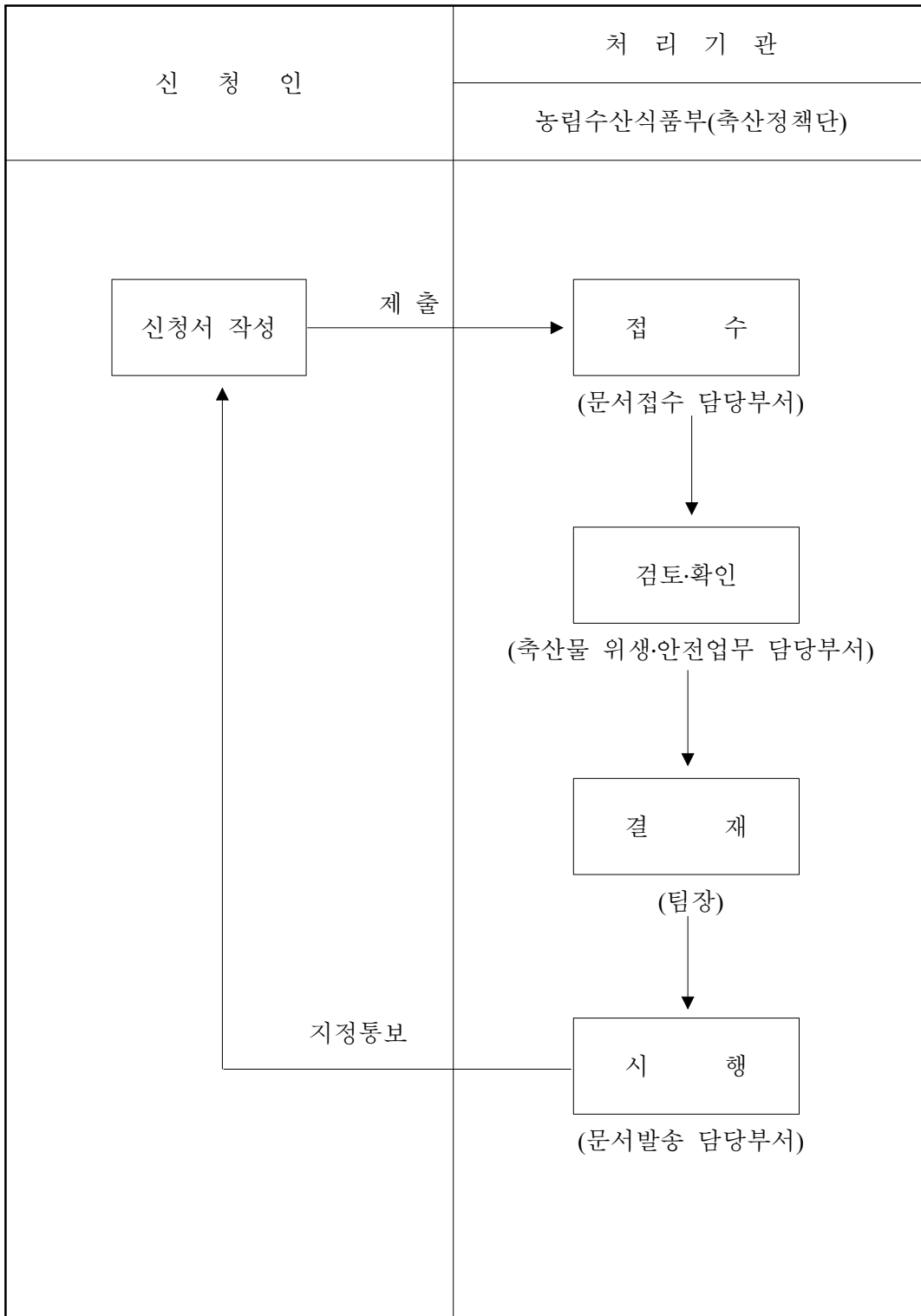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권역	장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흥군 관산읍·대덕읍·회진면에서 사육중인 한우
	(사) 전국한우협회 장흥군지부	전라남도 중 장흥군(관산읍·대덕읍·회진면은 제외한다)에서 사육중인 한우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강진군·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해남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해남군·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암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함평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광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장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전역에 사육중인 젖소·육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권역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 팔공상강한우 브랜드 소
	달성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중 달성군
	포항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포항시
	경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주시
	김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김천시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안동시·봉화군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구미시·칠곡군
	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주시
	영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천시
	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상주시
	문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문경시
	경산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산시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군위군
	의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의성군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청송군·영양군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덕군·울진군
	청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청도군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고령군·성주군
	예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예천군
	울릉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울릉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권역	부산축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	
	양산축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중 기장군, 경상남도 중 양산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마창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마산시·창원시·진해시	
	진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진주시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통영시	
	사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사천시	
	김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김해시	
	밀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밀양시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거제시	
	의령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의령군	
	함안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함안군	
	창녕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창녕군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고성군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남해군	
	하동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하동군	
	제주특별 자치도 권역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시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 서귀포시
기타권역	상기 위탁기관과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나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위탁기관 지정서				
신 청 인	① 법인(단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		
⑤ 위탁업무명				
<p style="text-align: center;">「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림수산식품부 장 관 </p>				

210mm×297mm(보존용지(1종))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명(소의 소유자) :

주 소 :

위탁기관 명칭	위탁기관 주 소	위탁기관 연락처 (전화번호, FAX 등)	통지사항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의 출생·양도·양수·폐사 등 신고의 접수와 귀표의 부착지원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소의 출생 또는 양도·양수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의 장 인

5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기준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 지정 절차

□ 위탁기관 지정 원칙

- 시·도에서 당해 시·군의 의견을 들어 시·군별로 추천한 축산 관련 단체 등을 농식품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
- 시·군 단위로 1개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지역 여건이 광역화 되거나 소의 사육두수가 많거나(24천두 이상)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브랜드경영체나 낙농조합,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에서 추가 지정 가능
 - 동일 시·군에 젖소나 육우가 일정 규모 이상 사육되고 있을 경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담 위탁기관 별도 지정, 가능

□ 위탁기관 지정 방법

- 시·군에서 관내 지역축협,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사육농가,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의 협의를 통해 시·도에 지역 위탁기관 선정, 제출
- 시·도에서는 당해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위탁기관의 운영상 적정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지정, 추천

<p><위탁기관 지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관련 정책사업 수행실적(예산사업 등) · 위탁업무(농가 지도, 전산능력) 수행 전문인력 및 시설 등 확보 · 법인격 구비 여부(단순 작목반이 아닌 법인체) · 위탁업무 계속 수행 가능성 등(최소 3년, 비육우 출하기간 감안) · 직원이 최소 5인상 사업장이며, 상근직원이 1인이상 가능한 경우

□ 위탁기관 지정 기준

<시·군별 지정유형>

- ① 지역축협 등 축산 관련 단체 등이 1개소가 있을 경우
- ② 광역브랜드경영체 또는 시·군 단위 브랜드경영체가 추가로 있을 경우
- ③ 1개 시·군에 지역축협, 브랜드경영체, 낙농조합,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이 혼재할 경우
- ④ 1개 시·군에 지역축협 등이 없거나 사육규모가 적을 경우

① 지역축협 등 축산 관련 기관 단체 등이 1개소 있을 경우

- 당해 시·군에서 위탁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당해 기관을 선정하여 시·도에 추천

② 광역브랜드 경영체 또는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가 추가로 있을 경우

- 광역브랜드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시·도에서 광역브랜드경영체를 위탁기관으로 검토, 지정
- 이 경우 브랜드경영체가 별도 법인이나 사업단을 두고 이력추적제 사업을 수행하고,
- 동 법인 등에 소속된 직원이 농가의 신고접수 및 귀표 부착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경우에만 지정
- 당해 지역에 광역브랜드경영체에 속하지 않는 사육농가가 있어 이력 관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축협 등을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 브랜드경영체 소속이 아닌 농가 등의 이력관리 수행

③ 1개 시·군에 지역축협, 브랜드경영체, 낙농조합,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이 혼재하는 경우

- 소 사육두수, 사육농가수, 단체 역량,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내에 소재하는 단체 중에서 지정
- 지정된 단체가 관리 능력이 미흡하거나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단체 등을 즉시 지정, 운영
- 지역 여건이 광역화되거나 젓소 또는 육우의 사육두수가 많아 이력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개 단체 등을 추가로 지정 가능

④ 1개 시·군에 지역축협 등이 없거나 사육규모가 적을 경우

- 당해 지역과 연접한 시·군의 위탁기관을 시·도지사가 예외 지정 기관을 지정하여 이력관리 업무 수행
 - * 예시 : 과천·안양·광명·시흥시의 경우 안양축협을 지정, 이력업무 처리

□ 위탁기관 지정 통보 및 사후관리

- 농식품부장관은 각 시·도에서 지역별로 추천한 위탁기관에 대해 지정 요건, 업무수행 능력,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통보
- '08년도 시범사업 중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력업무를 수행한 광역 브랜드 등에서 금회 새로 지정을 받지 못한 브랜드경영체는 기존에 수행했던 위탁기관 업무를 인수받는 해당 지역축협에 '08. 12.21일 까지 이관 조치
- 시·도에서는 지정된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예산 집행 등 수행

6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

1. 목 적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소 또는 기존 소에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의 체계를 정하고 귀표의 수급관리를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에 대해 규정하여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이력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
- 나.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다. “소유자 등”이라 함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됨
 - ① 소의 사육자
 - ② 생축장 등 소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공동사육시설의 관리자
 - ③ 한우개량, 유우개량 등 정부에서 인정한 종축개량기관
 - ④ 시험·연구기관
 - ⑤ 소의 사육을 행하는 교육기관 등

- 라. “귀표”란 이력추적을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등으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인쇄형, 단추형, 재부착용 귀표가 있음
- 마. “재부착용 귀표”란 개체식별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귀표로, 귀표 탈락시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재부착하는 귀표
- 바. “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 사. “위탁기관”이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소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의 접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귀표 부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아. 용어정의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제2조에 따른 정의에 의함.

3.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표시

가. 개체식별번호의 체계

-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의 권고안에 따르고, 국가코드는 ISO 3166에 따라 3자리 문자를 사용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소 사육농가 및 전산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포함하여 15자리로 구성하고, 국가 내에서 고유의 번호를 사용하며, 12자리는 숫자로 표시한다.

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 법 시행전에 부여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은 그대로 적용하고,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이후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는 처음부터 다시 일련번호 부여한다.
 -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이후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는 KOR에 이어 002를 표시하고 일련번호 8자리를 표시하고 마지막 숫자는 체크번호로 구성한다.
- 이 법 부칙 제2조(적용특례)에 의하여 법 시행당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되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해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한다.
- 수입소는 수출국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

국가코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KOR	0	0	0	8자리(종전 식별코드)								ck
	0	0	1	8자리(등록번호)								ck
	0	0	2	8자리(신규 식별코드)								ck
국가코드	확장코드	코드구분	일련번호									체크번호

※ 예시

- 종전 식별코드(123456784) 적용 소 : KOR 00 0 123456784
- 등록번호(123456784) 적용 소 : KOR 00 1 123456784
 - * 등록번호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등록을 위해 부여
- 신규 식별코드(000012348) 적용 소 : KOR 00 2 000012348
- 호주에서 수입한 소(123456789012) : AUS 123456789012

4. 귀표 구매 및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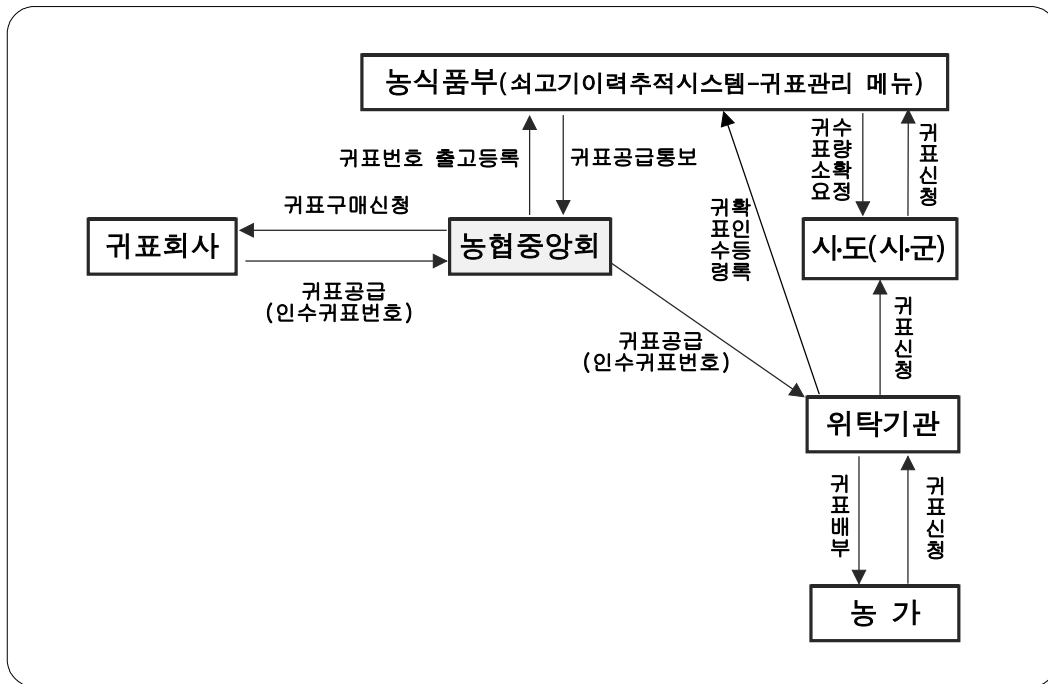
가. 귀표의 구매

- 귀표는 귀표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구매 공급한다.
- 각 시·도는 관내 사육규모 및 귀표 부착두수,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 귀표 소요량을 확정하고 이를 공급하도록 농협중앙회에 통보한다.
- 구매절차
 - 농협중앙회에서 구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 구매수량, 구매일정, 구매규격, 품질평가기준 등
 - 귀표 규격, 품질 평가 등을 협의하기 위한 귀표품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나. 귀표의 배부

-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가 신청한 내역에 따라 위탁기관에 배부하고, 배부내역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귀표관리 메뉴”에 전산등록한다.
- 귀표를 수령한 위탁기관은 귀표수량 및 귀표번호를 확인,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또는 귀표 공급업체)에 제출하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귀표관리 메뉴”에 ‘수령확인’ 전산등록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귀표수불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귀표 배부 체계도>



5. 귀표의 관리

가. 귀표 재고관리

- 위탁기관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수령한 귀표를 일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자 지정
 -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관리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관리업무 담당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나. 귀표 수불관리 및 재고조사

- 귀표 수불관리는 귀표번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귀표를 인수하거나 출고할 경우는 반드시 「귀표수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재고조사
 - 매월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귀표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매분기 최종월 재고조사 결과는 귀표관리 책임자의 차상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전산시스템에 의한 수불관리 출력물과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한다.

6. 귀표의 부착

가. 귀표 부착대상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 등)가 해당되며, 다만, 관련법 시행일 현재 소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소는 본 사업에 의한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소의 종류 구분 기준

- 한우 : 농식품부가 인증 또는 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소
- 육우 : 젖소 중 착유하지 않는 암소, 수소, 기타 육용 소
- 젖소 :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유용 소

나. 귀표의 부착방법

- 귀표의 부당사용 방지 및 통일을 기하고, 탈락에 대비하여 양쪽에 부착한다.(1두 2조 부착)

- 소를 기준으로 우측에 일반 인쇄형 귀표, 좌측에 단추형 귀표를 부착한다
 - 귀 앞쪽에 암(♀)귀표, 귀 뒤쪽에 수(♂)귀표를 부착한다.
 -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서 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 귀표 탈락시는 동일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업C.I 엠블렘과 국가코드 KOR이 인쇄되어 있는 재부착용 귀표에 수기로 동일한 개체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한다.(항상 2조 유지, 단추형이 탈락되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
- ※ 귀표부착 오류사례
- 좌측 귀(인쇄형), 우측 귀(단추형)를 좌 - 우를 바꾸어 부착
 - 인쇄형과 단추형의 암수를 서로 교차하여 부착
 - 1두 2조를 부착하지 않고, 인쇄형 귀표만 부착(단추형 미부착)

다. 귀표부착 의무자

- 소의 소유자 등은 송아지 출생 또는 기존 소 신고에 의하여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에 기한내에 신고하여 귀표를 부착하도록 한다.
- 위탁기관은 농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동 개체식별번호가 표기된 귀표를 가지고 해당 농장을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 후 신고된 소 및 사육자 관련 정보를 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한다.
 - 전산등록사항 : 농가명, 주민등록번호,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소의 개체 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소의 종류 등
- 귀표부착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은 동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있는 다른 단체, 인공수정사, 사료회사 대리점 등에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귀표의 위·변조 및 훼손 등의 금지

-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는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귀표의 재부착

- 귀표 재부착 요령
 - 인쇄형 1개 탈락 : 단추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한다.
 - 단추형 1개 탈락 : 인쇄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한다.
 - 2개 모두 탈락 : 해당 농가의 개체식별번호 대장 조회를 통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재부착용 귀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양쪽 귀에 부착한다.
- 귀표 재부착 사유 발생시 위탁기관에 신고한다.
 - 소의 소유자 등은 귀표가 탈락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부착 사유 발생 일로부터 1주일 내에 관할 지역의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귀표의 재부착 및 전산등록
 - 재부착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신고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부착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귀표 훼손·탈락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탈락된 귀표를 반드시 회수하여 탈락된 귀표가 위·변조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 재부착용 귀표 부착 후 재부착된 귀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관리번호에 의해 전산입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귀표 수불관리대장

(단위 : 조)

월일	수령			배부			재고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수령자 (농가명)
	시작	끝		시작	끝			
전면이월								
누계(월계)								
<p>※ 기재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월일 : 인수 또는 출고 발생 연월일을 기재한다.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귀표번호를 처음~끝번호 기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기입 수령자(농가명) : 대행기관에서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는 소의 소유자 등을 기재하고, 자가 부착한 소유자 등은 해당 소유자명을 기재한다. 재고량 : 현재재고량(직전재고량+인수량-출고수량)을 기재한다.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기재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m²)

7 재부착용 귀표 관리요령

가. 목적

- '08.12.22.부터 시행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별 위탁기관을 통해 부착하고 있는 귀표의 관리요령을 명확하게 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개체관리의 정확도 제고

나. 재부착용 귀표 부착 및 관리요령

- 1마리 소에 1조(일반형, 단추형)의 귀표 부착이 원칙, 즉 1마리의 소에는 반드시 1개의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1마리의 소에 부착된 일반형과 단추형 귀표의 탈락시 조치요령
 - 일반형 귀표만 탈락된 경우
 - 단추형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에 부착하고 위탁기관은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
 - 단추형 귀표만 탈락된 경우
 - 일반형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에 부착하고 위탁기관은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
 - 일반형 귀표와 단추형 귀표가 모두 탈락된 경우
 - 위탁기관을 통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의 귀에 각각 재부착용 귀표를 모두 부착하고 관리번호는 위탁기관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
 - 위탁기관이 아니 방역사 등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 반드시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6자리)를 지역 위탁기관에 통보

- 농가를 통해 개체식별번호는 확인이 되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농가와 위탁기관을 통해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귀표를 부착한 위탁기관 등에서 이력지원실(1577-2633)로 해당 사실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하고, 새로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소의 양쪽귀에 부착한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 조치

- 귀표부착을 위해 농가 방문시 귀표가 탈락되는 경우 위탁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사육단계 개체식별번호 관리의 정도 제고
- 귀표가 위·변조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탈락된 귀표는 관할 위탁기관에서 반드시 회수·소각

다. 재부착용 귀표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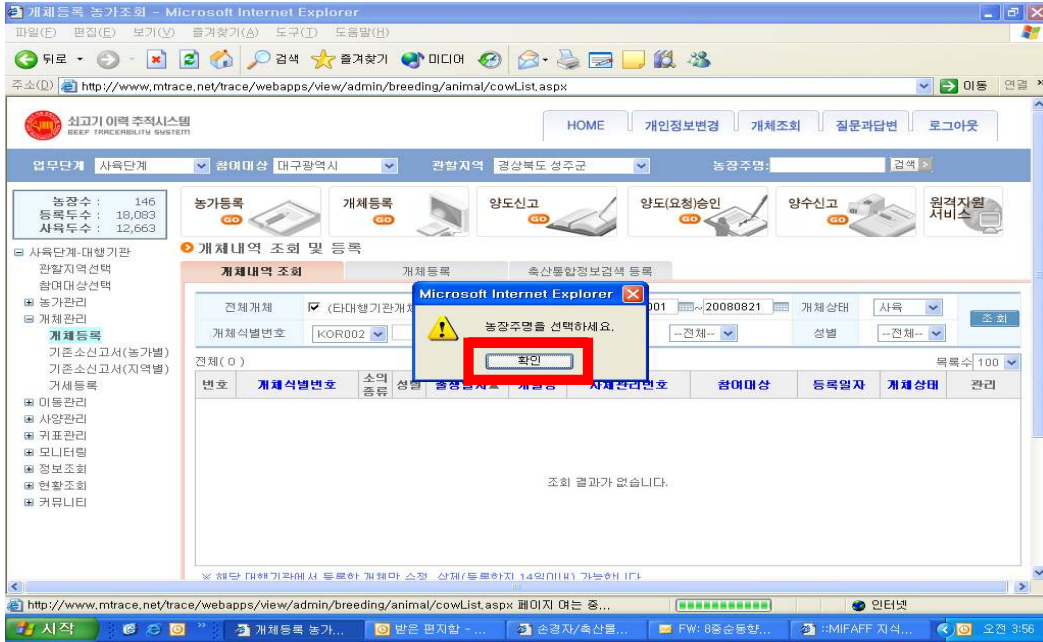
-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



- 재부착용 귀표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요령 : 붙임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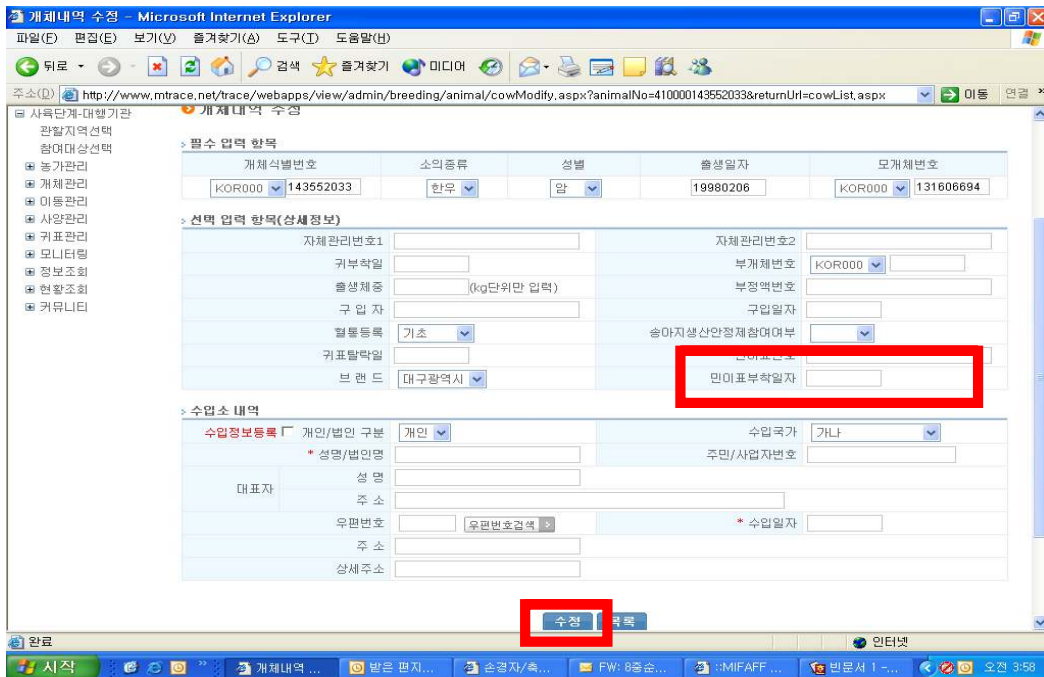
1. 최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육단계/개체관리/개체등록 화면에서 해당 농장주를 조회·선택한다.



2.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의 내역이 조회되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소를 선택하여 수정버튼을 선택한다.



3. 재부착용 귀표(민이표)와 부착일을 입력하고 수정버튼을 선택한다.



8

사육농가 귀표 자가부착 방안

가. 개요

□ 도입목적

- 육우 등 초유떼기 거래시 즉시 귀표 부착으로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대행기관에서 귀표 부착에 따른 소의 스트레스·부상 사고 등 민원 발생 사전 방지
 - 특히 젖소의 경우 귀표 부착으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산 등 유발 가능성이 높아 자가 부착의견이 관련 협회 등에서 제기
- 사육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귀표를 부착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전산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자가 부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사업 조기 정착

□ 근거규정

- 소의 소유자 등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 후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아 해당 소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 시행 시기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08.12.22.부터 시행

나. 시행방안

□ 시행방법

- 위탁기관에서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 농가를 선정, 통보하고 시행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등 예방
 - 위탁기관별로 사육농가 10호를 시범적으로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고 귀표 부착기를 농가당 1개 무상 배부

□ 대상농가 선정

○ 한육우 50두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또는 젖소 사육농가

- 위탁기관에서 귀표의 자가부착을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가의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하되, 관할지역의 여건에 따라 대상농가의 확대 가능

□ 관리방법

- 위탁기관은 자가 부착농가로 지정한 사육농가로부터 ① 송아지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② 출생 두수만큼 귀표를 농가에 배부하여 귀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③ 위탁기관에서는 농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귀표부착 여부, 개체식별번호 등 이력추적시스템 입력 정보 6개 항목을 확인(특히 여러 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출생시 개체식별 정보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 ④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여 기록·관리
- 위탁기관은 귀표수불대장에 지정된 자가 부착 농가별로 귀표 수불내역을 기록·관리
- 귀표는 위탁기관에서 보관·관리하고 농가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육농가에 미리 귀표를 배부한 경우에는 귀표 배부 및 회수 내역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귀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다. 행정사항

- 위탁기관은 '08.12.22.부터 시행되도록 대상농가 사전 선정
- 예산 관련 : 귀표부착비 등은 현행대로 위탁기관에 지급
 - 농가에서 귀표 부착시 발생하는 부상이나 기타 부대경비 등 제반사항은 위탁기관에서 자체 예산 등으로 조치

9

쇠고기 판매단계 이력추적 조사 매뉴얼

I. 개 요

- 조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
- 조사대상
 -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 식육판매업소 : 48,390개소(축산물등급판정소 자료)
- 조사반 편성·운영
 - 지원·출장소 소속 조사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 합동으로 편성하거나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조사반에 포함하여 편성하여 운영
 - 필요시 원산지 단속반과 연계하여 편성·운영
- 조사사항
 - 개체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 묶음번호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의 교부 여부
 -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기록 사항을 식육판매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는지 여부
 -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검사용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의뢰

II. 조 사

- 조사 사전 준비
 - 조사공무원증 지참

- 위반확인서 및 의견진술안내서 서식, 카메라, 인주 등 증거 확보를 위한 기자재
- 시료수거용 봉투, 유성 싸인펜, 칼 등 시료 수거에 필요한 기구 준비

□ 조사대상 업소 선정

가. 쇠고기 이력추적사후관리 계획에 의한 정기조사

- 관내 식육판매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

나. 미표시 신고 또는 민원 발생 등의 수시조사

- 신고 또는 민원과 관련된 식육판매업자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식육판매업자 현장조사

가. 방문목적 설명

- 자체계획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추진배경과 목적, 필요성,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 등을 설명하고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 신고에 의해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위 “가”항을 설명하고,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가 의심스럽다는 신고가 있어 방문하였음을 추가로 설명하고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나.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실태 조사

-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쇠고기 또는 판매표시판 등에 표시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와 해당 개체식별 쇠고기 또는 구매 시 받은 관련 서류(영수증,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판매표시판 등에 표시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여 개체식별 가능성 여부 및 유통경로 확인

다. 판매를 위해 냉장고에 보관중인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실태 조사

-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판매를 위해 냉장고에 보관 중인 쇠고기 등에 표시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와 해당 개체식별쇠고기 구매 시 받은 관련 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진열중인 개체식별쇠고기 이외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해서는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여 개체식별 가능성 여부 및 유통 경로 확인

라. 개체식별번호 확인을 위한 DNA검사용 시료 수거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체식별번호의 허위표시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음을 알림
-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동일 개체식별쇠고기에서 지방을 제외한 살코기 약20g을 채취
- 약10g 내외로 2등분한 후 품목명, 개체식별번호, 수거장소 등을 기재한 쇠고기 DNA검사 시료 수거용 봉투에 포장 및 봉인
- 조사원과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이 상호 날인 후 1점은 검사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한점은 시료수거 확인서와 함께 사후 확인용으로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인계
- 확인용 시료는 검사를 의뢰한 시료에 대한 DNA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
 - *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냉동보관하는 등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킬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림

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교육 및 홍보

- 식육판매업자 이력추적 조사 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주의 사항, 위반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위반 사실 확인시 조치사항

가. 미표시 적발 시

- 쇠고기를 판매 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내지 2항」에 따라 반드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함을 알림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림
-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 과태료 부과기준 :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60만원, 3회 12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240만원 부과
- 미표시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 조사원 입회하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토록 명한 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 * 시정결과 보고 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결과를 추후 확인

나. 허위표시 적발 시

- 쇠고기를 판매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내지 2항」에 따라 반드시 도축된 소에 부착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을 알림
- 개체식별번호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림
-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및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 과태료 부과기준 :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60만원, 3회 12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240만원 부과
- 허위표시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 조사원 입회하에 개체식별번호를 정정하여 표시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토록 명한 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 * 시정결과 보고 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결과를 추후 확인

□ 위반사실 적발 시의 확인서 징구

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 쇠고기를 판매할 때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는데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쇠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단속반에게 적발되었음을 주지시킴
- 위반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토록 한 후 확인서 사본을 징구

나.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쇠고기를 판매할 때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허위로 표시하여 쇠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에 단속반에게 적발되었음을 주지시킴
- 위반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토록 한 후 확인서 사본을 징구

다. 개체식별번호 확인을 위한 DNA검사용 시료를 수거한 경우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검사 결과 판매중인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한 DNA분석이 필요하여 검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주지시킴
- 시료수거 일자 및 수거 장소, 판매수량 및 수거량, 수거 사유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

라. 문맹 또는 신체결함 등으로 자필확인서 작성이 어렵거나 위반자가 자필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 문맹 또는 신체결함 등으로 자필확인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원이 위반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준 후 상호 서명날인 후 확인서 사본을 징구,
[작성 예시] 본인이 글자를 몰라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하며 조사원이 작성하여 읽어준 내용이 사실과 같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자가 자필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단속원이 위반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주고 조사원 2인이상이 서명한 후 확인서 사본을 교부
[작성 예시] 위반자가 위반사실에 대하여 확인서작성을 거부하여 위반사실을 조사원이 작성하여 읽어주고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조사원 ○○○와 ○○○가 확인합니다.
- 자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개체식별번호 확인을 위한 DNA검사 결과 통보

가. 검사결과가 동일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동일함을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화·E-mail, FAX 등으로 통보

나. 검사결과가 표시된 개체의 식별번호와 다르게 나왔을 경우

-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사실을 알림
-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위반자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
-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업체를 명시하여 식육판매업자 조사 결과 및 DNA검사 결과를 문서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

□ 조사 마무리

가. 증거자료 확보

-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표, 구입·판매장부 등 증거자료 사본 확보
- 미표시 및 허위표시 실태, 진열대 및 냉장고 등 위반 장소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나.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미표시로 단속되었을 때 이의신청 제도 안내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간 전화나 우편으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
- 과태료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Ⅲ.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

-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법 제 11조 제1항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법 제 11조 제2항 :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 구매자가 요청한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 11조 제3항 :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가공처리법」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12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3조 제1항 :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개체식별쇠고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 제2항 :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식육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 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법 제14조 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또는 소수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1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4조 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개체 식별쇠고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4조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소 수출자, 도축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이상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30	60	120	240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가 요청한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6호	30	60	120	240
법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7호	30	60	120	240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20	40	80	320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20조 제1항 제6	50	100	200	400

□ 과태료 부과 요청

- 출장소장은 조사원이 과태료 부과 의견 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지원장에게 다음의 서류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 요청
 -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보한 증거자료 등

□ 과태료 부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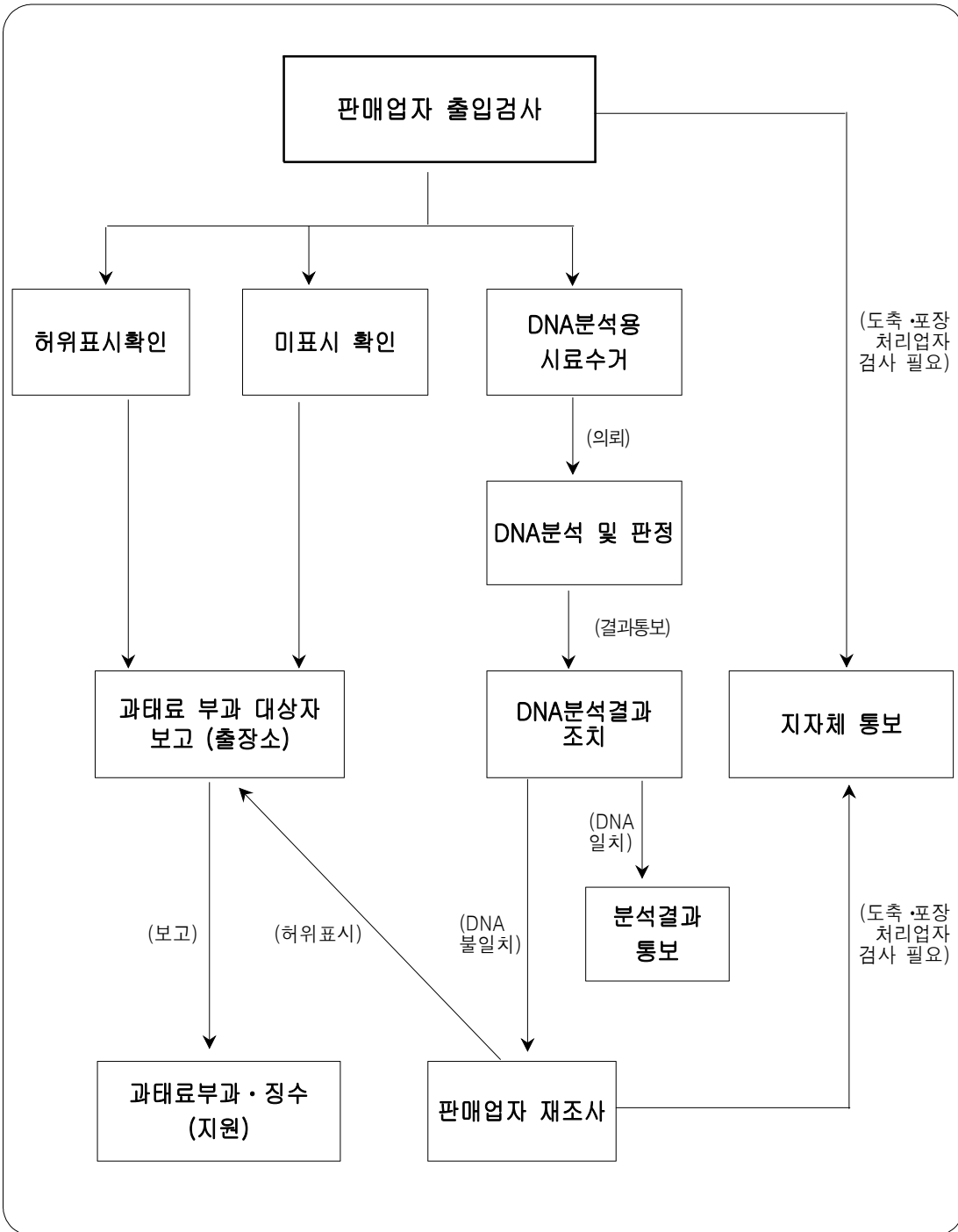
- 지원장은 출장소장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
 -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할 수 있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기간 내에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통지

- 지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발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원장은 위반사실 확인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송부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 이송 사실을 문서로 통보

[별지 1]

쇠고기이력추적 조사 절차



[별지 2]

확 인 서 (예 시)

○ 미표시 확인서

번호 : 2008-01				
확 인 서				
업 소	상 호	00 식육점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00시 00구 00동 00번지	전화번호	000)000-0000
업 주	성 명	0 0 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00시 00구 00동 00번지	전화번호	000)000-0000
품 명	품 명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재고수량	000kg	시료채취량	
<p>위 업소의 업주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에 관하여 아래내용을 확인합니다.</p> <p>1. 일 시 : 2008년 00월 00일 15시 00분</p> <p>2. 내 용 : 본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00식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쇠고기를 판매할 때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0시 00도축장에서 0000... 번호의 쇠고기 00kg을 kg당 00000원에 구입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00kg을 kg당 00000원에 판매하고 0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에게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 년 00 월 00일</p>				
확인자	주 소 : 00시 00동 00번지 성 명 : 0 0 0 인(업주와의 관계 : 본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입회자(조사원)	소 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직 : 농업주사 성 명 : 0 0 0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직 : 농업서기 성 명 : 0 0 0 (인)			

○ 허위표시 확인서

번호 : 2008-01					
확 인 서					
업 소	상 호	00 식육점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00시 00구 00동 00번지		전화번호	000)000-0000
업 주	성 명	0 0 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00시 00구 00동 00번지		전화번호	000)000-0000
품 명	품 명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재고수량	000kg	시료채취량		
<p style="text-align: center;">위 업소의 업주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에 관하여 아래내용을 확인합니다.</p> <p>1. 일 시 : 2008년 00월 00일 15시 00분</p> <p>2. 내 용 : 본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00식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쇠고기를 판매할 때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0시 00도축장에서 0000...번호의 쇠고기 00kg을 kg당 00000원에 구입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00kg을 kg당 00000원에 판매하고 0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에게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 년 00 월 00일</p>					
<p>확인자 주 소 : 00시 00동 00번지</p> <p style="padding-left: 20px;">성 명 : 0 0 0 인(업주와의 관계 : 본인)</p> <p style="padding-left: 20px;">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p>					
<p>입회자(조사원) 소 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p> <p style="padding-left: 20px;">직 : 농업주사 성 명 : 0 0 0 (인)</p> <p>입회자(조사원) 소 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p> <p style="padding-left: 20px;">직 : 농업서기 성 명 : 0 0 0 (인)</p>					

○ 시료수거 확인서

번호 : 2008-01				
확 인 서				
업 소	상 호	00 식육점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00시 00구 00동 00번지		전화번호 000)000-0000
업 주	성 명	0 0 0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소	00시 00구 00동 00번지		
품 명	품 명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재고수량	000kg	시료채취량	
수 거 사 유	수거 사유를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			
<p>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개체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쇠고기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 년 00 월 00일</p>				
수거자(조사원)	소 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직 : 농업주사	성 명 : 0 0 0	(인)	
수거자(조사원)	소 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직 : 농업서기	성 명 : 0 0 0	(인)	
입회자(판매업자)	주 소 : 00시 00동 00번지			
	성 명 : 0 0 0 인(업주와의 관계 : 본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별지 4]

쇠고기 DNA검정 의뢰서(예시)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00-0000

시행일자 : 2008. 11. 12

수 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발 신 : ○○○출장소장

제 목 : 시료검정 의뢰

쇠고기이력추적관리 업무처리요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DNA검사를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① 품목	② 개체식별번호	③ 의뢰내용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첨부 : 시료 1 점 .끝.

○○○○○○장 (직인)

[별지 6]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문

문서번호 :

1.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아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 년 월 일 까지 첨부한 의견진술서(양식)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원()에 보내주시거나 전화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법조 및 위반내용

다. 과태료 산출근거 및 부과예정금액

20

○○지원 ○○출장소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8]

과태료 부과 요청(예시)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00-0000

시행일자 : 2008. 11. 12

수 신 :

발 신 : ○○○출장소장

제 목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한 개체식별번호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일시	장소	품목	위반내역
					○ 위반내용 및 위반 수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붙임 1. 확인서 사본 1부
- 2. 과태료부과 의견 진술 안내서 사본 1부
- 3.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증거자료 .끝.

년 월 일

○ ○ ○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9]

과태료 처분 통지서(예시)

(앞면)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회사(상호)명 :
2. 소재지 :
3. 주소 :
4. 대표자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한 개체식별번호표시 과태료 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위반내용	⑤조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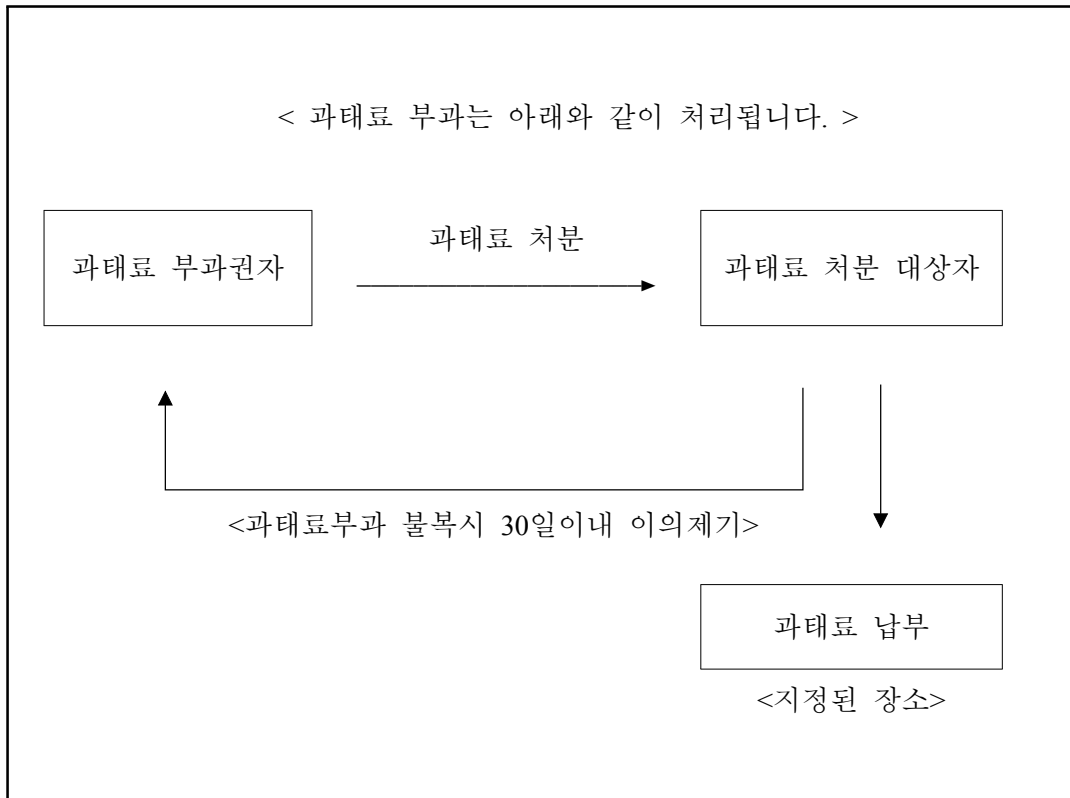
6. 처분내역 :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O O O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면)



[별지 10]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서 (예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상 호 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사항	
	품 목		수 량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이의신청 사 유				
<p>「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첨부서류 :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p> <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0

가축질병 역학조사 지침

□ 목적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중앙역학조사반,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시·도 역학조사반 및 기타 역학조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역학조사 행동지침을 보급함으로써 역학에 대한 이해와 역학조사기법 수준향상을 제고하고,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전과경로 규명 등 역학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질병확산 차단 등 신속한 방역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기본방향

○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또는 발생시 신속한 현지 역학조사 실시

- 출동시기별로 해당기관 역학조사반의 신속한 현지 투입
-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의 협조체제 구축

○ 역학조사기법 및 분석방법 체계화·과학화

- 역학조사기법 및 분석방법 지속 개발
- 선진국의 역학조사 기법 연수 지속 추진

○ 시·도 역학조사반 역량 강화

- 시·도 역학조사반 전담인력의 확보
- 시·도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 기능 활성화
- 역학조사반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

○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분석 및 제공
-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전산화(AIMS)를 통한 정보 공유
- 관련자료의 가축질병 방역활동(예찰 등)에 적극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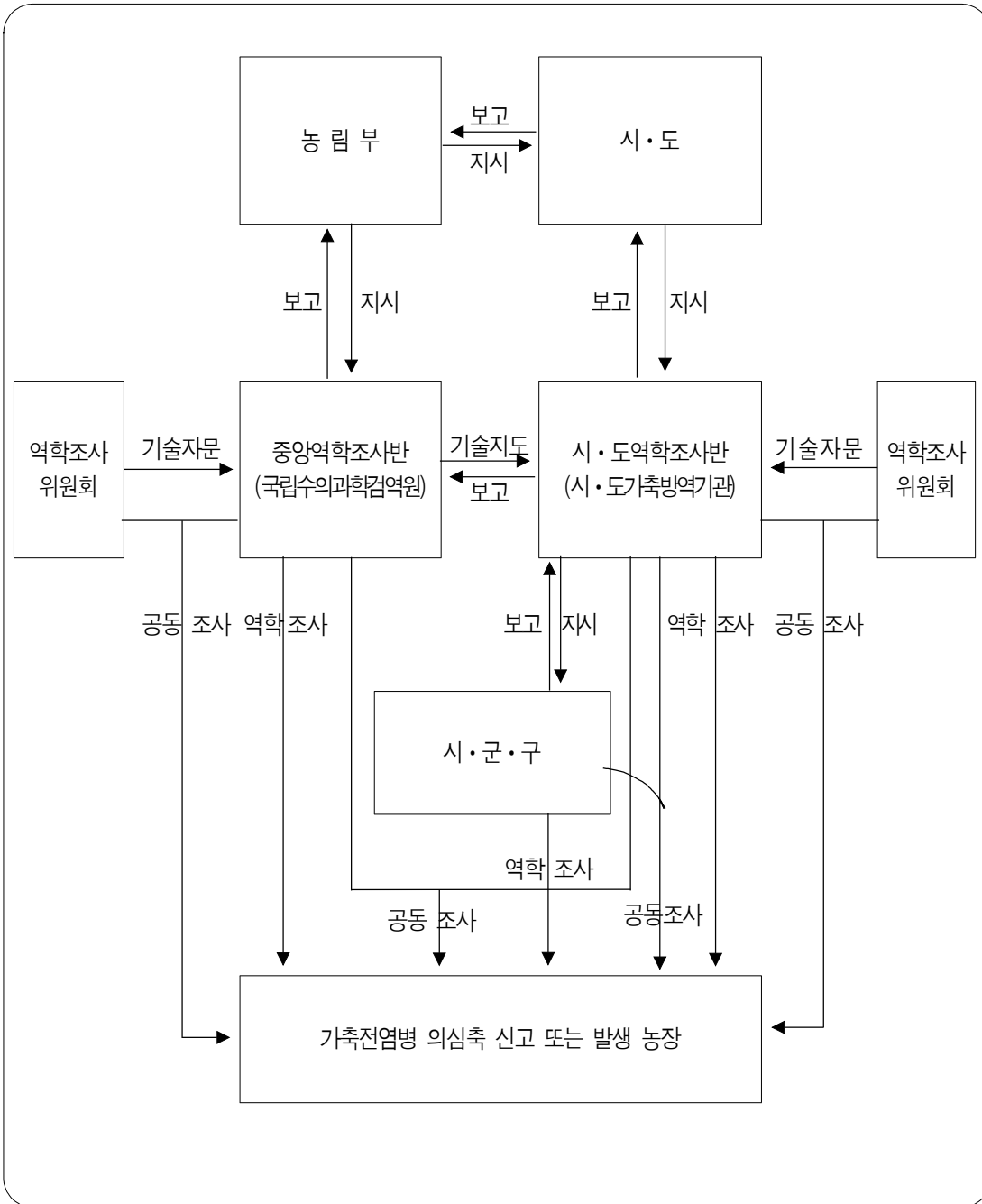
□ 관련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역학조사)
 - 역학조사 실시, 역학조사반 구성, 역학조사 협조에 관한 근거 조항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역학조사 대상 등) 및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 역학조사 대상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규정
-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구제역, 전염성해면상뇌증 및 돼지콜레라 긴급행동지침(농림수산식품부 지침)
- 중앙역학조사반 운영규정(검역원 훈령) 등

□ 기관별 역학조사 수행 관련업무

기 관	관 련 업 무	비 고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의심축 신고 접수 및 보고 ◦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시·도 가축방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의심축 신고 접수 및 보고 ◦ 역학조사결과 분석·평가 및 보고 ◦ 역학적 관련사항 방역조치 ◦ 시·도 역학조사위원회 기술자문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의심축 신고 접수 ◦ 역학조사 실시/역학조사 기술지도 ◦ 역학조사결과 분석·평가 및 보고 ◦ 역학적 관련사항 방역조치 ◦ 역학조사위원회 기술자문 	

역학조사 수행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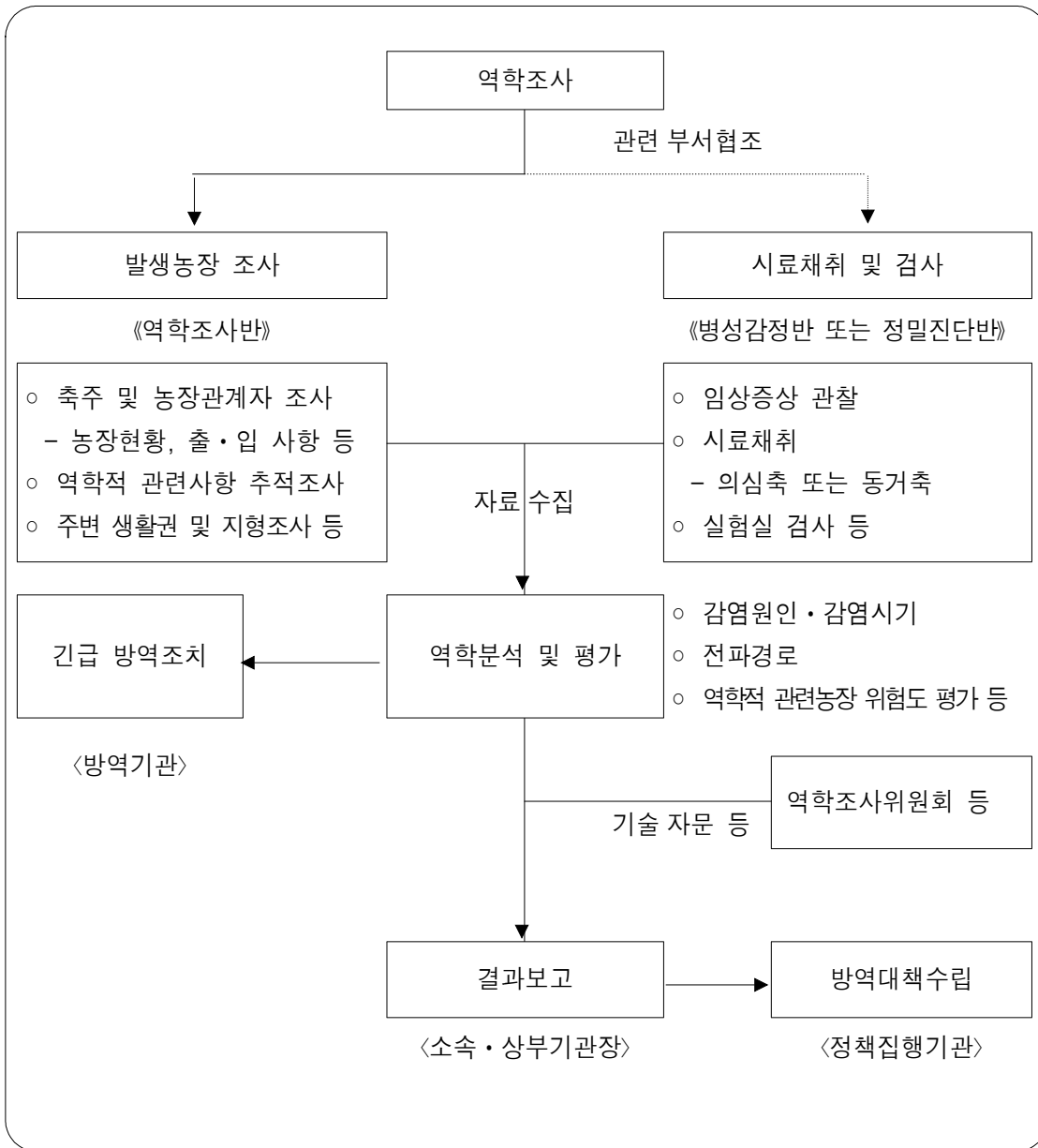
〈역학조사대상질병〉

- 우역 · 우폐역 · 구제역 · 돼지콜레라 · 아프리카돼지콜레라 ·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 소해면상뇌증
-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원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실시 시기》

중앙역학조사반	시·도 역학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이상의 시·도에서 관련 가축전염병이 발생·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시·도 역학조사반의 단독활동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시·도 역학조사반의 기술·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내 비발생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의심축 신고가 있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검역원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내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의심축 신고가 있는 경우 ◦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도에 발생하였으나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 검역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p>시·군(읍·면)·구 관계 공무원은 시·도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p>	
<p>공동조사</p>	
<p>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p>	

역학조사 처리상황조



역학조사대상 가축전염병

1. 법정 가축전염병 종류

○ 제1종 가축전염병(15종)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 텅병, 리프트게곡열, 림프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 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泡 病), 뉴캐슬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제2종 가축전염병(30종) :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 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텃센병, 스크래피,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동맥염(傳染性動脈炎), 구역 (構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주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프스, 가금콜레라, 광견 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 타이레리아(타이레리아팔바 및 애놀 라타), 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 아나플라즈마(아나플 라즈마 마지나레),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마웨스트 나일열

○ 제3종 가축전염병(18종) :

소유행열, 소아까바네병,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소전염성 비기관염, 소류코시스, 소렙토스피라병, 돼지전염성 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 위축 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랙병, 닭전염성F낭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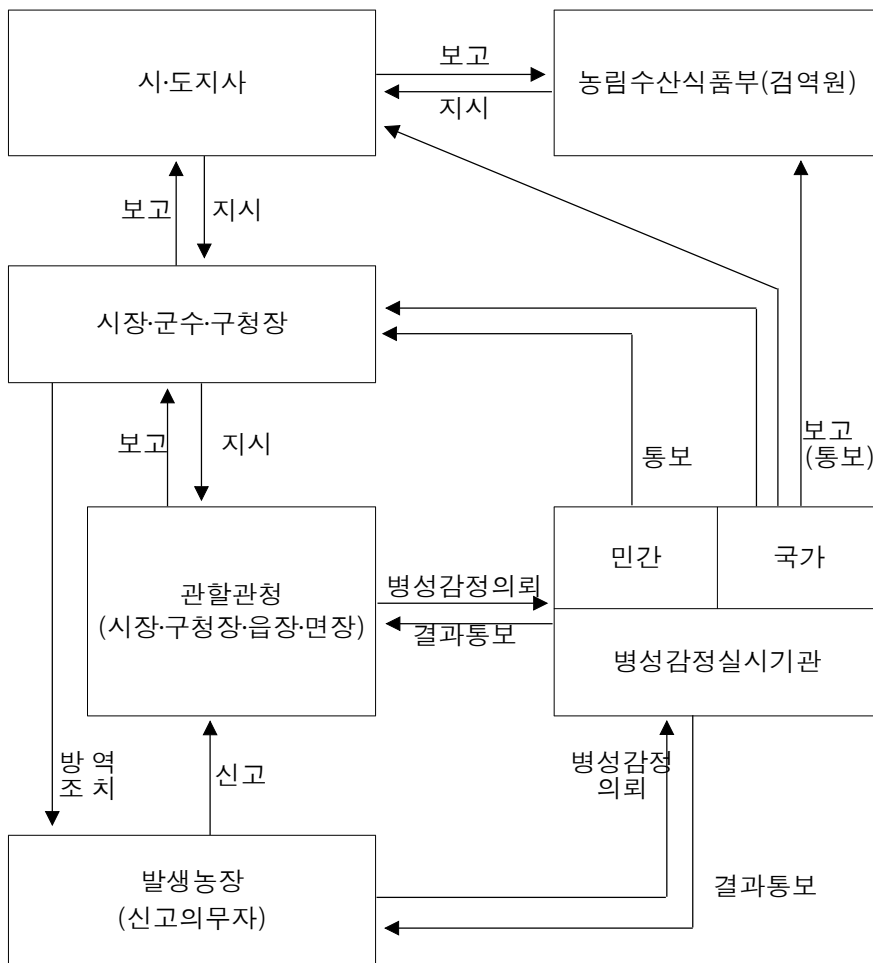
2. 역학조사대상 가축전염병

가.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고병원성가
금인플루엔자·소해면상뇌증

나.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원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3. 가축전염병 신고·보고 체계

가. 신고·보고 체계



나. 신고대상 가축

-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 신고대상 제외 가축

-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다. 신고의무자

- 가축의 소유자
-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하는 자
 - ※ 수의사에게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제외
- 철도·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

라.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서면 또는 구두
- 신고기관 :
 - 행정기관 : 관할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 방역기관 : 검역원, 시·도 방역기관 등
- 신고시 포함될 내용
 - 신고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의 성명 및 죽거나 병든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종류 및 두수
-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의 추정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가축에 한하며, 죽은 연월일이 불확실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 그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 〈별표1〉 참조

마. 방역조치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바. 미신고시 행정처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 또는 검안하여 신고하지 않은 수의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여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 운송업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여 신고하지 않은 당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별표 1>

의사환측 발생 신고서

접수번호 :

1. 신고접수월일 :	_____	접수일시 :	_____
2. 신고자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직 업 :	_____
		전화번호 :	_____
3. 의심질병명 :	_____		
4. 발생농장			
주 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축 주 :	_____	나이 :	_____
		사육경력 :	_____
5. 신고사항			
축 종 :	_____		
사육두수 :	_____		
발생두수 :	_____	폐사두수 :	_____
6. 임상증상 및 병력개요 :			
7. 기 취한 응급조치 사항 :			
8.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			
9. 조치사항 :			
10. 신고수리자 :			
소 속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역학조사 실무

1.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사항

가. 역학조사팀 편성

- 현지 역학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팀제(2인 1조)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역학조사용 준비물 확보

- 발생농장에 대한 현지 역학조사는 상황에 따라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며, 현장출동시 아래의 준비물을 최대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준비물 :
 - 신분증 : 역학조사반원증, 특별사법경찰관지명서 등
 - 기록장비 :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펜, 기록용 용지(출입시 소독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물이 번지지 않을 것), 책받침 등
 - 지침서 등 : 가축전염병역학조사지침, 질병별 긴급행동지침 등
 - 측정장비 :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나침반, 체온계, 풍향·풍속계, 망원경 등
 - 연락장비 : 이동전화, 무전기, 휴대용 조명등 등
 - 개인위생도구 : 모자, 1회용 방역복·장화·덧신, 마스크, 장갑,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포함 ; 소독제는 소독효과가 수분 이내에 빠르게 발휘되는 것을 선택한다), 투명지퍼백(대, 소), 비닐봉투, 기타 필요 도구

가축전염병 특성 및 기관별 준비여건에 따라 준비물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역학조사와 병원체 전파방지를 위한 준비물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역학조사시 주의사항

- 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주로 가축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축주, 관리인 등)의 기억 등 진술에 의존 하므로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침착하게 축주를 안심시켜 최대한의 협조를 구한다.
- 조사내용에 대하여 최소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질문을 한다.
 - 반복 질문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실시하며,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이 나올 경우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질문한다.
 - 최종 조사내용을 축주 등 조사대상자에게 재확인 시켜 줌으로써 상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나. 가축의 개체표시내역, 사양관리일지, 축주의 기억력 및 협조, 역학조사 기법(면담기술) 등은 역학조사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가능한 증거자료(폐사상황, 가축의 매매·이동내역, 출입자 및 출입차량 내역 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조사에 대해 성실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정보도 중요하므로 축주의 성격, 대인관계 등 역학조사 실시 전에 축주에 대한 주변정보를 입수하여 역학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 라.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학조사 실시 전 발생농장의 신고 내용과 검사 성적, 인근농장의 가축 사육두수, 위치 등을 지도나 관련 기관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 마. 발생농장의 감염기간 동안 출입한 동물, 사람, 차량 및 물품내역은 추적조사의 중요한 근거 자료이므로 감염동물과 접촉여부, 소독여부, 연락처 등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한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발생농장 방문시 방역조치 사항

가. 발생농장 방문 前 방역조치 사항

- 차량은 농장밖에 주차시킨다.
 - 부득이한 경우 농장안으로 진입할 경우 상황 종료시까지 농장내에 두어야 하며, 농장밖으로 나올 경우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 착용한 의복을 가능한 전부 탈의하고 1회용 방역복 및 덧신을 착용한다.
 - 방역복 및 덧신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2겹씩 착용을 권장한다
 - 탈의한 의복은 비닐봉투에 넣어 차량 또는 출입구에 보관한다.
- 농장진입 전에 휴대용 소독기로 휴대물품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준비물은 오염되지 않게 반입한다
- PDA, 휴대전화기 등의 휴대용 전자장비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밀폐한 후 농장내로 반입한다.

나. 발생농장 방문 後 방역조치 사항

- 발생농장을 나올때는 농장내(농장입구 근처)에서 분무소독기로 소독약이 완전히 적시도록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밖으로 나와 1회용 방역복, 덧신 등은 벗어 소각하도록 조치한다.
- 방역복 등을 소각후 사람, 휴대물품 및 신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시 휴대용 전자장비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는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적신후 꺼내어 적어도 5분이 경과한 후 개봉하도록 하고 비닐봉투는 소각한다.
- 방역초소 또는 세척시설에서 샤워를 실시한다.
 - 샤워시에는 반드시 온몸을 구석구석 닦아야 한다(머리, 귀 등도 반드시 세척하며 코풀기, 가래뱉기 실시)
- 발생농장 방문후 가능하면 약 2주정도 타 농장(질병에 감수성 있는 가축 사육농장)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소독기로 휴대물품 및 사람, 신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발생농장 방문시 방역조치는 가축전염병 특성 및 발생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병원체 전파방지를 위한 기본조치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가. 제1단계 : 발생농장에 대한 현지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 축주에 대한 조사는 전적으로 축주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므로 반복질문을 통해 답변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억이 희미한 경우에는 나중에 미 조사 내용을 꼭 확인하고, 관련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질병의 특성, 질병별 최대 잠복기간, 정밀검사 성적, 임상증상, 폐사율 등을 고려하여 감염일이 분석되어 질병 감염기간 동안 출·입한 내역이 조사되어야 한다
- 본 지침에 첨부된 현지역학조사서는 기본양식이므로 질병의 특성 또는 발생 양상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앙역학조사반(검역원 역학조사과)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발생농장 역학조사 실시

가) <별표2>의 「가축질병 역학조사 보고서」에 의한 현지 역학조사 실시

나) 발생농장을 출·입한 가축, 사람, 차량 및 물품에 관한 조사시에는 질병의 특성, 질병별 최대 잠복기, 임상증상 시작일, 폐사율 증가일, 정밀검사 성적 등을 고려하여 감염일을 분석하고 감염가능성이 높은 기간동안 출·입한 내역을 조사한다

- 감염일이 확인된 경우
 - 감염일 이후 발생농장에 출·입한 내역 조사

다) 현지 역학조사시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감염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 가축과 접촉하여 질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가축의 이동사항, 가축의 운반차량 및 운반자
- 가축의 치료 또는 가축과 접촉하였던 수의사, 동물약품 관계자, 임신진단자
- 발생농장 방문자의 가축의 접촉 및 소독실시 여부
- 발생농장의 가축사육 도구의 타농장 사용 여부 등

라) 현지 역학조사 내용

농장현황

□ 농장현황

- 축주 및 축주 가족사항 : 축주 및 축주의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나이, 직업, 축산경력, 주소, 전화번호, 타농장 운영여부, 농장도구의 인근농장 공동사용 여부 등
- 종사자 고용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나이,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출퇴근여부 및 시간 등
- 외국인 고용사항 : 성명, 여권번호, 입국일, 입국전 직업, 입사이전경력, 전화번호, 담당업무, 입국시 휴대물품 내역, 동포 및 친척 방문 또는 접촉일시, 최근 출·입국 횟수·일시 및 휴대물품 등
- 농장 위치 및 축사구조 도면 :
 - 농장위치(그림1) : 농장위치 도면(표준지도 도법에 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
 - 축사구조(그림2) : 축사도면(축사(동)별 사육두수·발병 가축 위치·발병두수·폐사두수), 출하대 위치, 별크 및 지대사료 위치, 건초보관위치, 소독시설 구조 및 위치, 약품창고, 분뇨처리장 등

□ 가축사육현황

- 사육현황 : 축종, 품종, 총사육두수, 사육세부내역, 사육형태, 기타가축사육두수 등
- 사육형태 : 축사의 크기(豚: 돈사내 돈방수, 돈방내 사육 두수 등, 牛: 방목형우사·계류식우사 사육 등, 鷄: 평사·케이지사 사육 등)
- 인근농장 현황 :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질병감염여부 등

□ 과거 가축질병 발생내역

- 질병명, 진단일, 진단기관(진단자)(이름 및 전화번호), 발생두수, 폐사두수, 종식일 등

□ 백신접종 내역

- 시술자(이름 및 전화번호), 백신이름, 접종일시, 접종부위, 일령, 축사(방)번호, 두수, 개체번호 등

□ 소독시설 및 소독실시 내역 :

-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 : 약품명, 희석배수, 구입일시, 구입량, 사용일시, 사용량, 재고량 등
- 소독시설 내역 : 소독장비(이름 및 모델번호), 작동방법(자동, 수동, 기타), 설치장소, 소독대상, 소독횟수(회/일), 약품명, 사용량 등

질병발생 및 신고경위

□ 일시별 임상증상 진행경과 내역 :

- 일시, 관찰자, 임상증상 진행경과, 환축두수, 폐사두수 등

□ 정밀검사 의뢰내역 :

- 시료명, 시료수, 채취일자, 채취자, 검사기관, 검사결과, 통보일자 등

□ 신고경위 :

- 일시, 기관명, 면담(통화자), 전화번호, 면담(통화)내용 등

가축의 이동사항

□ 입식현황

- 축종(품종), 두수, 일령,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판매처(농장명 및 전화번호), 중개자(성명 및 전화번호),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 실시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입식시 격리사육 여부 및 기간 등

□ 도축출하 현황

- 축종(품종), 두수, 일령,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도축장(이름 및 전화번호), 중개자(성명 및 전화번호),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 위탁(분양, 판매) 현황

- 위탁 현황 : 축종(품종), 두수, 일령,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위탁농장(이름 및 전화번호), 중개자(성명 및 전화번호),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 분양 현황 : 축종(품종), 두수, 일령,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분양농장(이름 및 전화번호), 중개자(성명 및 전화번호),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 판매 현황 : 축종(품종), 두수, 일령,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판매농장(이름 및 전화번호), 중개자(성명 및 전화번호),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농장출입 사람(차량·물품) 현황

□ 축주, 농장 근무자 및 그 가족

- 성명, 차량번호, 출발일시, 도착일시, 방문지, 접촉자(성명 및 전화번호), 방문목적,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농장방문여부, 휴대물품 내역, 소독실시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 수의사 및 축산관련 업체 등 서비스 관계자

- 동물병원(회사)(이름 및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일령(개체번호), 부검두수, 치료두수, 진단명, 처방내역,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소독실시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 외부인(우편물, 택배, 공사 등)
 - 방문자(이름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방문 목적, 前방문지, 휴대물품 내역,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 동물약품
 - 구입현황 : 공급처(회사명 및 전화번호), 약품명,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보관장소, 의복 및 신발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 사용현황 : 약품명, 투여자, 투여일시, 투여방법, 일령, 투여두수, 개체번호, 축사(명)번호,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소독실시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 가축사료
 - 제조회사(이름 및 전화번호), 사료종류(벌크, 지대, 건조 등), 수량, 용도,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하역장소(지대사료 및 벌크사료), 급여방법,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방문시 이동경로, 수입사료의 경우(건조 등) 구입처, 수출국 및 수입일자 등
- 가축분뇨(똥밥, 계분, 분뇨)
 - 품명, 처리업체(이름 및 전화번호),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운반(반입)처(이름 및 전화번호), 처리방법 (자가, 유기질비료, 폐수처리장, 살포 등),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방문시 이동경로 등
- 종부(자연종부 및 인공수정)
 - 자연종부 현황 : 종부일시, 개체번호(母-雄), 종부방법(자가, 외

부반입), 雄畜공급처,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의복 및 신발 위생 상태,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방문시 이동경로 등

○ 정액구입 현황 : 생산업체(이름 및 전화번호), 공급업체(이름 및 전화번호), 수량, 운반자(이름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보관장소,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 여부,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방문시 이동경로 등

○ 임신진단 및 인공수정 현황 : 시술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시술일시, 시술두수, 개체번호, 축사(방)번호,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방문시 이동경로 등

○ 정액판매 현황(종돈장에 한함) : 판매처(이름 및 전화번호), 수량, 운반자(이름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등

□ 집유(젖소농장에 한함)

○ 집유장(이름 및 전화번호),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집유방법,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방문시 이동경로 등

□ 잔반 처리

○ 자가급여 현황 : 급여자, 급여일시, 수량, 대상가축(돼지, 개 등), 축사(방) 번호, 두수 등

○ 반출 및 반입 현황 : 운반(반입)처(이름 및 전화번호),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수량,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보관장소, 급여일시, 대상가축, 축사(방)번호, 두수,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가축급여시 처리방법(구체적으로), 방문시 이동경로 등

□ 폐사축 처리

- 자가처리 현황 : 처리자(성명 및 전화번호), 처리일시, 두수, 처리 장소, 처리방법(매몰, 소각, 퇴비처리, 개급여 등) 등
- 외부처리 현황 : 운반자(성명 및 전화번호), 두수,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처리장소, 처리방법(매몰, 소각, 폐수처리장 등),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방문시 이동경로 등

□ 야생동물(야생조수류 포함) 출현

- 축종, 출현두수, 출현일시, 출현빈도(회/일), 출현장소, 가축 및 폐사축과 접촉여부 등

기타 사항

□ 발생농장 관련자 및 인근지역 주민 외국방문 사항

- 성명(전화번호), 직업, 출국일시, 귀국일시, 방문국, 방문목적, 농장방문여부, 귀국시 휴대물품, 귀국후 농장방문 여부(농장이름, 전화번호 및 일시), 외국방문시 이동경로 등

□ 기상상황(공기전파 질병에 한함)

- 일자, 시간, 풍향, 풍속 등
 - 풍향계 및 풍속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상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 요청하여 자료확보

□ 발생농장 주변 생활권 조사

- 발생농장 및 인근 주민들의 주 생활권 조사 및 활동지역 조사
- 발생농장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조사(학교, 우체국, 은행, 교회 등)
- 발생농장 및 인근 주민들의 식료품 구입처 등 조사

- 발생지역 지형조건 조사
 - 발생농장 주위 산, 강, 도로 등에 대한 조사
 - 도로의 경우는 정기적인 시내·시외의 주·정차 위치 등
-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모이는 장소(집성촌) 조사
 - 불법휴대 육류 등 유통사항 조사
 - 집성촌 위치
 - 농장 외국인 근로자와 접촉여부 등

농장 관계자 의견

- 축주 또는 관리인이 추정하는 질병유입 원인에 대한 의견 기술

조사자 의견

- 현지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발생 및 확산원인 추정 등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기술

2) 시료채취 및 검사

- 가) 의심축 신고농장 또는 발생농장의 시료채취 및 검사는 병성감정 실시기관 담당부서(병성감정반 또는 정밀진단반)에서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현지 역학조사는 역학조사반에서 실시한다. 다만, 각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여 실시한다
- 나) 시·도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구제역 등)에는 살처분시 또는 살처분 실시이전에 동거축에 대하여 모든 축사에 대해 일정 두수이상 시료(혈액, 장기 등)를 채취·검사하여 농장내 감염규모, 농장내 전파양상 등을 분석하여 감염시기를 분석하여야 한다
- 다)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실시하는 질병(결핵, 부루세라, 오제스키병, 추백리 등)은 질병별 방역실시요령에 준한다

나. 제2단계 : 감염기간 동안 발생농장을 출·입한 가축·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1) 가축의 이동경로(구입 및 판매 등) 조사

○ 위탁·판매·분양농장 조사

- 가축전염병 감염여부 확인(임상관찰 또는 정밀검사 : 관련부서 협조)
- 가축 운반자 및 차량의 이동내역, 해당농장의 가축 이동내역 등

○ 출하 도축장에 대한 조사

- 도축장 출·입 가축의 사육농장, 운반자 및 운반차량
- 도축장 및 가공장 오염여부 확인(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 관련부서 협조)
- 발생농장 가축 도축후 해당(오염)육류의 판매내역 및 농장 반입여부 조사

2) 사람·차량·물품의 이동경로 조사

○ 발생농장 출·입후 타 농장 방문(이동)내역

- 방문자·차량·물품(수의사, 동물약품, 사료, 분뇨, 정액, 잔반, 배달, 사체 등)이 이동한 농장내역

○ 방문농장의 가축전염병 감염여부 확인(임상관찰 또는 정밀검사 : 관련부서 협조)

○ 발생농장의 가축 사육도구의 타 농장 공동사용 여부

○ 발생농장 인근 감수성 가축 사육농장의 가축전염병 감염여부 확인 (임상관찰 또는 정밀검사 : 관련부서 협조)

다. 제3단계 :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한다

○ 역학조사 결과는 당일 분석이 원칙이다

- 사양관리내역(생산두수, 폐사두수, 이동두수, 사료소비량, 약품사용내역, 소독약 사용내역 등)
- 감염원인 및 전과경로

- 유행곡선(Epidemic curve), 감염시기(Time line)
- 발생농장 출·입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위험도 분석

구 분	기 준
高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가능 시기에 발생농장의 가축·오염물이 이동한 농장 ○ 오염가능 시기에 발생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을 접촉하였거나 축사 내에 출입 또는 가축을 운반하였던 사람(차량)이 방문한 농장 ○ 오염가능시기에 발생농장의 가축이 도축장에 출하된 직후 당일 출입한 사람·차량이 가축운반(출하)을 위해 방문한 농장
中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가능 시기에 발생농장을 단순 방문하였던 사람(차량)이 방문한 농장으로서 역학적 연관성 요인이 2개 이상인 농장 ○ 오염가능시기에 발생농장의 가축이 도축장에 출하된 직후 출입한 사람·차량이 가축운반(출하)을 위해 방문한 농장으로서 역학적 연관성 요인이 2개 이상인 농장 ○ 고위험농가 분류에 해당되나 시기적으로 오염가능성이 낮은 경우
低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가능시기에 발생농장을 단순 방문하였던 사람(차량)이 방문한 농장으로서 역학적 연관성 요인이 1개인 농장 ○ 오염가능시기에 발생농장의 가축이 도축장에 출하된 직후 출입한 사람·차량이 가축운반(출하)을 위해 방문한 농장으로서 역학적 연관성 요인이 1개인 농장

〈 역학적 관련농장 위험도 분석 기준 〉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요청 사항
 - 오염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물품) 등에 대한 소독
 - 오염가능시기에 발생농장 방문한 사람(차량)에 대하여 일정기간 타농장 방문금지
 - 오염가능시기에 출입한 사람(차량)등이 방문한 농장 및 발생농장 가축이 입식된 농장에 대한 질병감염 여부확인
 - 가축이 도축된 도축장 및 가공장에 대한 소독조치 및 오염여부 조사
 - 오염가능시기에 발생농장 가축이 도축·유통된 고기 등의 농장반 입여부, 회수 및 폐기(구제역 등)
- 관계기관 보고(농림수산식품부, 검역원, 시·도)시 역학조사 분석 내용 보고
- 분석결과를 향후 역학조사계획 및 방역조치에 반영
 - 인원배치, 조사방법 개선 및 물품구매 계획
 - 방역정책 결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본자료 제공 등

라. 제4단계 : 역학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자문을 받는다

- 해외역학전문가 공동조사 또는 기술자문(구제역 등)
- 역학조사위원회 및 질병별 분과위원회 공동조사 또는 기술자문
- 질병별 실무위원회 공동조사 또는 기술자문
- 원(소)내 전문가그룹 토의 및 기술자문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끈질긴 노력과 가축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설문조사의 기법이 요구되므로 필요에 따라 중앙역학조사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4. 역학조사 진행 및 결과보고

가. 보고의 종류

1) 최초보고

- 발생농장에 대한 최초 현지역학조사 결과

2) 중간보고/수시보고

- 역학조사 진행 상황, 조사 및 분석 결과내용, 특이사항 등

3) 최종보고

- 질병발생 종료후 역학조사 결과 최종보고서 작성·보고

나.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1) 국내 비발생 악성 가축전염병(구제역 등) 역학조사 보고서

- 질병발생 종료후 역학조사결과를 해외역학전문가 및 역학조사위원회 등의 기술자문을 거쳐 최종보고서 작성보고(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2) 국내 발생 가축전염병(질병) 역학조사 보고서

- 해당질병 역학조사 종료후 역학조사결과 분석·평가후 보고(소속 기관장)
- 역학조사결과 보고서 관련기관(농림수산식품부, 검역원, 시·도) 보고(통보)
-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AIMS)에 자료입력
- 필요시 관련단체 홍보

3) 국내 기 발생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보고서

- 해당질병 역학조사 종료후 역학조사결과 분석·평가후 보고(소속 기관장)
- 역학조사결과 보고서 관련기관(농림수산식품부, 검역원, 시·도) 보고(통보)
- 전국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질병별로 종합 분석·평가(검역원 역학조사과)
 - 방역정책의 기본자료로 농림수산식품부, 시·도(가축방역기관) 및 관련단체에 보고(통보)

<별표 2>

<가축질병 역학조사서 양식>

가축질병 역학조사 보고서					
농장명		축주명			
주소		농장좌표	북위(X) :		
			동경(Y) :		
전화번호(핸드폰)		FAX			
조사일시		조사자소속		성명	(인)

1. 농장현황

농장 현황

축주 및 축주 가족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나이)	주소	직업	축산경력	전화번호	비고

- 타 농장 운영여부 :
- 농장도구의 인근농장 공동사용 여부 :

종사자 고용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나이)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출퇴근여부 및 시간	비고

외국인 고용사항

성명	여권번호	입국일	입국전 직업	입사이전경력	전화번호	담당업무	비고

- 입국시 휴대물품 내역 :
- 동포 및 친척 방문 또는 접촉일시 :
- 최근 출·입국 횟수·일시 및 휴대물품 :

○ 농장위치 및 축사구조 도면

- 농장위치(그림1) : 농장위치 도면(표준지도 도법에 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
- 축사구조(그림2) : 축사도면(축사(동)별 사육두수·발병 가축위치·발병 두수·폐사두수), 출하대 위치, 벌크 및 지대사료 위치, 건초보관위치, 소독시설구조 및 위치, 약품창고, 분뇨처리장 등

□ 가축 사육현황 :

○ 사육현황

축 종	품 종	총사육두수	사육 세부내역	사육형태	기타가축사육두수	비고

- 기타 특이사항 :

○ 사육형태 :

○ 인근농장 현황

농 장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비고

- 질병감염여부 :

- 기타 특이사항 :

□ 과거 가축질병 발생내역 :

질병명	진단일	진단기관(진단자)	발생두수	폐사두수	종식일	비고

- 기타 특이사항 :

□ 백신접종내역 :

시술자	백신이름	접종일시	접종부위	일령	축사(방)번호	두수	개체번호	비고

- 기타 특이사항 :

□ 소독시설 및 소독실시 내역 :

○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 :

약품명	획석배수	구입일시	구입량	사용일시	사용량	재고량	비고

- 기타 특이사항 :

○ 소독시설 내역 :

소독장비	작동방법	설치장소	소독대상	소독횟수(회/일)	약품명	사용량	비고

- 기타 특이사항 :

2. 질병발생 및 신고경위

□ 일시별 임상증상 진행경과 내역 :

일시	관찰자	임상증상 진행경과	환축 두수	폐사 두수	비고

- 기타 특이사항 :

□ 정밀검사 의뢰 내역 :

시료명	시료수	채취일자	채취자	검사기관	검사결과	통보일자	비고

- 기타 특이사항 :

신고경위 :

일시	기관명	면담(통화)자	전화번호	면담(통화) 내용	비고

- 기타 특이사항 :

3. 가축의 이동사항

입식현황

축종(품종)	두수	일령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판매처	운반자	중개자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입식시 격리사육 여부 및 기간 :
- 기타 특이사항 :

도축 출하현황

축종(품종)	두수	일령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도축장	중개자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기타 특이사항 :

위탁(분양, 판매)농장 현황

○ 위탁농장 현황 :

축종(품종)	두수	일령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위탁농장	중개자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기타 특이사항 :

○ 분양농장 현황 :

축종(품종)	두 수	일 령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분양농장	중개자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기타 특이사항 :

○ 판매농장 현황 :

축종(품종)	두 수	일 령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판매농장	중개자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기타 특이사항 :

4. 농장출·입 사람(차량·물품) 현황

축주, 농장 근무자 및 그 가족

성 명	차량번호	출발일시	도착일시	방문지	접촉자	방문목적	비 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농장방문 여부 :

- 휴대물품 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가족의 경우 주 활동 근거지(생필품 구입처, 학교, 직장 등) :
- 기타 특이사항 :

출입수의사 및 서비스 관계자

동물병원 (회사)	성명	전화 번호	차량 번호	도착 일시	출발 일시	일령 (개체번호)	부검 두수	치료 두수	진단명	처방 내용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기타 특이사항 :

외부인(우편물, 택배, 공사 등)

방문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방문목적	전방문지	휴대물품내역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상태(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기타 특이사항 :

동물약품

○ 구입현황

공급처	약품명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보관장소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기타 특이사항 :

○ 사용현황

약품명	투여자	투여일시	투여방법	일령	투여두수	개체번호	축사(방)번호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기타 특이사항 :

□ 가축사료

회사명	사료종류	수량	용도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하역장소	급여방법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방문시 이동경로 :
- 수입사료의 경우 수출국 및 수입일자 :
- 기타 특이사항 :

□ 가축분뇨(똥밥, 계분, 분뇨)

품명	처리업체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운반(반입)처	처리방법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방문시 이동경로 :
- 기타 특이사항 :

□ 종부(자연종부 및 인공수정)

○ 자연종부 현황

종부일시	개체번호 (母-雄)	종부방법	雄畜 공급처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방문시 이동경로 :
- 기타 특이사항 :

○ 정액구입 현황

생산업체	공급업체	수량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보관장소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방문시 이동경로 :
- 기타 특이사항 :

○ 임신진단 및 인공수정 현황

시술자	차량 번호	도착 일시	출발 일시	시술 일시	시술 두수	개체 번호	축사(방) 번호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방문시 이동경로 :
- 기타 특이사항 :

○ 정액판매 현황(중돈장에 한함)

판매처	운반자	수량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기타 특이사항 :

□ 집 유(젓소농장에 한함)

집유장	운반자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집유방법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방문시 이동경로 :
- 기타 특이사항 :

□ 잔반 처리

○ 자가급여 현황

급여자	급여일시	수 량	대상가축	축사(방) 번호	두 수	비 고

○ 반출 및 반입 현황

운반 (반입)처	운반자	수량	차량 번호	도착 일시	출발 일시	보관 장소	급여 일시	대상 가축	축사(방) 번호	두수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가축급여시 처리방법(구체적으로) :
- 방문시 이동경로 :
- 기타 특이사항 :

폐사축 처리

○ 자가처리 현황

처리자	처리일시	두수	처리장소	처리방법	비고

○ 외부처리 현황

운반자	두수	차량번호	도착일시	출발일시	처리장소	처리방법	비고

- 의복 및 신발 위생상태 :
- 가축과 접촉여부 :
- 소독실시 여부(출입시 사람·차량·물품) :
- 방문시 이동경로 :
- 기타 특이사항 :

야생동물(야생조수류 포함) 출현

축종	출현두수	출현일시	출현빈도(회/일)	출현장소	가축(폐사축)과 접촉여부	비고

- 기타 특이사항 :

5. 기타 사항

발생농장 관련자 및 인근지역 주민 외국방문 사항

성명	직업	출국일시	귀국일시	방문국	방문목적	농장방문 여부	귀국시 휴대물품	귀국후 농장 방문 여부	비고

- 외국방문시 이동경로 :
- 기타 특이사항 :

기상 상황(공기전파 질병에 한함)

일자	시간	풍향	풍속	비고

- 풍향계 및 풍속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상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 요청하여 자료 확보
- 기타 특이사항 :

□ 발생농장 주변 생활권 조사

- 발생농장 및 인근 주민들의 주 생활권 및 활동지역 :
- 발생농장 및 인근 주민들의 위한 공공시설 :
- 발생농장 및 인근 주민들의 식료품 구입처 등 :

□ 발생지역 지형조건 조사

- 발생농장 주위 산, 강, 도로 등 :
- 정기적인 시내·외의 주정차 위치 등 :

□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모이는 장소(집성촌) 조사

- 불법휴대 육류 등 유통사항 :
- 집성촌 위치 :
- 농장 외국인 근로자와 접촉여부 등 :

6. 농장 관계자 의견

- 축주 또는 농장관리인이 추정하는 질병 유입원인에 대한 의견 기술

7. 조사자 의견

- 현지 역학조사결과 조사자의 의견 기술

한우 기준 설정

한우 기준 총괄

구분	구분 기준	표시
종 축	○ 한우외모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등록된 한우	한우(종축등록)
	○ 제주 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 흑우」 - 제주 흑우 등록우에서 태어난 소	제주 흑우(종축) 제주 흑우
한 우	○ 일반한우 -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주위·뿔·발굽·항문 등이 흑색이나 체형상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백반이 있으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 (이마백반, 가슴백반 등) - 흑모가 있으나 귀속, 귀주위, 입주위, 목부분 등의 경 미한 흑모와 흑반우 - 백반 또는 흑반이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 라고 인정되는 소(분쟁발생 시 인공수정 기록 확인 또는 DNA검사시 부·모·자식 3샘플에 의거 친자가 확인된 소	한우(비경흑) 한우(면백) 한우(흑반) 한우(귀속흑모) 한우(가슴백반) 등으로 특징을 구분
	* 백모가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 되는 소 (속모 : 몸 또는 이마에 몇 가닥씩 산재)	한우(이마속모) " (전신속모)
	○ 칩한우(칩소) -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부·모 모두 칩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 부·모 모두 칩소에 의하여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중 분쟁발생 시(부·모·자식 3샘플의 DNA검사 친자확인) - 생산된 송아지 중 세로줄 무늬가 10%이상인 소	

한우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 일반한우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전체가 황갈색(누런빛을 내는 갈색), 담갈색(연한 갈색), 적갈색(붉은 갈색)이며 암소의 유방부위, 암·수소의 다리 안쪽, 배 주위는 약간 옅은 색을 나타냄 - 귀·눈주위·비경(코)근처에 흑색을 나타내기도 하며 흑모(반) 및 백모(반)을 나타내기도 함
체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종(뼈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살(肉)색이나 흑색, 회색도 나타남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도 있음
머리·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가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치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견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각과 좌골사이의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제·발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은 곧바로 뺨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 제주흑우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전신이 흑색이며 비경이 약간 연한 흑색을 띠며 모색은 50%가 검은색, 40% 흑갈색, 10%가 황색으로 발현됨 - 눈, 비경, 꼬리와 발굽은 검다가 생후 5개월령에 흑우의 모색으로 발현됨 - 복부 및 유방주위에 백반이 나타나는 개체가 있음
체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종(쇠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이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 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이나 후향 및 하향각등 골고루 나타남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흑색이나 살(肉)색이나 회색도 나타남 - 제주 흑우의 경우 내륙흑우와 달리 비경주위에 흰테두리가 없음
머리·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가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치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경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각과 좌골사이의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제·발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은 곧바로 뺨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흑색임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 **취한우(취소)**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색은 황갈색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과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 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음 - 모색은 주로 호반무늬:흑색:황색비율이 3:3:4의 비율로 나타나며 황만선도 보임 - 모색이 검더라도 귓속과 뿔과 뿔 사이의 모색이 황색으로 발현됨
체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종(쇠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 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흑색이나 회색, 살(肉)색도 나타남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가 있으며, 비경주위는 흰 테두리를 보임
머리·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가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결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각과 좌골사이의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제·발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은 곧바로 뻗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이력단계별 질의응답

1. 소 사육단계 / 231
2. 소 도축단계 / 240
3. 쇠고기 포장처리단계 / 244
4. 쇠고기 판매단계 / 249

V

이력단계별 질의응답

1

소 사육단계

질 문

소의 출생 등의 신고(기준소 신고포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의 출생 등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의출생등신고서(기준소 신고포함)를 서면으로 관할구역의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할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 문

이 법 시행당시 가지고 있는 기준소는 언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까?

답 변

- ▷ 법 시행 당시 소유자등이 가지고 있는 소(이하 “기준 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2008. 12. 22)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인 '09. 6. 22까지 신고 및 귀표 부착을 마쳐야 합니다.

질 문

출생 등(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의 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 소가 태어날 경우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출생 후 30일 까지입니다. 소를 사고 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 신고기한도 역시 30일 이내입니다.

질 문

소의 소유자 등이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가요?

답 변

▷ 소의 소유자로서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나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질 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유자 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질 문

위탁기관에서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출생 등의 전화 또는 구술신고가 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 변

▷ 위탁기관에서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출생등 신고에 관한 전화 또는 구술 신고가 오면 해당 사실을 출생등의 신고서에 기재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 할 수 있습니다.

질 문

귀표란 무엇입니까?

답 변

▷ “귀표”란 이력추적을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등으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로 인쇄형, 단추형, 재부착용 귀표가 있습니다.
 이중 “재부착용 귀표”란 개체식별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귀표로, 귀표 탈락시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재부착하는 귀표를 말합니다.

질 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귀표는 어떤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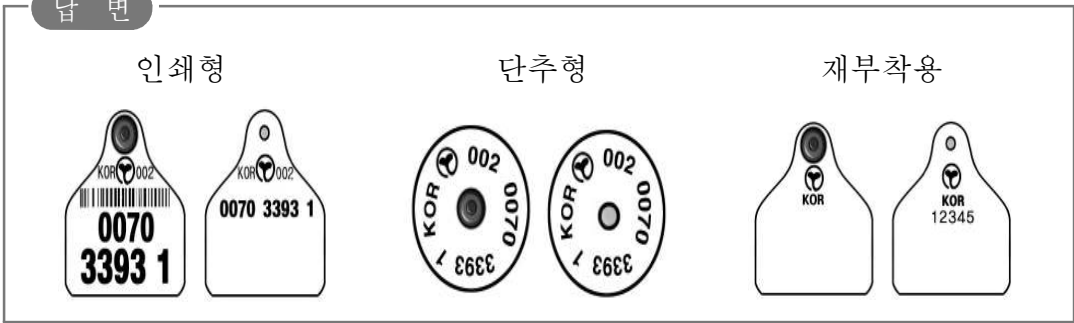
답 변

▷ 귀표는 문자(KOR), 식별코드(12자리), 바코드 및 농림사업엠블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축산정책사업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배부하는 구형귀표(9자리)는 기존 소에 기 부착된 것만 인정하나, 전산등록할 경우는 앞에 000을 넣어 총 12자리를 기재 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질 문

귀표는 어떻게 생겼나요?

답 변



질 문

귀표부착 대상과 부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 귀표부착 대상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가 해당됩니다.
다만, 관련법 시행일 현재 소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소는 본 사업에 의한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 귀표부착 기한은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이나,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질 문

귀표는 어떻게 부착하나요?

답 변

- ▷ 귀표의 부당사용 방지 및 통일을 기하고, 탈락에 대비하여 양쪽귀(1두 2조)에 부착합니다. 소를 기준으로 우측에는 일반 인쇄형 귀표를, 좌측에는 단추형 귀표를 부착합니다.
귀 앞쪽에 암(♀)귀표, 귀 뒤쪽에 수(♂)귀표를 부착합니다.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서 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귀표 탈락시는 동일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농림사업엠블렘과 국가코드 KOR이 인쇄되어 있는 재부착용 귀표에 수기로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합니다.

질 문

귀표 부착시 오류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 변

- ▷ 귀표부착의 오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좌측 귀(인쇄형), 우측 귀(단추형)를 좌 - 우를 바꾸어 부착 된 경우
 - 인쇄형과 단추형의 암수를 서로 교차하여 부착하는 경우
 - 1두 2조를 부착하지 않고, 인쇄형 귀표만 부착 (단추형 미부착)하는 경우 등

질 문

목줄을 이용하여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 변

- ▷ 귀표부착의 예외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
 - 소의 귀에 질환이 걸려있거나 외상 등으로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 문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귀표부착의 예외 사항은 어떤 경우 인니까?

답 변

-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 된 경우를 말합니다.

질 문

귀표가 훼손·탈락된 경우에는 재 부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변

- ▷ 귀표가 훼손·탈락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및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 귀표 재부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형 1개 탈락 : 단추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
 - 단추형 1개 탈락 : 인쇄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
 - 2개 모두 탈락 : 해당 농가의 개체식별번호 대장 조회를 통해 해당 소의 귀표 탈락여부를 확인한 후 탈락 된 소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양쪽 귀에 부착

질 문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보존기간은 얼마입니까?

답 변

- ▷ 개체식별대장은 해당 소의 도축·폐사 또는 수출 등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 문

신고한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답 변

- ▷ 출생등의 신고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 된 내용 중 출생 등 신고의 공통신고 사항을 변경 희망할 경우 소의 소유자 등은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 문

개체식별대장의 기록누락이나 오류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 변

▷ 출생등 신고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된 내용 중 출생등 신고의 공통신고사항 이외의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는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 문

쇠고기 이력제에서 구분하는 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변

▷ 쇠고기 이력제에서 구분하는 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우 : 한우 기준에 부합하는 소
 육 우 : 젖소 중 착유하지 않는 암소, 수소, 기타 육용 소
 젖 소 :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유용 소
 수입소 :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질 문

위탁기관은 어떻게 지정됩니까?

답 변

▷ 위탁기관의 지정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합니다.

질 문

위탁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답 변

▷ 위탁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의 출생 등 신고서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소의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귀표의 수령·배부 및 귀표의 부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소의 출생, 양도·양수 등 신고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소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이력추적사업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질 문

농가 조치사항 미준수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질 문

수입소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답 변

- ▷ 수입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입한 국가에서 부착한 개체식별 번호를 확인하고,
- 귀표가 없는 소는 개체식별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귀표를 부착하여 관리합니다.

질 문

이 법 시행당시(2008.12.22 이전) 소유자등이 가지고 있는 소는 언제부터 동 법을 적용받게 되나요?

답 변

▷ 2008.12.21이전 소유자등이 가지고 있는 소는 2009.6.21까지 귀표부착 및 출생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 문

이 법 시행당시(2008.12.22이전) 「축산법」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라 소유자등이 출생 등의 신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는 법이 시행되는 2008.12.22부터 출생등의 신고를 또 하여야 합니까?

답 변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법 시행당시 축산법에 따라 2008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귀표부착, 변경신고, 출생등의 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시행당시 신고된 소가 2008.12.22 이후 양도·양수 등 이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지만, 2009.6.22 이전까지는 벌칙과 과태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 문

이 법 시행당시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 부루셀라병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된 소는 동 법이 적용되는 2008.12.22부터 새로운 이력추적체용 귀표를 부착해야 되나요?

답 변

▷ 귀표를 다시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 시행당시 축산법에 따라 귀표를 부착한 경우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부착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2

소 도축단계

질 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축업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소를 도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관련사항을 기록 및 보관(2년)해야 하고 (법 제3조, 제13조), 소 도체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10조)

확인 및 표시

질 문

도체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가 무엇입니까?’

답 변

▷ 소의 개체식별번호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소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소의 출생부터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로는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질 문

어떤 경우에 소의 도축이 금지됩니까?

답 변

▷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거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소 또는 귀표번호가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 문

소의 도축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변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동 번호가 이력추적 시스템에 전산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 문

이력제 소가 도축된 후 어떠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 변

▷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축검사증명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것으로 도를 도축 의뢰할 경우 도축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 문

도축장에서 묶음번호표시는 가능한가요?

답 변

▷ 아니요, 도축장에서 묶음번호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질 문

도축장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위한 준비 장비는 어떤 것 들이 있나요?

답 변

- ▷ 개체식별표시가 가능한 라벨프린터, 스캐너 등과 인터넷이 가능한 PC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 ▷ 또한 축산물등급판정사실에는 DNA시료채취 및 건조 등을 위해 시료 건조기, 초음파소독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질 문

도축업 영업자는 장부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변

▷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축처리결과를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날짜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질 문

도축장에서도 DNA동일성검사용 시료채취를 하나요?

답 변

▷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도축되는 모든 쇠고기(2009.6.22 적용)에 대해 DNA시료채취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질 문

도축단계에서 신고해야할 주체와 어떤 내용을 신고 해야 합니까?

답 변

▷ 도축업자는 축산물안전시스템에 도축검사신청서 내역과 도축결과, 검사관은 도축검사결과,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결과를 각각 전산입력해야 합니다.

벌칙 및 과태료

질 문

벌칙과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 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1.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9년 6월부터 해당되십니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질 문

도축단계에서 재부착용귀표(민이표)가 부착되어온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합니까?

답 변

- ▷ 도축업자는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도축단계 로그인 한후, 상단의 개체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개체조회란에서 재부착용이표번호를 클릭한 후 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이 나타납니다. 동 자료를 인쇄하여 검사관에게 제출하면 검사관은 인쇄된 자료와 실제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재부착용이표의 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후 도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도축단계 ⇒ 개체조회 ⇒재부착용이표번호 입력



3

쇠고기 포장처리단계

법률 관련

질 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언제부터 이력추적제를 이행해야 하는가요?

답 변

- ▷ 시범사업단계에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아 참여하여 왔으나,
- ▷ 법에 따라 2009.6.22부터는 모든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 문

법 시행 전에 이력제도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 변

- ▷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접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지정사업장 신청을 하시면, 축산물등급판정소 직원들의 방문 이후에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관리팀(031-390-5552)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질 문

포장처리사업장이 소규모인데, 이력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 변

- ▷ 축산물등급판정소를 통해서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09년 6월 22일부터 의무시행이 되십니다.

질 문

시범 사업 기간(2009.6.22 이전)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 되나요?

답 변

-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 신청은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직접 신청합니다.

신규참여대상신청

▷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접수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검토 및 실사

▷ 승인 및 지정

* 제출서류

- 지정사업장신청서(첨부)
-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이력제 관리업무 담당자 명단 1부

확인 및 표시

질 문

포장처리장 업무담당자입니다. (www.mtrace.go.kr)에 가입이 안되네요. 가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변

- ▷ 지정신청이 완료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에서 ID/PW가 부여 됩니다.

질 문

가공장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변

- ▷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개체식별표시가 가능한 저울이 있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전산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 문

법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는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하나요?

답 변

- ▷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쇠고기포장처리실적,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 문

묶음번호를 만들 경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합니까?

답 변

- ▷ 개체식별번호에 의하여 포장처리 또는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수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등급표시 의무부위는 원칙적으로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일한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묶음번호를 구성할 경우 동일 소의 종류(한우는 한우끼리), 한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 문

시행령에서 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와 장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 식육포장처리실적은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 ▷ 식육포장처리 반출. 판매실적은 자체 장부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질 문

묶음번호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답 변

- ▷ 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이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하며,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하거나 숫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예시(2008년 12월21일 9번째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 LOT 2008 1221 9

질 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 변

- ▷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관련사항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하고 (법 제3조, 제13조), 모든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11조)
- ▷ 쇠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지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안 별표5)
- ▷ 시행령에서 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자를 구분하여 신고방법과 장부관리 의무를 달리하게 됩니다.

질 문

시행령에서 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어떤 업체가 해당 되는 가요?

답 변

- ▷ 1.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
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질 문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 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9년 6월부터 해당되십니다.
-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가 요청한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13조를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
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4

쇠고기 판매단계

법률 관련

질 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의해 언제부터 식육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동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요?

답 변

- ▷ 시범사업단계에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아 참여하여 왔으나,
- ▷ 법에 따라 2009.6.22부터는 모든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 문

법률 시행 전(2009.6.22 이전)에 이력제도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 변

- ▷ 식육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접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지정판매업장 신청을 하시면, 축산물등급판정소 직원들의 방문 이후에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관리팀(031-390-5555) 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질 문

우리매장은 소규모 영세점포인데, 이력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 변

- ▷ 축산물등급판정소를 통해서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09년 6월 22일부터 의무시행이 되십니다.

확인 및 표시

질 문

고기가 판매장에 입고되었어요. 도체로도 입고되고, 부분육으로 입고되었는데, 개체식별번호를 어떻게 확인하죠?

답 변

- ▷ 도체상태로 직접 입고 된 경우에는 도체에 붙어 있는 라벨과 거래명세표에 기재 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합니다.
- ▷ 부분육으로 입고 된 경우에는 부분육에 기재 된 개체식별번호와 거래명세표에 기재 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합니다.

질 문

식육판매장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위한 준비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변

- ▷ 반드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판매장에서는 라벨이 인쇄되는 저울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PC를 통해 이력정보 공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질 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꼭 구매해야 하나요?

답 변

- ▷ 시스템이라는 말 때문에 혼동하셨군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력제 지정 판매장이 되면 정부에서 이력제 전산망 사용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지정신청을 통해 이력추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 문

식육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라고 하는데, 모든 번호를 다 표시해야 하나요?

답 변

- ▷ 법 제11조에 의거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 문

부분육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개체식별번호 양식이 아닌 이상한번호(묶음번호)로 기재되어 있네요. 묶음번호는 무엇인가요?

답 변

- ▷ 묶음번호란? 다수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하거나 판매 하는 경우에 사용 되는 번호를 말합니다. 이 때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 번호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 ▷ 만약, 묶음번호가 기재 되어 있다면,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확인해주세요. 확인이 가능합니다.(첨부 확인)
- ▷ 묶음번호의 예)입니다
예) 2008년 12월 21일 9번째 묶음
> 2008 1221 9 또는 LOT 2008 1221 9

질 문

식육판매장에서 묶음번호표시가 가능한가요?

답 변

- ▷ 네, 여러 개의 개체를 하나로 포장한 경우 묶음번호 표시가 가능하며,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재하셔야 하고, 동일 소의 종류(즉 한우는 한우끼리, 젓소는 젓소끼리), 동일등급에 의해 묶음번호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질 문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판매장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법 제11조에 의거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매장 관리

질 문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이력추적제 전산망에 신고 또는 장부로 관리할 사항은 의무입니까?

답 변

▷ 식육판매업자가 전산망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할 사항은 없으며, 매입한 쇠고기의 거래내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식육판매장에서 이력제 전산망을 통해 전산입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질 문

식육판매업자는 장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1년)해야 합니다.

<표 15> 거래내역서(예시)

거래 연월 일	식육종류					수량 (kg)	등급					부위	00년 0월 0일		개체식 별번호	
	원후 고기	육후 고기	겉소 고기	수입 소고기	돼지 고기		1*	1	2	3	등의		원산지 ()	매입처 ()		

▷ 각 항목 작성하시고, 개체식별번호를 정확히 작성 하시면 되십니다.

질 문

식육판매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답 변

- ▷ 증빙자료가 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2009.06.22. 이후가능)를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터치스크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질 문

한우를 파는 음식점도 쇠고기 이력관리가 되고 있나요?

답 변

- ▷ 쇠고기 이력제의 유통단계 적용은 도축장, 포장처리장, 판매장이지만, 현재 지정 음식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력관리가 되고 있으며, 향후 음식점에서 희망할 경우 지정절차를 거쳐 사업에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적 의무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질 문

소머리, 내장, 우족, 꼬리, 뼈 등의 부산물은 이력관리가 되고 있나요?

답 변

- ▷ 쇠고기 이력추적 대상은 소와 소 개체식별대장에 관리가 되는 쇠고기가 해당됩니다. 내장이나 우족 등 부산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 다만, 개체관리가 가능한 LPC 등에서 자율적으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벌칙 및 과태료

질문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부과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답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9년 6월 22일부터 해당됩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가 요청한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참 고 자 료

1.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 257
2.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 258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 현황 / 259
4. 쇠고기 이력추적제 요약 / 265

1.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 번호 (FAX)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500-2111 (503-0020)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500-2078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500-2125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개량평가과	041-580-335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팀	031-463-156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031-467-1961 (031-467-1974)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사업본부	031-390-5555 (031-390-55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99-4378 (960-0164)
농협중앙회	이력사업팀	2080-6541 (2080-6549)
전국한우협회		525-1053 (525-1054)
축산기업중앙회		466-2573 (466-2574)
식육포장처리업체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2281-4446-7 (2281-4448)
한국종축개량협회		588-9301 (582-3475)
한국낙농육우협회		588-7055 (584-5144)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031-391-9767 (031-395-666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31-436-8770 (031-436-8776)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031-394-8147 (031-394-8150)

2.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 번호 (FAX)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02-6361-3862 (02-6361-3864)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3236 (051-888-3209)
대구광역시	농식품과	053-803-3463 (053-803-3439)
인천광역시	농식품유통과	032-440-4394 (032-440-8663)
광주광역시	농산유통과	062-613-3984 (062-613-3969)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042-600-5444 (042-600-2279)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5 (052-229-2919)
경기도	축산과	031-249-4518 (031-249-2658)
강원도	축산과	033-249-2656 (033-249-4042)
충청북도	축산과	043-220-3922 (043-220-3919)
충청남도	축산과	042-251-2862 (042-251-2729)
전라북도	축산경영과	063-280-2655 (063-280-2729)
전라남도	축정과	061-286-6543 (061-286-4787)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053-950-3686 (053-950-2659)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3685 (055-211-3659)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064-710-2142 (064-710-2129)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 현황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서울	서울축산업협동조합	02-2657-7140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1-6
2	인천	인천축산업협동조합	032-433-9550	인천 남구 주안6동 894-3
3	인천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032-933-3301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1리 117-1
4	경기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031-230-4043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1124-5번지
5	경기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031-762-9341	경기도 광주시 역동 23-5
6	경기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032-667-411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7번지
7	경기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031-443-384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7-11
8	경기	용인축산업협동조합	031-338-559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9
9	경기	평택축산업협동조합	031-683-2121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194-14번지
10	경기	이천축산업협동조합	031-634-6611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29-6
11	경기	(사)이천한우회	031-638-6565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후안3리 34-6
12	경기	(사)전국한우협회 김포시지부	031-981-1545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9-17 축협 2층 한우협회
13	경기	김포축산업협동조합	031-982-1421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40-1
14	경기	안성축산업협동조합	031-673-1801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44
15	경기	여주축산업협동조합	031-883-233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247-3
16	경기	양평축산업협동조합	031-771-220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731-5
17	경기	고양축산업협동조합	031-962-648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6-4
18	경기	양주축산업협동조합	031-863-222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5
19	경기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031-566-1151	경기도 남양주 지금동 137-3
20	경기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031-941-2340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37-4
21	경기	포천축산업협동조합	031-534-0075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91-6
22	경기	가평축산업협동조합	031-582-411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66-1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23	경기	안성마춤한우회	031-674-5955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불현리 산5-1 농업기술센터내 안성마춤한우회
24	경기	경기북부한우협동조합	031-534-3341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458-1
25	강원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033-252-3218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244-34
26	강원	원주축산업협동조합	033-744-6801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397
27	강원	강릉축산업협동조합	033-646-0001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312
28	강원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033-573-5033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29-12
29	강원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033-671-8868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44-1
30	강원	홍천축산업협동조합	033-434-341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25-6
31	강원	횡성축산업협동조합	033-343-9907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17-1
32	강원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033-334-231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하5리 131-1
33	강원	인제축산업협동조합	033-461-580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62
34	강원	고성축산업협동조합	033-681-3567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19
35	충북	청주축산업협동조합	043-256-556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
36	충북	충주축산업협동조합	043-850-7561	충북 충주시 교현1동 766-28
37	충북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043-644-3185	충북 제천시 청전동 611
38	충북	보은축산업협동조합	043-542-250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00-5
39	충북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043-733-0516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1
40	충북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043-833-8870	충북 괴산군 동부리 523-1
41	충북	진천축산업협동조합	043-533-8100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96-2
42	충북	음성축산업협동조합	043-873-2586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2리 314-9
43	대전	대전축산업협동조합	042-485-7543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68
44	충남	천안축산업협동조합	041-562-0527	충남 천안시 영성동 67-2
45	충남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	041-852-4993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1-8
46	충남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041-856-2581	충남 공주시 신관동 534-2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47	충남	보령축산업협동조합	041-934-1554	충남 보령시 대천동 438-2
48	충남	아산축산업협동조합	041-544-7744	충남 아산시 모종동 593-3
49	충남	서산축산업협동조합	041-665-7501	충남 서산시 동문동 795
50	충남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041-730-2230	충남 논산시 내동 면학1길 54
51	충남	금산축산업협동조합	041-753-9051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6
52	충남	부여축산업협동조합	041-832-2903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46-4
53	충남	서천축산업협동조합	041-953-1967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5
54	충남	청양축산업협동조합	041-943-480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55	충남	홍성축산업협동조합	041-632-661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35-8
56	충남	예산축산업협동조합	041-335-351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21-1
57	충남	당진축산업협동조합	041-350-552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06-1
58	충남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041-355-3191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402-1
59	충남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041-633-077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9-1
60	전북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063-542-6786	전북 김제시 요촌동 288
61	전북	익산군축산업협동조합	063-843-4103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171
62	전북	순정축산업협동조합	063-653-044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3-1
63	전북	(사)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063-533-8533	전북 정읍시 수성동 525-15
64	전북	남원축산업협동조합	063-633-1161	전북 남원시 향교동 263-3
65	전북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063-433-0381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03-59
66	전북	임실축산업협동조합	063-640-3601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82-4
67	전북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063-560-30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48
68	전북	전북한우협동조합	063-546-6923	전북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768-6
69	전북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063-633-4541	전북 남원시 금동 280-24
70	전북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063-542-4224	전북 김제시 검산동 820-4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71	광주	광주축산업협동조합	062-228-1085	광주시 동구 학동 46-2
72	전남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061-453-8003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02
73	전남	여수축산업협동조합	061-686-3900	전남 여수시 학동 191-1
74	전남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061-722-3700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35-2
75	전남	나주축산업협동조합	061-339-8000	전남 나주시 성북동 198-1
76	전남	담양축산업협동조합	061-380-5522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51
77	전남	곡성축산업협동조합	061-362-8001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96
78	전남	구례축산업협동조합	061-782-2603	전남 구례시 구례읍 봉남리 155-5
79	전남	고흥축산업협동조합	061-835-8600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219-53
80	전남	보성축산업협동조합	061-852-3451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57-36
81	전남	화순축산업협동조합	061-374-1470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00
82	전남	장흥축산업협동조합	061-863-8232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2-19
83	전남	(사)전국한우협회 장흥군지부	061-863-7911	전남 장흥군 용산면 계산리 5-1
84	전남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061-433-1511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8-7
85	전남	해남축산업협동조합	061-534-9602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86	전남	영암축산업협동조합	061-473-0880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155-1
87	전남	함평축산업협동조합	061-324-0046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3
88	전남	영광축산업협동조합	061-353-801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6-1
89	전남	장성축산업협동조합	061-393-6771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73-112
90	전남	전남낙농업협동조합	061-742-6330	전남 순천시 남정동 545-7
91	대구	대구축산업협동조합	053-589-0272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710
92	대구	달성축산업협동조합	053-611-6203	대구시 현풍면 대리 186
93	경북	포항축산업협동조합	054-274-6121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4-9
94	경북	경주축산업협동조합	054-742-1981	경북 경주시 노서동 119-5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95	경북	김천축산업협동조합	054-433-2138	경북 김천시 성내동 8-1
96	경북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054-673-6000	경북봉화군봉화읍내성리235-28
97	경북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054-482-2455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215-2
98	경북	영주축산업협동조합	054-634-0201	경북 영주시 영주1동 548-11
99	경북	영천축산업협동조합	054-333-1801	경북 영천시 문외동 40-29
100	경북	상주축산업협동조합	054-531-0241	경북 상주시 서문동 5-5
101	경북	문경축산업협동조합	054-553-7770	경북 문경시 흥덕동 223-3
102	경북	경산축산업협동조합	053-811-0131	경북 경산시 중방동 864-10
103	경북	군위축산업협동조합	054-383-3340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20-6
104	경북	의성축산업협동조합	054-834-5612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84-20
105	경북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054-873-1191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97
106	경북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054-733-7120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155-1
107	경북	청도축산업협동조합	054-373-5004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6리 693-11
108	경북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054-954-0722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109	경북	예천축산업협동조합	054-654-232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73-11
110	경북	울릉농업협동조합	054-791-1005	경북 울릉군 도동1리 214-2
111	부산	부산축산업협동조합	051-338-0506	부산시 북구 만덕동 759-4
112	경남	양산축산업협동조합	055-383-7511	경남 양산시 북부동 382-1
113	울산	울산축산업협동조합	052-262-7521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71-8 축산회관 1층 한우개량 사업소
114	경남	마창진축산업협동조합	055-294-3872	경남 창원시 중동 401
115	경남	진주축산업협동조합	055-758-9111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03-45
116	경남	통영축산업협동조합	055-641-0511	경남 통영시 복신동 1-2
117	경남	사천축산업협동조합	055-851-5840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9-3
118	경남	김해축산업협동조합	055-333-8175	경남 김해시 서상동 269-6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119	경남	밀양축산업협동조합	055-352-0726	경남 밀양시 삼문동 4-10
120	경남	거제축산업협동조합	055-633-4131	경남거제시신현읍고현리961-77
121	경남	의령축산업협동조합	055-573-2624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4-4
122	경남	함안축산업협동조합	055-583-208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21-1
123	경남	창녕축산업협동조합	055-533-8292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421-1
124	경남	고성축산업협동조합	055-681-3567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219
125	경남	남해축산업협동조합	055-862-342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422-5
126	경남	하동축산업협동조합	055-882-880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08-3
127	경남	산청축산업협동조합	055-973-450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179-1
128	경남	함양축산업협동조합	055-964-0603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18-14
129	경남	거창축산업협동조합	055-943-954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37-2
130	경남	합천축산업협동조합	055-932-0055	경남 합천군 합천읍 669-24
131	제주	제주축산업협동조합	064-756-42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073
132	제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064-733-14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99-22

4. 쇠고기 이력추적제 요약

www.mtrace.go.kr

쇠고기 이력추적제

2009. 1.



목차

1. 개요
2. 해외사례
3. 사업추진경과
4. 사업추진체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I. 개요

목 적

I. 개요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음

도입배경

I. 개요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국내적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져 육류 이력추적제 필요성 제기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체식별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기대효과

I. 개요

위생·안전의 파수꾼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의 혈통, 사양정보 등을 이력추적제와 통합 관리하여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에 기여

II. 해외 사례

II. 해외 사례

일본 · 프랑스

국가	시행단계 및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 ~ 04년을 목표로 중장기 귀표체계 정비 및 전산화 사업 추진 • 2001년 BSE 발생으로 기존의 사업을 조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6월 전 두수에 대한 귀표장착 완료 - 소개체식별대장, D/B 관리 체계 구축 • 2003년 12월부터 생산단계에서 쇠고기 이력제 시행 • 2004년 12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 시행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6년 축산진흥법 제정, 가축 개체식별의 필요성 규정 • 1969년 동물식별법 제정 • 1998년 농장 ~ 도축까지 이력추적제도 의무화 • 2000년 7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도 도입 • 2005년 1월부터 유통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한 이력추적제도 도입

II. 해외 사례

호주 · 미국

국가	시행단계 및 내용
 <p>호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브루셀라와 우결핵 박멸을 위해 cattle-tracing system 도입 · 1996년: 소 질병 및 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NVD(출하자증명제) 도입 · 1999년: EU 요구에 따라 EU 수출용 소에 우선적용 (Victoria주) · 2004년: 모든 주에서 소에 귀표부착 의무화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초 생산 ~ 도축까지의 가축이력제에 대한 초안 발표 - 2004년 7월까지 farm, 도축장, 가공장 등 식별번호 부여 계획 - 2008년 1월까지 농기등록과 가축등록 완료 계획

II. 해외 사례

국가별 이력추적제 비교

구분	프랑스	일본	한국
도입시기	1998(생산), 2000(유통)	2003(생산), 2004(유통)	2008.12.22 [시범사업:2004.10]
실시범위	생산 ~ 유통	생산 ~ 유통	생산 ~ 유통
귀표장착	농가	농가 및 농협지원	농가(위탁기관)
D/B 관리	농림부(유통 D/B 없음)	가축개량센터	농식품부
유통단계 표시내역	개체번호(도축장) 로트번호(판매장) 원산지표시(식당)	개체번호(도축장) 로트번호(판매장, 식당)	개체번호(도축장) 개체 또는 묶음번호 (가공장, 판매장)
정보제공	개체번호 미공개 (소비자)	인터넷, 휴대전화 등	휴대전화, 인터넷 등
DNA검사	없음	전체 도축두수의 1%	검사표준화 작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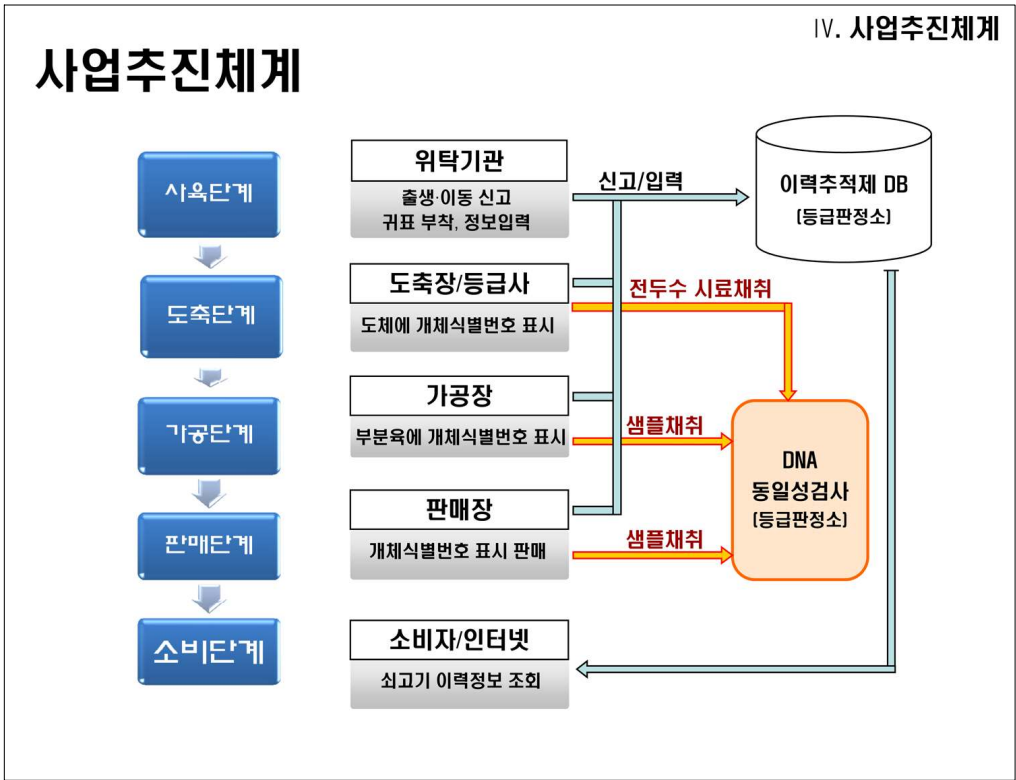
Ⅲ. 사업추진경과

사업추진경과

Ⅲ. 사업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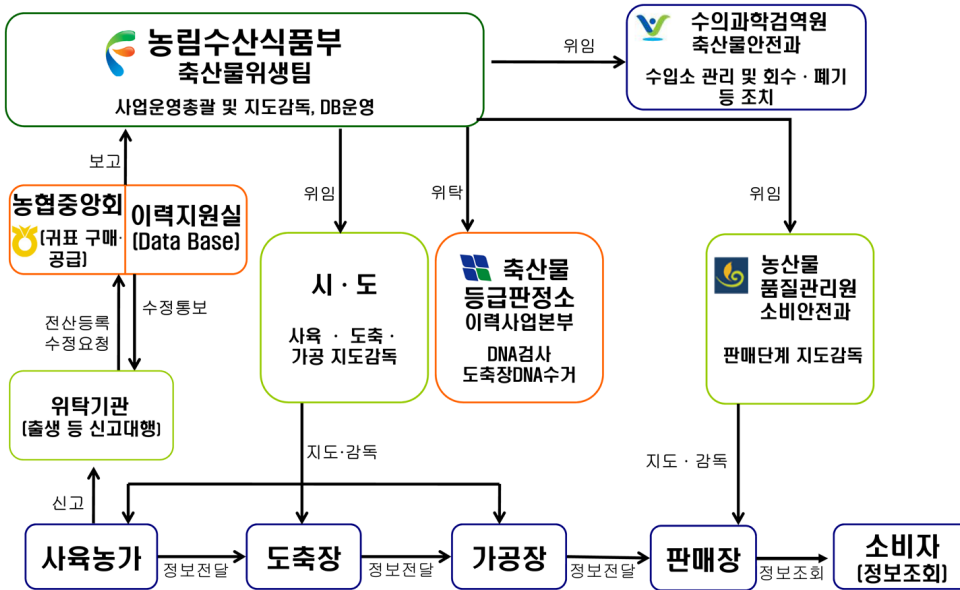
- '04.10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 시범사업 실시
- '05. 8 시범사업 실시상황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06-'07 지역단위 추가 및 참여규모 지속 확대
- 07.12.2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08.12.22 법 시행에 따라 **사육단계 시행**
- 09.06.22 법 시행에 따라 **유통단계 시행**

IV. 사업추진체계



IV. 사업추진체계

기관별 역할과 기능



IV. 사업추진체계

사육단계(1)

출생신고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 시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지역 위탁기관에 30일 이내 제출

- 서면제출이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으로 신고 가능
-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으로 위탁기관 132개소 지정, 운영 중

양도·양수 등 신고

소의 소유자 등은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도축출하, 폐사 한 경우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이동연월일, 거래장소 등을 신고

- 양도·양수 등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 위탁기관은 신고내용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 관리

IV. 사업추진체계

사육단계(2)

귀표관리

- ① 각 시·도는 관내 사육규모 및 귀표부착두수, 재고량 등을 파악 → 농식품부에 신청
- ② 농식품부는 사업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 → 농협중앙회 공급 요청
- ③ 농협중앙회는 대행기관에 귀표를 공급, 공급내역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데이터관리
- ④ 대행기관은 귀표의 수불관리기록대장 작성 → 이력추적시스템의 입출고내역 전산관리



<소 우측 귀>



<소 좌측 귀>

IV. 사업추진체계

사육단계 핵심사항

-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구입할 경우 위탁기관에 **30일 이내** 신고
- **2008년 12월22일에** 기르고 있던 기존 한·육우나 젃소도 **2009년 6월22일까지** 신고
 - 신고 후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
-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이력추적비용으로 배부한 것을 부착**하여야 함
 - 신고된 소는 축협 등 위탁기관에서 부착 (일반형 우측귀, 단추형 좌측귀)
 - 탈락된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위탁기관에 신고
- **2009년 6월22일부터** 공인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할 수 없음
- 출생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 08.12.22일부터 소의 소유자 등이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 귀표 비부착 경우 예외)

IV. 사업추진체계

도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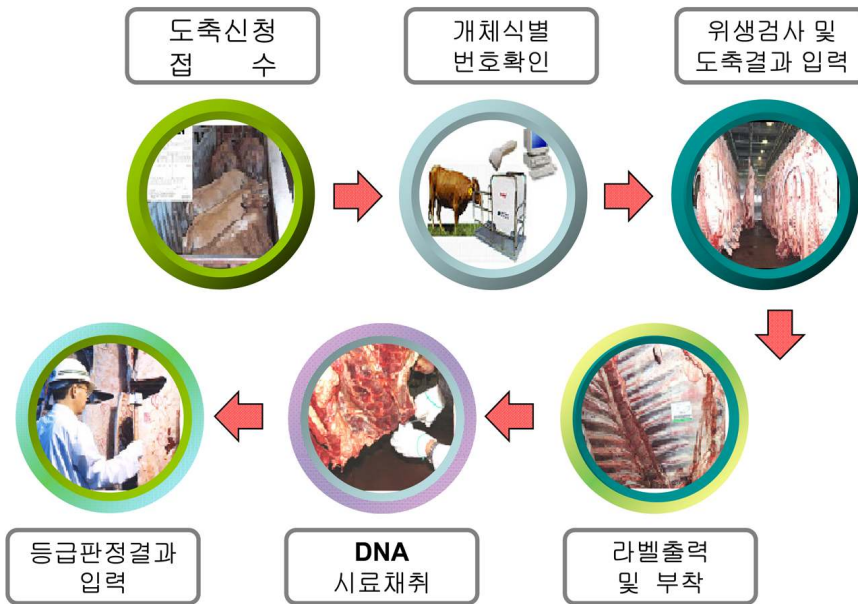


1.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이력추적시스템 (www.mtrace.go.kr)에 등록되었는지 확인
2. 도축 신고 및 도축처리 결과를 전산입력
3. 날짜별로 도축, 위생, 등급 등 결과 입력관리
4. 소 도체 내부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반출

- 도축이 금지되는 경우 :
-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 식별이 곤란한 경우
 -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IV. 사업추진체계

도축단계



IV.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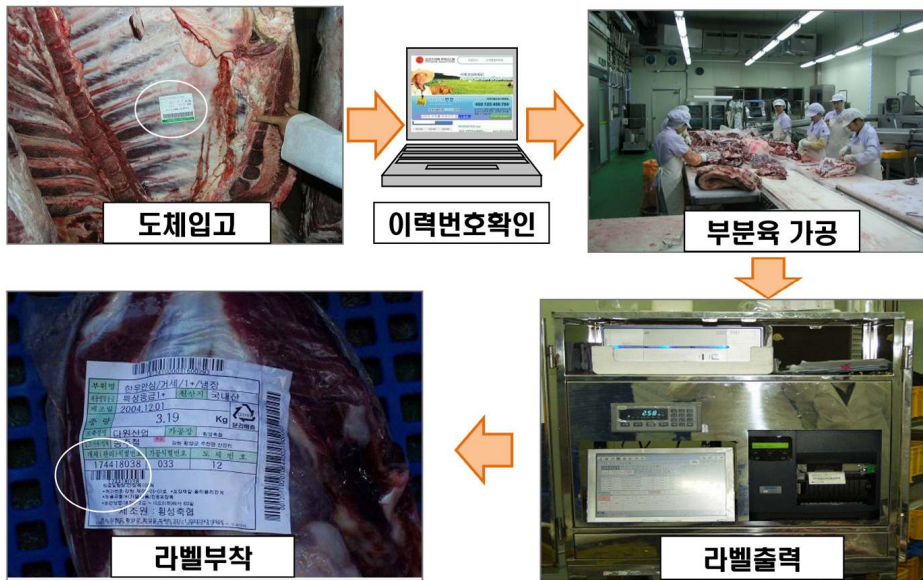
가공단계



1. 가공장 입고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 해당소의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 거래내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확인
 -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
2.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발골·정형
3. 쇠고기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예: 라벨 부착)
4. 쇠고기 가공 내역 기록 및 보관(2년) (포장처리실적 / 판매 · 반출 실적)

IV. 사업추진체계

가공단계



IV. 사업추진체계

판매단계

1. 지육·부분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와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 확인

2. 해당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표시한 후 판매

3. 거래내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기록·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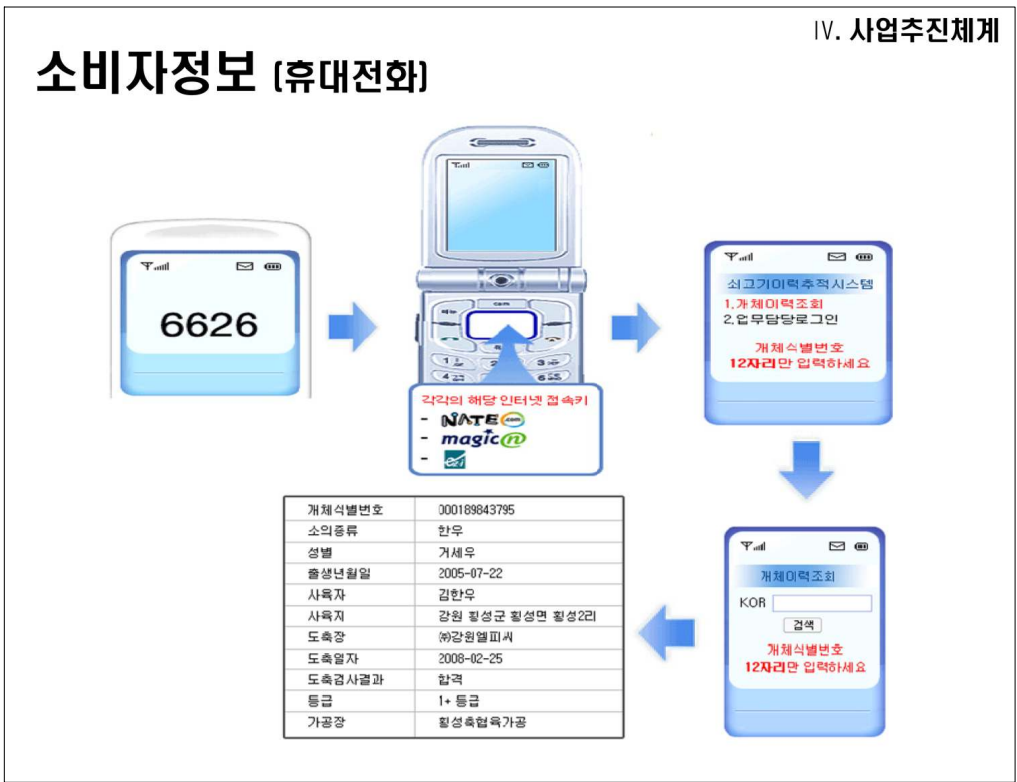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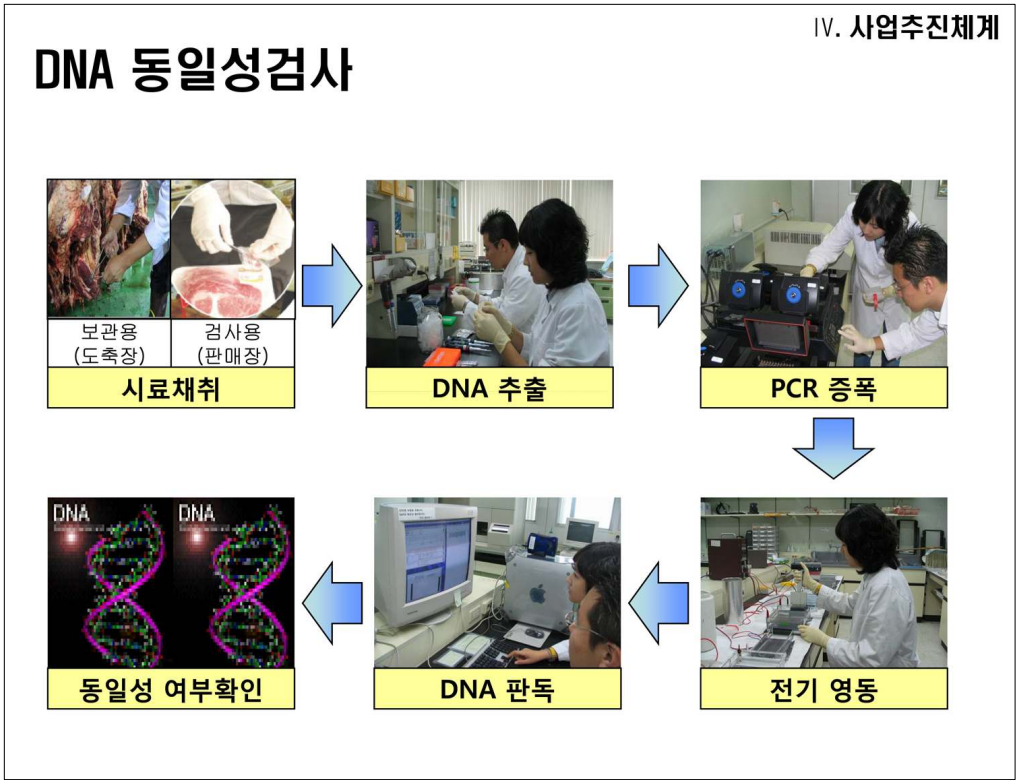
IV. 사업추진체계

판매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정보		브랜드명정보		
소개정보				
개체식별번호	000199087862	출생년월일	2006-03-10	
종류	한우	성별	거세	
이동정보				
NO	농장명	이동연월	이동년월일	사육지
1	상주축협	견산등록	2006-12-22	경상북도 상주시
2	홍하		2008-10-14	경북 상주시 서문동 5-5
도축정보				
도축장	한성중부	도축일자	2008-10-14	
도축검사결과	합격	육질등급	1+	





IV. 사업추진체계

소비자정보 (휴대전화)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최고기 이력추적시스템' (Cheogogi Traceability System) website. The main header includes navigation links: '사업안내 | Business', '단체별참여방법 | Participate', '고객지원실 | Customer', and '축산물정보 | Info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banner with the text '최고기 이력추적제로 국내산 최고기의 위생·안전' (Hygiene and safety of domestic top-grade beef with Cheogogi traceability system).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뉴스·홍보자료' (News/PR), '찾아슈 HOT ISSUE' (Hot Issue), and 'CYBER PROMOTION 사이버홍보관' (Cyber Promotion Cyber Hub). A search bar is located on the left. On the right, a detailed product information window is open, showing the following data:

소개체정보

- 개체식별번호: 000199087882
- 출생년월일: 2006-03-10
- 종류: 한우
- 성별: 개새

이동정보

NO	농장명	이동연내	이동년월일	사육지
1	상주축협	견산동록	2006-12-22	경상북도 상주시
2		졸하	2008-10-14	경북 상주시 서문동 5-5

도축정보

- 도축장: 한양중부
- 도축일자: 2008-10-14
- 도축검사결과: 합격
- 육질등급: 1+

Buttons for '프린터' (Print) and '닫기' (Close) are visible at the bottom right of the window.

IV. 사업추진체계

소비자정보 (이력지원실)

1577-2633



V.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소 및 쇠고기

소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쇠고기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뼈,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

용어정의

이력추적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

개체식별번호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소유자 등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
(해당 소의 운송 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V.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용어정의

개체식별 쇠고기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통해 얻은 쇠고기
묶음번호(Lot)	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함
재부착용 귀표	개체식별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지 않는 귀표 귀표 탈락시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재 부착 (KOR+ 개체식별번호(수기기재))



V.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용어정의

도축업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용어정의

DNA 동일성 검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소가 도축되어 판매될 때 동일한 소로부터 생산된 쇠고기인지 여부를 DNA를 비교하여 검사

보관용 시료

DNA동일성검사를 목적으로 등급판정사가 도체에서 채취하는 시료



검사용 시료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가공장·판매장 등에서 채취하는 시료



법률 주요내용(사육)

- 소유자 등은 출생, (수출입), 양도·양수, 폐사 등 신고 (법 제3조)
 -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서 귀표 관리 및 출생, 양도, 양수신고 접수, 전산입력 등 업무수행
- 귀표 부착 관리 (법 제4조)
- 개체식별대상 기록사항의 변경시 변경신고 (법 제7조)

☞ **고령농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위탁관리체계 유지**

V. ① 법률

법률 주요내용(도축)

도축업자는

-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법 제10조)
- 귀표미부착 또는 개체식별 곤란시 도축금지 (법 제10조)
- 도축검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교부 (법 제15조)
- 소의 도살처리 결과를 장부에 기재 보관 : 2년 (법 제13조)

축산물등급판정사에 의해 도축시 보관용 DNA검사 시료채취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개체식별번호	000189818526
도축일자	2008년 07월 10일
도축번호	44
1등급량	451 Kg
도축장명	(주)강원엘피씨
www.etraco.net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BEEF TRACEABILITY SYSTEM	



<판정사 시료채취>

V. ① 법률

법률 주요내용(포장처리)

식육포장처리업자는

- 부분육 쇠고기 또는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법 제11조)
- 쇠고기의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시행령에서 정한 업체)
- 쇠고기의 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 장부기재(일반업체)
- 장부의 기록·보관 : 2년 (법 제13조)



<부분육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제품명	한우갈비/냉장	원산지	국내산
등급/등급	한우거세/1++	2008.10.09	2008.12.08
중량	0.90 Kg	도축장명	다원산업 가공장
개체식별번호	000189803829	지시환농장	가공식별번호 030
도축번호	12	*국가별표준량 제 54-1호 → 원료 및 원형 국내산한우 100% *국가별표준량(중량)을 초과하여 포장된 경우 *주요지방 함량(안정) 3.2 이하에서 제조된 경우 60일 *비육도축구입차 → 포장일 유효기간	
황성안우 황성축산업협회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111-1 호 (031-392-8989)			

V. ① 법률

법률 주요내용(판매)

식육판매업자는

- 매장 내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판매(법 제11조)
-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 2년 (법 제13조)



V. ① 법률

법률 주요내용(소비)

소비자는

-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 의한 구입한 쇠고기의 이력정보조회 가능 (법 제 9조)



법률 주요내용(기타)

- 농림수산물부 장관 : 소유자 등에게서 필요시 관련서류 및 물건검사, 시료채취 (법 제14조)
- 자치단체장, 축산관련법인, 공공기관 등 : 농림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에 의해 위임·위탁 (법 제16조)
- 국가 및 지자체 : 이력추적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지원(법 제17조)
- 사육농가·사업장 의무사항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부과 (법 제18조 ~ 20조)
- 쇠고기 이력추적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법 제21조)

[2] 시행령

식육포장처리업자

1.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쇠고기의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신고 하여야 함

귀표부착의 예외

1.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 소의 소유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미리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도 소멸 또는 이동시 당초 귀표 다시 부착해야 함

V. ②시행령

권한의 위임·위탁(1)

사·도 지사

- 사육·도축·가공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농산물
품질관리원장

- 판매 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수의
과학검역원장

- 수입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
- 질병 등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V. ②시행령

권한의 위임·위탁(2)

축산물
등급판정소

- 소 개체식별대장의 누락·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분석

위탁기관

- 소 출생, 양도·양수, 폐사 등 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관리
- 귀표의 부착 지원

[3] 시행규칙

V. ③ 시행규칙

출생 등의 신고방법 및 절차

• 소의 출생, 양도·양수, 폐사, 수입 등의 신고를 하는 자는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구역의 위탁기관에 제출

→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동 신고서의 내용을 신고

V. ③시행규칙

출생 등의 신고의 기한

• 출생신고 :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양도 · 양수 신고 : 30일 이내

• 수입 · 수출 신고 :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에는 도축검사신청서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

V. ③시행규칙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

도축업자는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이행여부 확인 후 도축

도축검사신청서에 의한 도축처리결과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전산 신고

시행령에서 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 · 반출실적은 자체적으로 장부 기록, 보관

신고기한 : 도축 실적은 즉시, 포장처리 실적은 5일 이내 전산신고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출생 등의 신고시 위탁기관에서 개체식별번호 부여, 귀표 부착

국내소의 경우, 국가코드(KOR포함),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럼 등이 표시된 **15자리 개체식별번호 부여**

수입소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부여한 개체식별번호 사용**



귀표의 관리방법

귀표수급관리

농협중앙회에서 귀표의 구매·공급 관리 등 담당

귀표수불관리대장

위탁기관은 귀표의 수령 및 배부 등을 기록 관리하여 함

귀표훼손·탈락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위탁기관은 귀표 훼손 및 탈락 신고시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함

V. ③시행규칙

귀표의 부착기한 및 방법

국내에서 사육중인 소는 **출생 신고 후 30일 이내**

수입소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귀 없는 기형소는 목걸이형 귀표부착

- 귀의 질환이나 외상에 걸려 귀표 부착이 곤란하거나, 기타 질병 등 목적으로 귀표 부착이 곤란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소의 소유자 등이 **고령 등의 이유로 귀표 부착이 곤란한 경우 대행기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귀표의 부착을 요청 받은 위탁기관은 30일 이내에 부착하여야 함. 단, 도서지역(제주 본도는 제외)은 90일 이내

V. ③시행규칙

개체식별정보의 공개

1. 소 개체식별번호
2. 소의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3. 소의 종류
4. 소의 성별
5. 소의 소유자 등의 성명
6.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7. 도축장명칭 및 소재지
8. 도축일자 및 검사결과
9. 쇠고기의 등급판정결과
10.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쇠고기 이력추적정보		브랜드명정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BEEF TRACEABILITY SYSTEM			
소개체정보			
· 개체식별번호	000199087882	· 출생년월일	2006-03-10
· 종 류	한우	· 성 별	기세
· 이 동 정 보			
NO	농장명	이동연월일	이동지
1	상주축협	2006-12-22	경상북도 상주시
2	출하	2008-10-14	경북 상주시 서문동 5-5
도축정보			
· 도 축 장	한양중부	· 도 축 일 자	2008-10-14
· 도축검사결과	합격	· 육 질 등 급	1+

변경신고

법 제7조에 따라 별지1호 서식의 공통신고사항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서식에 변경신고사유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개체식별대장의 기록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기록이나 오류 등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제출, 수정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소의 처리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탈락되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소가 도축 신청된 경우,
신고를 받은 검사관이 '도축장 개체 식별번호 발급 신고서' 에 기재하고,
이력지원실을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새로 부여 받아
그 결과를 해당 도축장 영업자에게 통보 및 전산신고

V. ③시행규칙

개체식별번호 표시

도축업자

- 해당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도축 후 해당 지육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부착
- 부착위치 : 갈비 내부 등에 부착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 표시부위 : 포장된 모든 부위
- 입고된 지육 또는 부분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 표시
- 부착개수는 포장단위 및 판매단위마다 부착
-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시 : 묶음번호 표시
- 라벨규격 : 업체 자율



V. ③시행규칙

묶음번호 표시

도축업자

-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없음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 다수의 다른 개체식별 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또는 판매시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를 만들어 사용
- 동일 소의 종류, 동일 등급으로 구별하여 포장할 경우에만 묶음번호 가능

식육판매업자

- 불고기용, 잡육 등 쇠고기를 혼합하여 판매시 묶음번호 표시 가능
-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동일 등급에 한해서 묶음표시 가능

묶음번호 구성범위 및 관리

구성 마리 최대허용 개체수 : **20마리**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에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구매자 등이 요구시 이를 제공하여야 함

〈묶음번호 표시방법〉

연월일+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 또는 LOT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
예시 : 2008 1221 9 / LOT 2008 1221 9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도축업자

도축처리결과를 전산 기록·관리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

**식육포장
처리업자(1)**

[시행령에서 정한 업체]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 신고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 실적을 장부에 기록하여 자체보관

**식육포장
처리업자(2)**

[일반 업체]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및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 실적을
장부에 기록하여 자체 보관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 한 장부를 자체 기록, 보관